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 1. 대한민국의 수립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1. 대한민국의 수립

- 1) 단정노선의 확정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
- (1) 미·소공동위원회의 최종적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전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소가 합의한 바는 두 가지였다. 그 첫째는 〈일반명령 제1호〉(1945년 8월 15일)에 담겨 있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분할점령' 방침이다.1)미·소는 이에 따라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남북을 배타적으로 점령하였을 뿐 아니라, 점령지역 내에서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1945년 말에 이르면 남북에는 이미 상이한 두 체제가 그 기초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 즉 단일의 독립된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으로 미·소가 합의한 것이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협정이었다. 그 내용은 '先 임시정부 수립, 後 신탁통치'를 거쳐 한국을 단일의국민국가로 독립시킨다는 것이었다. 모스크바협정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과 1947년 5월 각각 개최되었지만, '협의대상 선정문제'를 둘러싼 미·소의 이견으로 인해결국 결렬되었다. 협의대상 선정문제란, 표면상으로는 임시정부 수립방안을미·소공동위원회와 같이 협의할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를 선정하는문제였지만, 그 본질은 장차 수립될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것이었다.

^{1) 〈}일반명령 1호〉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연합국간에 일본군 항복 접수지역의 분담을 규정한 것이지만, 사실상 전후 동아시아에서 미·소의 세력권 분할선 을 그은 것이었다.

미국은 친미 우파주도하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했고, 소련은 친소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임시정부를 의도하였기에 양측의 합의는 처음부터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한 것은 우파측의 격렬한 反託運動이었다. 반탁을 근거로 소련은 협의대상에서 우파세력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자신의 지지세력을 배제하려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1947년 8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최종적 결렬은, 분할점령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단일의 독립자치정부를 수립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미·소합의안인 모스크바협정의 최종적 파기를 의미하였다. 보다 중요하게 그것은 1947년부터 시작된 미·소냉전의 본격화와 미국의 대소정책의 전환 속에서, 한반도 문제 역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됨을 의미하였다.

1947년 초에 들어 미국의 對蘇戰略은,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과 마샬플랜(Marshall Plan)으로 상징되듯이, 미·소협력에 기반한 루즈벨트 (Roosevelt)式 국제주의 노선에서 미·소냉전에 기초한 봉쇄전략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對蘇 봉쇄노선을 수립하게 된다.2) 전후 미국 외교노선의 이러한 전환 속에서 미국의 對韓政策 역시 모스크바 협정안을 지키려는 상호주의 또는 대소 협조노선이 폐기되고 대신 소련과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의 노선을 밀어 부치려는 일방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방침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1947년 2월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대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결과 육군성과 국무성은 4월 초 새로운 대한정책에 합의하게 된다. 그 내용의 핵심은, 장차 개최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진전이 없고 소련의 방해가 최종적으로 증명되면 한국문제를 유엔에

²⁾ Cumings, Bruce G.,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II)*(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M. Schall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72.

회부한다는 것이었다. 3) 미국의 예상대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7월에 이르러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트루만 행정부는 8월 초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먼저 소련에 대해 한국문제를 다룰 4대국 특별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이 회담에서 남북한 각각의 점령지역에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유엔 감시하 선거(인구비례에 따라선출)를 치를 것을 제안하며, 소련이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양하여 남한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4)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방침은, 소련의 반대가 명백히 예상되었기에 사실상 單政수립을 향한 방침이었으며, 또한 군부가 요구하는 조기 철군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유엔 이관 방침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가장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나타 난 소련의 비타협적 태도에 맞서 한국의 독립과 통일 그리고 연합국들이 지 지한 다국적 해결방안을 원했던 미국의 열망의 불가피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의 견해는 유엔 이관을 미국의 책임회피 즉, 한반도로부터 명예롭 게 퇴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석한다. 유엔의 개입은 한국에 대한 미국 의 공약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한반도로부터 실질적으로 손을 때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5)

그러나 유엔 이관 방침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숭고한 사명감의 발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포기도 아닌, 현실주의적인 타협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군부는 이미 1946년부터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에서의 조속한 철군을 요구하고 있었다.

³⁾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47, Vol. VI, The Far East(Washington D.C.: U.S.GPO, 1972~73), pp.610~618. 신복룡 편, 《한국분단사 자료집》IV(원주문화사, 1991), 424~451쪽.

⁴⁾ FRUS, 1947, Vol. VI, pp.738~741.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지식산업사, 1991), 155~156쪽.

⁵⁾ 조순승, 《한국분단사》(형성사, 1982), 142~146쪽. Goodrich, Leland M.,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New York: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pp.37~41. 그레고리 헨더슨 저(박행웅·이종삼 역), 《소용돌이의 한국정치》(한울, 2000), 233~236쪽.

이에 반해 국무성은 '이데올로기의 전쟁터'로서 한반도가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기 철군에 반대해 왔다.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방침은 이처럼 교착상태에 빠진 군부와 국무성간의 의견대립을 해소하는 방편이었다. 국무성은 군부가 요구하는 철군을 받아들였지만, 군부가 요구한 '남한 단정수립과 철군'이라는 일방적 조치를 거부하면서, 대신 유엔이라는 국제적 개입을 통해 한국에 '봉쇄'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협력 거부를 예상했지만 유엔이 미군 점령지역만의 선거를 후원하리라고 생각했고, 이를 통해 38선 이남에 수립될 단독정부는 유엔이라는 국제공동체로부터 도덕적・물리적 지원을 향유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형성된 정부에 대해 소련이적극적인 적대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점에서 유엔은 미국 군사력의 한계에 대한 대체물이었으며, 집단안보의 형태를 통해 값싸게 봉쇄를 추구하는 방법이었다. 달리 표현하면, 봉쇄를 포기한 국제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의 옷으로 치장한 봉쇄였다.6)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은 8월 말부터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시켰다. 먼저 1947년 8월 26일 국무차관 러베트(Robert A. Lovett)는 몰로토프(V. M. Molotov) 소련 외상에게 보낸 서신에서, 9월 8일 워싱턴에서 4개국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한국문제 해결방안으로 "남북 각 점령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선거를 통한 남북인구비례에 따른 임시의회 구성 및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소련이 9월 4일 몰로토프 서한을 통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자, 미국은 9월 16일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소련 외상에게 미국정부는 한국문제를 차기 유엔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고하였다. 다음 날 유엔주재 미국대표 오스틴(Warren R. Austin)은 한국의 독립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고, 마샬(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 역시 총회석상에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합의도 가능하지않기 때문에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천명했다.7)

⁶⁾ Cumings, Bruce G., *op. cit*, pp.65~68. 제임스 I. 매트레이 저(구대열 역),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을유문화사, 1989), 154~155쪽.

⁷⁾ FRUS, 1947, Vol. VI, pp.773 · 774 · 790. 차상철, 앞의 책, 166~167쪽.

이와 같이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함으로써 한국문제를 둘러싼 미·소대립의 무대는 유엔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유엔에서 미·소가 가장 먼저 부딪친 문제는, 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룰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논란 끝에》 결국 "한국의 독립문제를 유엔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9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23일 유엔총회는 동 제안을 찬성 46표, 반대 6표(기권 7표)로 가결하여 한국문제를 제1분과위원회인 정치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국문제가 유엔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자, 미국측은 10월 17일 유엔에 제출한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한국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미·소 점령당국이 늦어도 1948년 3월 31일까지 각각의 점령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전국적인 국회 및 정부를 수립하며, 새로 수립된 한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미·소점령군은 조속하고도 완전한 철수를 이룬다는 것이었다. 미국측 제안에 대해 소련은, 10월 28일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남북한의 대표를 초청할 것과 1948년 초까지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에서 각기 그 군대를 동시 철수하여 한국인 자신에게 정부수립을 일임할 것을 제안했다.9)

⁸⁾ 소련은,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유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문제는 이에 대한 국제조약(모스크바협정)이 이미 존재하고 또한 전쟁의 직접적 결과물이므로 유엔의 권한 밖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2차대전의 패전국에 대해 전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를 무효로 하거나 저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유엔헌장 제107조를 제시했다. 소련의 비판에 대해 미국은, 헌장 1조 2항의 유엔의 기본목적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기본조항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이 한국문제를 다루는 것은 헌장 107조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사실상 한국문제는 일본군의 패전으로 대두된 것이므로 전승국들이 결정할 문제였으나, 헌장 제107조는 전승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유엔의 정당한 기관이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총회가 헌장의 취지에 의거하여 한국독립문제를 토의하는 것의 합법성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없었다고 해석된다. 조순승, 앞의 책, 143~144쪽.

Goodrich, Leland M., op.cit., pp.36~37.

⁹⁾ FRUS, 1947, Vol. VI, pp. 832~835, 849~850. 국제신문사 출판부 역, 《유엔조선위원단보고서》(1949), 9~11쪽.

소련의 제안 중 한국민의 대표를 유엔의 토의에 참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 논리상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문제는 누가 한국민을 대표하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민의 대표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유엔총회 제1분과위원회(정치위원회)는 10월 28일부터 한반도 문제를 토의한 결과, 10월 30일 소련측 결의안은 부결시키고, 미국측의 수정안을 찬성41표, 반대 0표(기권 7표)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소련대표 그로미코(A. Gromyko)는 만약 총회가 한국민의 대표를 토의에 참석시키지 않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한다면 소련은 위원단의 활동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10)

한국대표 초청문제가 해결되자, 소련측이 주장하는 '미·소양군 철수 및 조선인 스스로의 정부수립'방안¹¹⁾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소련의 제안에 대해 미국측은 정부수립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미·소 양군이 철수할경우 그로 인한 혼란을 면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논전 속에 11월 4일 미국측은, 한국대표 초청문제에 관한 정치위원회의 결의 내용과 선거가점령지구별로 각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감시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중국 및 인도의 동의 등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했다. 11월 5일 유엔정치위원회는 소련안을 부결시키고, 미국측 수정안을 찬성 46표, 반대 0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정치위원회가 상정한 결의안을 수정 없이 찬성 43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채택함으로써 미국의 안을 통과시키고, 소련의 제안은 최종적으로 부결시켰다. 12이 이렇게 하여 한반도 문제는 모스크바협정과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기

¹⁰⁾ 구드리치,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처리과정〉(브루스 커밍스 외, 《분단전후의 현대사》, 일월서각, 1983), 380쪽.

조순승, 앞의 책, 153~155쪽.

¹¹⁾ 이러한 내용의 대안은 이미 1947년 9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대표단 이 제안한 바 있다.

¹²⁾ 정해구, 《남북한 분단정권 수립과정연구-1947. 5~1948. 6》(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5), 97·117·118쪽.

구드리치, 앞의 글, 380쪽.

FRUS, 1947, Vol. VI, pp.853~854.

존의 해결구도에서 벗어나 유엔으로 그 무대를 옮기게 되었다. 새로운 한국 문제 해결방안으로 채택된 11월 14일자 유엔총회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①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선거에 의한 한국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이러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이 대표들이 군정당국에 의해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국민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거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속히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설치하여 한국에 부임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전 한국을 통하여 여행・감시・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②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 핀·시리아·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9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늦어도 1948년 3월 31일까지 보통·비밀선거원칙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 단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남북인구비례에 따른 대표자들로 국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하며, 이 정부는 위원단과 협의하여 국방군을 조직하고, 남북의 점령당국으로부터 정부기능을 이양받으며,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양 점령군이 철퇴하도록 점령당국과 협정을 맺는다.

(FRUS, 1947, Vol. VI, pp.857~859; 정일형 편, 《한국문제 유엔 결의문집》, 국제연합한국협회 출판부, 1954, 2~8쪽; 국제신문사 출판부 역, 《유엔조선위원단 보고서》, 1949, 18~22쪽).

(2)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과 남한단선 결정

1947년 11월 14일자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창단되고, 회원 각국 대표들이 1948년 1월 8일 호주·인도·시리아대표를 필두로 1월 말까지 서울에 입경하게 된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당초의 9개국 중에서, 소련의 입장에 동조하여 위원단 참여를 거부한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8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입경한 직후 3개의 분과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1분과위원회는 선거를 위한 자유분위기 확보, 제2분과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한국인들의 견해 청취, 제3분과위원회는 선거법 검토가 각각 그 임무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초기 활동의 최대 관심사는 위원단의 활동이 전 한반 도에 미치도록 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위원단은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 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소련은 1월 22일 유엔 소련대표 그로미코를 통해 협조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으로서는 1월 말에 이르러 남북한에 걸친 전국적 총선의 감시라는 당초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 해졌음을 최종 확인한 것이다.

사실상 소련의 거부는 유엔결의안 통과시점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소련은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자체를 반대했었고, 미국이 유엔에 제안한 한국문제해결방안은 소련이 항상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왔던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이었다. 따라서 소련은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해서 그것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힌 바 있었다. 이에 반해 유엔총회의 결의안이란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거부권 행사를막기 위해 한국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에 상정하였지만, 총회의 기능은 조사·토의 및 권고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 강대국의 협력을 받지 못할 때 총회 결의안의 실질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위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이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지역에서 총회의 권고를 무력으로써실행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음도 분명했다.13)

따라서 유엔 감시하의 전국총선거란 사실상 남한 單選案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유엔총회가 미국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전에 이미 소련이 유엔의 결정을 거부할 경우 남한에서만 선거를 통해 단독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었으며, 유엔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소련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방문을 불허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38도선 이남의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다.14)

그러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만의 단선을 참관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는 국내 정치세력은 물론 유엔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야기되었다. 1948년 1월 말에 이르러 소련의 비협조로 북한 입

¹³⁾ 구드리치, 위의 글, 384~385쪽. 차상철. 앞의 책. 157쪽.

¹⁴⁾ FRUS, 1947, Vol. VI, p.853; FRUS, 1948, Vol. VI, pp.1082 · 1083 · 1087, 1099. 차상철, 위의 책, 177 · 181쪽.

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총회의 계획을 남한지역에서만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① 위원단이 접근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실시하여 남한단독의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입장과, ② 그러한 조치는 한국의 분단을 영구화시킬 것이므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그 위임받은 임무를수행할 수 없음을 소총회에 알리고 앞으로의 지시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었다. 전자는 미국의 對韓政策에 우호적인 중국·프랑스·필리핀·엘살바도르대표들의 입장이었고, 후자는 시리아대표를 비롯하여 소위 영국블럭에 속한 호주·캐나다·인도대표들의 입장이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남한내의 정치지도자들 역시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李承晚과 韓民黨세력은적극적으로 남한단선을 주장하였지만, 金奎植 등의 중도파는 물론 金九 역시유엔의 협조 아래 南北要人會談을 통해 전국총선거를 성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김구·김규식의 남북요인회담 방안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당시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15) 이러한 분위기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결국 2월 6일,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한국문제를 소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16)

한국문제는 2월 19일부터 유엔소총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의장 메논(K. P. S. Menon)은 한국내의 여론을 반영하여, 한국문제해결의 방안으로서 ① 남한지역 선거와 정부수립, ② 위원단이 협의할 대표선출을 위한 제한된 목적의 선거 실시, ③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조선의 지도자회담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캐나다와 호주대표가 계속 남한단선을 반대하자 미국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다른 회원국의 입장을 미국안을 지지하도록 돌렸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 유엔소총회는 2월 26일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의 지역에서 11월 14일 총회결의안에서 설정된

^{15) 2}월 16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메논 의장은 유엔소총회에 문의할 내용으로 ① 남한지역 선거와 정부수립, ② 남한지역 선거와 협의 대상이 될 대표 선출, ③ 남북 조선의 지도자회담, ④ 유엔임시위원단의 철수 등을 제시했는데, 당시한 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4가지 방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단선·단정 11.5%, 단선 5%, 남북회담 71%, 위원단 철수 12.5% 등이었다.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211쪽.

¹⁶⁾ 송선희,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그 활동의 개요와 관계문서에 대한 해설〉(국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2: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Ⅱ》, 1988), 5쪽.

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부과된 의무"라는 결의안을 찬성 31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남북총선을 통한 단일정부수립이라는 총회결의안의 내용을 남한단선을 통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변화시킨, 결정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소련과 그 지지국가들은 소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위원국인 호주와 캐나다는 끝까지 반대하였고, 중남미 3개국, 중동 5개국, 스칸디나비아 3개국은 기권하였다. 한편유엔소총회는, 남한이 경찰국가라는 비판 등을 고려하여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참관할 선거는 언론·출판, 그리고 집회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자유분위기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17)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2월 28일 비공식 회의에서 1948년 5월 10일 이전에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의 지역내에서 선거를 참관하기로 결정하였고, 3월 1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는 5월 9일을 선거일로 발표하였다. 캐나다·호주 대표가 28일 회의의 합법성과하지의 선거일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반발하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다시 3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가 언론·출판 및 집회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자유분위기에서 행해질 것이라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1948년 5월 9일에 실시될 것으로 발표한 선거를 참관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4표(중국·엘살바도르·인도·필리핀), 반대 2표(호주·캐나다), 기권 2표(프랑스·시리아)로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18)

한편 3월 17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선거 참관의 전제 조건이었던 선거의 자유분위기 확보방안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출하였고, 이것이 충족되었다는 판단하에 4월 28일 "남한 현지 관찰의 결과 합당한 정도의 민주주의적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것에 만족하므로 선거를 참관할 것을 결의한다"라고결정하여 선거 참관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게 된다.19)

¹⁷⁾ 구드리치, 앞의 글, 389~392쪽. 송선희, 위의 글, 6쪽.

¹⁸⁾ 송선희, 위의 글, 6쪽.

¹⁹⁾ 송선희, 위의 글, 7쪽.

2) 5 · 10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1) 단선을 앞둔 미군정·과도정부의 준비

5·10선거는, 기존 정치체제내에서 정권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이 경쟁하는 통상적 의미의 선거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5·10선거는 남한에서 합법적인 정치권력 즉 정부를 최초로 수립하기 위한 선거로서, 이후 한국의 국가와 정치체제의 기본성격과 방향을 결정짓는 定礎的 의미를 지닌 선거였기때문이다. 그러나 5·10선거에 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와 정치체제의기본성격과 방향을 결정권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미·소의 대립하에서 남한단선이 치러진 당시의 정치상황은, 그 결과 등장할 정치체제가분단하의 단독정부이며 또한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체제를 택하게 될 것임을 이미 구조적으로 결정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5·10선거는 신생국가의 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고 할 수 있는 단일국가 대분단국가의 문제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간의 체제 선택의 문제 등 국가수립을 둘러싼 그랜드 이슈가 이미 의제에서 배제된 제한적 의미에서의 정초적 선거였다.20) 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스펙트럼 상에서 굉장히 협애한 한계가 주어진 제약내에서 정치적 경쟁이 일어나고, 그 한계내에서 정치적 대표가 허용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5·10선거를 통해 남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제대로살펴보기 위해서는, 5·10선거의 결과를 이미 결정짓고 있었던 당시의 정치지형, 즉 정치적 경쟁이 전개된 정치적 환경과 그 제도적 기반 등을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물론 5·10선거의 정치지형은 해방 이후 1948년에 이르는전 기간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單選單政노선이 확정된 1947년 중반 이후에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반공체제의 형성이다. 선거 이전에 이미 좌파 또는 공산주의세력이 합법적인 정치공간에서 배제되었던 것

²⁰⁾ 동아일보사 편,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동아일보사, 1988), 229쪽.

이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의 이식이다. $5 \cdot 10$ 선거는 우파만의 경쟁으로 치러졌지만, 다른 한편 복수정당간의 경쟁과 자유선거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와 틀이 부과되고 그것에 따라 선거경쟁이 이루어진 점이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5 \cdot 10$ 선거에 대한 정치세력의 주체적 대응의 측면이다. 즉 $5 \cdot 10$ 선거를 앞두고 남한 정치세력은 체제와 이념의 선택문제 뿐 아니라 분단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대대적 재편을 거쳤으며, 그 결과 좌파세력뿐 아니라 중도파 및 우파세력의 상당부분도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5 \cdot 10$ 선거는 치러지게 된다.

가. 반공체제와 반공국가의 물리력 확충

분단이란 국토의 분단뿐 아니라 정치세력과 이념의 분단을 의미하였다. 그 것은 남에는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북에는 공산주의 이념만이 유일하고 배타적인 정치이념으로 허용됨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단일정부 수립노선이 폐기되고 단선·단정노선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1947년 8월부터 좌파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및 숙정작업이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단일정부 수립노선의 폐기는 38도선 이남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세력과 이념이 합법적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 것이다.

좌파세력이 합법적 정치의 공간에서 배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46년 가을 朴憲永의 朝鮮共産黨이 합법·비합법의 투쟁전술을 병행하는 소위 '新戰術'을 택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9월총파업'과 '10월항쟁' 과정에서 대중시위·파업·민중투쟁 등의 물리적·폭력적 투쟁방법이 동원되었고, 여기에 맞서 미군정은 1947년 9월 7일 박헌영·李康國·李舟河 등 조선공산당 간부에 대한 체포령을 발함으로써 사실상 조선공산당을 불법화시켰다. 그러나 이는 좌익진영 전반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박헌영의 극좌노선이 불러온 탄압과 이에 대한 좌익진영 내부의 반발 등으로 인해 분열과 침체에 빠져 있던 좌파세력은 1947년 봄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로 인해 합법적 정치활동의 공간을 얻게 된다. 2차 공동위원회의 성사를 기대했던 좌파세력은, 7월 들어 다시 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

지게 되자 '공동위원회 진전을 촉구하기 위한 압력행사용'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공동위원회 촉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좌파는 소위 7·27투쟁으로 알려진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경축 및 임시정부 수립 촉진 인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8·15해방기념대회라는 명목으로 다시 미·소공동 위원회 촉진을 위한 대규모의 군중투쟁을 계획하였다.

좌파세력에 대한 당국의 전면 검거는 이를 계기로 하여 시작되었다. 군정 당국은 정당 및 사회단체의 기념대회를 불허하는 〈행정명령 5호〉를 발포하여 8·15행사를 금지한 데 이어, 8월 11일부터 민주주의민족전선(약칭 민전)산하 각 정당·사회단체 인사에 대한 대대적 검거를 시작한 것이다. 소위 '남조선 적화 및 군정파괴 음모사건'으로 알려진 좌익세력에 대한 총검거로 23일경까지 전국에서 약 2,000명이 체포되었다. 그 중에는 南勞黨 부위원장李基錫, 근로인민당 위원장 白南雲, 張建相·李加星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민 족전선·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전국농민조합총연맹(약칭 전농)·女性同盟·人民共和黨·靑友黨 간부 등 좌익 주요 인사만도 150명에 이르렀으며, 남로당 위원장 許憲에 대한 체포령도 내려졌다. 이는 남로당을 비롯한좌파정당·사회단체에 대한 사실상의 불법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²¹⁾

좌파세력에 대한 총검거령과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국가기구 및 공공부문으로부터 좌파세력을 전면적으로 색출・검거하는 작업이 1947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1947년 8월과 9월에 걸쳐 서울방송국・체신부・경찰・형무소・소방서・운수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서 및 서울 시내의각급 학교 교원, 각 지방 경찰서 등에서 '남로당 세포사건', '적화사건' 등으로 불린 검거선풍으로 약 670여 명이 검거되었다. 이러한 색출작업은 중앙과지방에서 5·10선거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숙청 대상은 경찰・형무소・사법부 및 재무・농무・운수・체신 등 중앙행정부서, 방송국 및 각급 학교, 각 지방 행정경찰조직 등 중앙과 지방의 거의 전 국가부서를 망라하였으며, 검거규모는 1947년 8월부터 1948년 5월까지 신문지상에서 확인되는 인원

^{21) 《}서울신문》, 1947년 8월 13 · 14일.

[《]조선일보》, 1947년 8월 13일.

[《]동아일보》, 1947년 8월 13 · 15일.

만도 총 1,300여 명에 달하였다.22)

좌익진영에 대한 이러한 조치의 의미는, 11월 5일 군정청이 발표한 〈時局對策要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요강에서 군정청은, 남한의 정치사회는 '군정에 협력하는 애국적·친미적·건설적 진영과 반민족적·반군정적·반미적·파괴적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정치적 숙청을 통해 후자를 배제한 뒤에야 좌우중간의 노선이 정당하게 구획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특히 공산계열 당적을 가진 자는 관공리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23)즉, 기존의 남한 좌익계열은 국가의 영역뿐 아니라 합법적 정치경쟁의 공간에서 전면 배제될 것이며, 정치적 경쟁은 그 나머지 세력간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좌파세력 역시 남한 정치체제내의 합법적 정치세력으로 남기를 거부하였다. 남로당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하여 활동을 개시하자 물리적으로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맹휴·집회·시위·경찰지서 공격 등을 감행하였으며, 중간좌파세력들은 남북협상에 참여하여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5·10선거 이전에 이미남한의 정치체제는, 좌파세력이 국가의 영역뿐 아니라 합법적인 정치적 경쟁의 공간, 즉 정치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불법화된 체제 즉, 우리가'반공체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확립되어 갔다. 이러한 남한의 반공체제는 정부수립 후인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통해 법제화된다.

한편 반공체제의 확립과 함께 북한 및 좌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 및 경찰력의 강화가 추진되었다. 단선노선과 함께 1947년 9월 말 미군의 조기철 군방침이 결정되자 미국은 가장 먼저 한국군 창설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러나한국군 창설문제는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검토되고 있는 한 미국에 의한 일 방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계속 유보되어 오다, 결국 1948년 2월 말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선실시가 결정됨에 따라 합동참모부(JCS)에서 3월 10일 국방경비대 증강안이 승인된다. 하지만 그동안 미군정은 내부적으로 조선경비대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조선경비대는 1947년말 1만 7천 명 수준에서 1948년 3월에 이르러 5만 명 수준으로

²²⁾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245~246쪽. 23) 《서울신문》, 1947년 11월 6·7일.

확충되었다.

경찰력 역시 1947년 7~8월의 2만 8천 명 수준에서 1948년 초 3만 명, 1948년 6월 3만 5천 명 수준으로 증강되었다. 1945년 말의 1만 5천 명에 비해 2배 이상 팽창한 것이다. 당시 미군정은, 지나치게 팽창된 정부조직이 장차 수립될 남한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또한 미국의 대한원조가 팽창된 관료조직의 유지비용으로 낭비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1947년 7월부터 행정관료조직의 축소를 추진하여 1948년 초까지 중앙부처 전체 인원의 19.5%를 감원하고 있었다. 24) 이와 같은 대대적인 인원감축 속에서도 경찰 및 경비대의 대폭적 증강이 이루어진 것은, 미군정과 과도정부가 반공체제 유지를 위한 물리력 강화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나. 정치 · 사회적 개혁과 자유민주주의제도 이식

單選單政을 앞두고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미군정은 반공체제의 틀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제도와 이념의 이식작업을 폭넓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남한 단선단정의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민족의 열망을 폐기하면서 이루어지는 단선을 정당화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단선 추진세력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미군정을 비롯한 단선 추진세력이 동원한 것은 유엔과 선거였다. 전자가 단정의 외적 정통성 확보를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내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장치였다. 특히 선거에 광범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북한과 정부수립의 정통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였고, 이를 위해 강압적 조치가 동원되기도했지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당한 사회・정치적 개혁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단선을 앞두고 정치·사회적 개혁이 추진된 것은 미국의 점령 목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남한에서 궁극적으로는 '대소 반공블럭의 일원으로 기능할 반공국가'를 수립하고자 했지만, 이와 동시에 "수립될 남한국가는 자유민주주의제도와 이념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²⁴⁾ 박찬표, 앞의 책, 255쪽.

체제여야 한다"라는 전자와 쉽게 조화되지 않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했었다.²⁵⁾ 미국은 전자의 목표가 이미 달성된 상황에서, 점령의 최종 국면에 반 공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자의 목표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혁 조치들이, 우파세력의 반발 및 이들과 연결된 미군정의 미온적 태도를 극복하고 추진되게 된 데에는 유엔과 유엔한 국임시위원단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은 궁극적으로 보면 단선·단정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유엔 감시하 선거가 결국 분단을 초래한다는 점 외에도 남한체제의 반민주적 성격에 대해 적지 않은 반발을 보였었다. 따라서 유엔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남한선거를 참관하는 조건으로 민주적 권리의 인정 및 자유분위기 보장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일정 부분 관철되면서 자유주의적 개혁을 가져온 것이다.

시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47년 후반기에 우파세력은 '유엔 참관 없는 남한단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점령당국도 여기에 호응하는 듯 했었다. 예컨대, 1947년 6월 27일〈보통선거법〉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통과되자 이승만과 한민당은 7월부터 시작하여 1947년 말까지 조속한 남한단선 실시를 군정당국에 끈질기게 요구하였고, 군정당국역시 유엔감시 이전이라도 남한 단선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무성에 의해 강력히 저지되었다.26) 이러한 당시의 정황을 볼 때, 만일 1947년 말 우파세력의 요구대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관여 없이 남한단선이 실시되었더라면, 1948년 초 5·10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일련의 자유주의적 개혁 조치는 없었거나 아니면 그 정도가 극히 약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²⁵⁾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 1996), 22쪽.

^{26) &}quot;Incoming Message from Seoul to Secretary of State" (1947. 8. 17.), 895.00/8~1747,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RG 59, Decimal File, 895.00: Record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Scholarly Resources Inc., roll 1.

[《]조선일보》, 1947년 9월 5일.

박찬표, 앞의 책, 279~280쪽.

단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자유주의적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볼 때 남녀보통·평등선거의 제도화시점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시점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의회구성을 위한 최초의 선거에서, 재산·성·교육 등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약하는 일체의 선거권 자격제한 없이 바로 전면적 보통·평등선거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에서 최초로 제정된〈보통선거법〉은 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6월 제정되어 미군정에 의해 9월 3일 법률 제5호로 공포한〈남조선입법의원선거법〉이었다. 이 선거법은 민주적인 보통·평등선거의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이었다. 27) 그러나 5·10선거를 앞둔 선거법 확정과정에서 입법의원선거법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요구에 의해 대폭 개정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서 선거법 검토 및 확정을 담당한 것은 제3분과위원회였다. 제3분과위원회는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선거법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라는 입법의원선거법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제반 독소조항은 전부 제거되었다. 예컨대, 선거권 연령이 23세에서 21세로 인하되고, 유권자 등록 방법은 자필서명 방식에서 날인제로, 투표방법은 自書制에서 기표제로 수정됨으로써 청년층 및 문맹자 즉 사회하층민에까지 선거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월남인을 위한 특별선거구제 역시 이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북한의 대표임을 주장할 것이라는 비판에 따라 폐지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부가 완전 장악했던 것에서 사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8)

²⁷⁾ 입법의원선거법은 당초 2차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경우 미·소공동위원회의 남한흑 협의대상이 될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과도 입법의원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우파세력은, 남한 정치집단을 대표할 새로운 대표기구에서 좌파세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지배적 위치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선거적 장치를 삽입시켰다. 선거권 연령을 23세로 높게 하여 청년층을 투표에서 배제한 점, 유권자 등록시 직접 서명을 요구하고 투표방식 역시 직접 후보자 이름을 쓰도록 하는 自書방식을 택함으로써 사회하층이 대부분인 문맹자(당시 성인의 6할)를 투표에서 배제한 점, 특별선거구제를 통해 월남인에게 총의석의 13.5%를 배정한 것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박찬표, 위의 책, 266~278쪽).

^{28)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국사편찬위

선거법 외에도 법과 제도면에서 상당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1분과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선거의 자유분 위기 확보 방안'을 다룬 제1분과위원회는 2개월간의 작업 끝에 최종건의안을 3월 17일 하지에 전달하였다. 법률문제·경찰문제·언론자유·정치범 석방 등의 문제를 다룬 이 건의안은 특히 평화적·합법적 수단에 의한 투표 또는 기권의 권리 보유. 경찰과 청년단체에 대한 조치. 정치범 석방 등을 강조하 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무엇보다도 경찰개혁을 요구하였다. 물론 "주민 동원 및 악선전 저지 등 선거승리를 위해 경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 했기 때문에29) 경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불가능하였지만, 제도적ㆍ법적 수 준에서는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1947년 11월 중앙경찰위원회 설 치, 1948년 1월 경찰 권한의 축소(사회·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인허가권이 일반 행정조직으로 이양되거나 폐지)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3월 20일에는 경찰・군 정경찰고문 • 우파세력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영 장제도가 도입되었다. 4월 1일에는 재판 3심제가 부활되었으며, 5월 4일에는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원행정이 사법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됨으로써 3권 분립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4월 5일에는 한국판 인권장전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가 발포되었다. 이는 선거와 관련한 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차 법의 근거가 될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 앞의 평등, 신체·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소유권 보장 등 제반 시민권적 자유를 규정한 것이었다.

법적·제도적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이식과 함께, 미군정은 5·10선거를 앞두고 선거 및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작업을 전개하였다. 주한미군은 1947년 6월 군정청 공보부와는 별도로 주한미군본부 직속의 공보원(OCI)을 설치하고, OCI를 통해 1947년 7월부터 12월까지 각 도를 순회하면서 여론조사 및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단선단정에 앞서 각 지방 정치상황을 점검하고 홍보·선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준비작업을 마친 미군정은 1947년 말부터 공보원, 군정청 공보부, 24군단 공보처의 3각

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1: 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 I》, 1987), 55~63쪽. 29) G-2. W/S. no.96(1947년 7월 6일~13일).

협력체제를 통해 단선에 대한 선전·홍보작업을 본격화하였다.

홍보의 내용을 보면, 유엔의 한국문제 결정 및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결정에 대한 선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대한 소련의 비협조적 태도 및 북한에서 행하는 약탈행위, 소련의 한국분단 음모, 미국의 대한원조, 농지개혁 프로그램, 북한의 〈토지개혁법〉과 남한 토지분배의 비교, 북한헌법 비판, 선거등록 및 투표절차에 대한 홍보 및 참여의 중요성, 남북지도자연석회의 비난 등등 남북의 체제 경쟁 속에서 남한단선 및 단정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었다. 또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내용, 선거의 의미 등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전·홍보작업은 단선을 정당화하여 국민을 선거에 동원하기 위한 조치였던 동시에, "한국민들은 민주적인 정부과정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영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군정당국의 지적처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세례작업이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군정이 전력을 쏟은 사회경제적 측면의 개혁은 토지개혁이었다. 토지개혁이 갖는 체제안정화 효과에 주목한 군정은 일찍이 1946년부터 과도입법의원에서 〈토지개혁법〉을 통과시키고자 했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우파의 방해로 인해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선을 맞게 되자 미군정은 선거 이전에 군정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농지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미국무성 역시 적산토지에 대한 토지개혁이선거 이전에 공포・실시되어야 함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겨 두지 않은 3월 22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173호〉의 공포를 통해 新韓公社 소유 토지매각에 나섰다.30) 그것은 한 농가당 2정보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 등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농지가격은 연간 생산량의 30할로 매년 20%씩 15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신한공사 소유 토지는 남한 전체 경지면적의 13.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토지를 소작하고 있는 농가호수는 전체 농가호수의 27%를 차지하는 55만 4천여호. 그에 딸린 가족인원만도 300여만 명에 달하

^{30) 4}월 8일 제1차로 일인토지 불하가 개시되었다.

[《]조선일보》, 1948년 4월 27일.

[《]경향신문》, 1948년 4월 27일.

였다. 농지개혁은 5·10 총선을 눈앞에 둔 당시의 시점에서 농민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취해진 개혁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2) 단선에 대한 국내 정치세력의 대응

5·10선거의 한 특징은, 국내 정치세력 중 상당수가 선거를 거부 또는 불참한 가운데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해방 후 3년 동안 남한의 정치사회에는 극좌·중도좌·중도·우파민족주의·극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세력이존재하였다. 이들은 이념적·계급적 이슈뿐 아니라, 친일파 처리나 분단의수용 등 민족적 이슈를 둘러싸고 다양하게 분립하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의중요한 정치·경제적 균열과 이를 둘러싼 여러 사회계층의 이해나 입장을각각 대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점에서 이들 중 어느 한 세력이배타적인 정통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정치집단의 참여와 타협 속에서 신생국가의 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에서부터 5·10선거에 이르는 과정은, 정치세력들이 통합과 타협이 아니라 점점 더 분열하고 배제되면서 결국 소수의 정치세력만이 정치 공간에 남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미국이 의도한 반공체제 구축과정의결과이기도 하였지만, 분단이라는 민족문제에 대한 대응의 차이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신탁통치 이슈를 둘러싸고 좌·우·중도로 분립되어 있던 국내정치세력은, 남과 북에 이념을 달리 하는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시 근본적인 재편성의 계기를 맞게 된다. 분단정부 수립과정은 각정치세력에게 남북 양 체제 중 어느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념의 문제와 함께, 분단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민족주의적 문제를 함께 부과하였고,이를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은 다시 분립을 겪게 된다.

먼저 좌파세력부터 살펴보자. 좌파세력은 일관되게 '모스크바 3상협정과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단일정부 수립'을 주장해 왔었다. 따라서 이들은 모스크바협정의 폐기를 의미하는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방침 자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신 소련이 제의한 '양군 동시철병 후 한국인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좌파세력은 11월 14일 유엔 감시하 한

국총선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자 이를 단정수립 기도로 규정하면서, 무력 으로 이를 저지한다는 강경노선을 정하게 된다.

남한 좌파측의 단선저지투쟁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하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남로당측은 단선 저지를 위한 직접적인 무력투쟁에 치중하는 반면, 北勞黨측은 주로 남한측 중도진영이나 우파측과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南北連席會議를 추진한다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31) 1월 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이 소련측에 의해 정식으로 거부됨으로써 남한만의 단선이 분명해지자,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추방을 위한 비합법적 대중투쟁의 실행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남로당은 단선・단정 저지를 위한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 들어가게 된다. '2·7구국투쟁' 이후 약 3개월 동안 전개된 '단선・단정 저지투쟁'은 74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낳으면서 격렬하게 전개되었지만 5·10선거를 저지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이후 남한의 좌파세력은 '지하선거' 및 '해주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등을 통해 북한정권수립에 참여하게 된다.32)

그러면 중도파세력의 대응은 어떠하였는가. 중도파세력은 좌우대립 속에서 민족주의와 민족통일을 강조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좌우합작과 계급연합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1차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국내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좌우합작을 전개하였고, 따라서 2차공동위원회 재개를 계기로 상당한 활기를 얻게 된다. 중도 우파세력과 중도 좌파세력은 각각 공동위원회대책협의회 및 5당 캄파 등으로 정치세력 통합을 이루고 1947년 12월에는 중간 좌·우파의 결집체로 民族自主聯盟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문제 유엔이관과 소련의 미·소양군 철퇴안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간파세력은 점차좌우 양 진영으로 분열되었으며, 또한 남한단선 수용을 둘러싸고 또다시 분립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³¹⁾ 정해구, 앞의 책, 117~8쪽.

^{32)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소위 '지하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 1,002명의 좌파 및 중도 좌파세력은 월북하여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해주에서 남조선인 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다시 선출된 360명이 최고인민회의 남한지역 대의원으로서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였다.

먼저 勤勞人民黨과 5당 캄파계열의 중간 좌파세력은, 유엔 이관 방침에 처음부터 명백히 반대하면서, 소련이 제시한 '양군철수 이후 남북총선안'을 지지하였다. 폭력투쟁을 배제할 뿐 정치노선은 좌익과 사실상 동일하였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자체를 반대하였고, 이후 남한단선을 거부하면서 남북협상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나아가 5·10선거 이후에는 해주의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정권 수립에참여하게 된다.

중간 우파진영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이들은 중간좌파와 달리, '유엔 감시하 전국총선 방침'을 단일정부 수립안으로서 수용하면서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였지만 이들은 유엔의 역할에 기대를 걸면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의 협력하에 남북지도자회담을 통해 전국총선거를 성사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1948년 2월 남한단선이 유엔에서 결정되자, 이들은 단선 참여를 둘러싼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때 중간우파의 한 축을 이루었던 洪命惠의 民族獨立黨세력은 남한단선 반대를 분명히하였다. 이들은 유엔 감시하 선거 방침이 더 이상 통일정부 수립노선이 아님이 분명해지자 북한이 추진하는 또 다른 '통일정부 수립노선' 즉, 1948년 4월 북한이 추진한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하는 길을 택하였고, 이를 위해 월북한이후 평양에 남아 북한정권에 참여하게 된다.

중간우파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룬 金奎植에게 있어 남한단선 불참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김규식은 유엔 감시하 전국총선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소련의 반대로 결국 남한단선으로 귀결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럴 경우 단선에 참여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였었다. 그러나 김규식등 중간 우파세력으로서는, 조직과 자금의 열세는 고사하더라도 극우세력이장악한 경찰개혁 등이 이루어져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선거 참여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33) 결국 김규식은 군정당국의단선 참여 종용을 뿌리치고 남북협상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남북협상에 참여하면서도 김규식은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및 또 다른 분단정권인 북

³³⁾ 도진순, 앞의 책, 196쪽.

한정권 수립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며, 협상 실패 이후 북한에 잔류하지 않고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김규식의 단선 불참은 남한 체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극우파 중심의 정부수립에 대한 반대였다고 할수 있다.

단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金九의 대응 역시 김규식과 마찬가지로 곤혹스러 운 것이었다. 2차공동위원회 결렬시점까지 김구는 李承晩・韓民黨과 함께 "탁치반대, 모스크바협정 폐기, 중간파 및 좌우합작 반대"의 노선을 주도하였 다. 그러나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이후 김구의 韓獨黨은 중도파와 우파 사이 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김구는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이후 한독 당 내 진보파인 趙素昻을 통해 중도파와의 연합을 추구하기도 했지만, 이것 이 실패로 귀결되자 11월 말부터 이승만 진영과의 합작을 다시 추진하면서 차후 단선을 수용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34) 11월 14일 유엔결의안 통과로 사 실상 남과 북의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김구가 가진 통일국가 수립 을 향한 민족주의적 지향과 반소・반공의 강한 이념적 지향은 갈등하지 않 을 수 없었고, 일단 김구는 후자를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구와 이 승만진영의 합작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 한민당 정치부장 張德秀 암살사건 을 빌미로 한 김구에 대한 경찰의 탄압, 한민당의 적극적 반대, 이에 대한 미군정 및 이승만의 호응 등이 작용한 결과였다.35) 한민당과 이승만으로서는 신생정부를 둘러싼 강력한 경쟁자인 김구를 배제 또는 약화시키고자 했을 것이며, 미국으로서도 반외세 민족주의로 무장한 김구가 탐탁치 않았던 것이 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으로 볼 때 김구의 단선 불참은, 민족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자신의 선택과 이승만·한민당·미군정에 의한 배제의 두 측면이 함 께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4) 1947}년 11월 30일 김구는 이승만과의 회동 이후, "소련의 방해로 북한의 선거 만은 실시하지 못할지라도 추후 하시라도 그 방해가 제거되는 대로 북한이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의연히 총선거의 방식으로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47년 12월 2일.

[《]조선일보》, 1947년 12월 2일.

³⁵⁾ 도진순, 앞의 책, 158~166쪽.

상황이 분명해진 1월 말 김구는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정리하여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미·소양군 철수 후 유엔 감시하 남북지도자들간의 합의에 의한 전국총선"으로 요약된다.36) 이제까지 원칙적으로는 남북총선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선 참여 가능성에 대해 다소 여지를 남겨두었던 김구는, 이제 단선 반대의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고 지금까지의 파트너였던 우파진영과 결별한 뒤 김규식 등 중도파와 함께 남북한 총선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게 된다. 김구는 김규식 등과 함께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의 협조 아래남북회담을 통해 유엔 감시하 전국총선을 실현시키고자 했으며, 또한 좌파들과는 달리 유엔을 미·소양군 철수 이후 진공상태를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관리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엔에 대한 김구의 기대는 유엔소총회의 단선결정으로 무산되었다.

남한단선 방침이 결정되자 미국 당국자들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요인들은 김구·김규식에게 단선 참여를 적극 권유하면서 남북회담을 만류하였다. 이들의 참여는 남한단선을 정당화하는 데에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구는 중도파와 함께 남북연석회의를 주도하였다. 남북회담에 임하는 김구와 김규식의 태도는, 중간좌파나 일부 중간우파와는 달리, 미·소에 대한 평등한입장을 견지하면서 남북의 단독정부를 모두 반대하는 것이었고,37) 따라서 이들과 달리 북에 잔류하지도 않았다. 김구의 이념적 지향에서 볼 때 북한은대안이 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김구의 민족주의적 지향에서 볼 때 남한단선 역시 수용할 수 없었고, 결국 5·10선거 불참을 선택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좌파에서 중도, 우파 민족주의세력인 김구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광범한 정치집단들이 남한단선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불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파의 한민당과 이승만계 및 월남세력을 대표하 는 朝鮮民主黨계 등은 적극적으로 단선을 추진하였다. 1차공동위원회 결렬 직후부터 단정수립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던 이승만은 1947년 6월 27일 과도

^{36) 1948}년 1월 28일 김구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제출하는 〈미·소양군 철수 및 남북한인 지도자회의 소집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경향신문》, 1948년 1월 29일.

³⁷⁾ 도진순, 앞의 책, 237쪽.

입법의원에서 〈입법의원선거법〉이 통과되고 또한 7월에 들어 2차공동위원회의 사실상 결렬이 확인되자, 과도입법의원에서 작성한 선거법에 의한 남한총선거 실현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승만 주도 아래 7월 4일 우익 88개 단체는 입법의원선거법에 의한 총선을 결의하고, 7월 10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서 '한국민족대표자회의'를 결성하였다. 한민당 역시 "통일정부 수립 전이라도 〈보통선거법〉을 실시하여 조선인 자주의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고, 조선민주당 역시 남조선만의 단독선거라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8) 이후 유엔 감시하 남북총선 방침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1947년 말까지 계속하여 "과도입법의원 선거법하에서 연내에선거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미군정당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1948년 1월 입국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대해서 이승만과 한민당 등은 조속한 남한선거와 단정수립을 역설하였고,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시도를 맹렬히 비난하였다.39) 따라서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의 남한단선 결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이들이었다.

이승만·한민당의 우파세력은 이와 같이 조속한 남한단선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선거에 대비한 조직적 준비를 진행시켰다.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회계는 1947년 7월 조직한 '민족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수립하고 1947년 말까지 그 하급조직을 남한 각지의 시·군·구에 이르기까지 완료하였다. 또한 1948년 2월에는 선거운동의 전위대로 이용하기 위해 4개우익 청년단체를 통합한 '구국청년연맹'을 결성하는 한편, 국민회의 총선거후원회 조직, 이승만의 천위조직인 국청 조직의 강화 등을 통해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민당 역시 1947년 11월 선거대책대강을 작성하면서 선거준비태세에 돌입하였다. 특히 한민당원인 趙炳玉 경무부장과 張澤相 수도경찰청장의 지원과 막대한 선거자금, 동아일보를 이용한 선전 등이 이들의 자

³⁸⁾ G=2, W/S, no.96.

[《]동아일보》. 1947년 8월 30일. 9월 13일.

[《]서울신문》, 1947년 8월 30일,

[《]조선일보》, 1947년 9월 13일.

³⁹⁾ 한민당은 김구를 '크레믈린궁의 한 신자'로 맹렬히 비난하였다.《동아일보》, 1948년 1월 30일.

408 IV.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원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단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각 정치세력들의 대응을 정리하면 $\langle \text{표 1} \rangle$ 과 같다.

〈丑 1〉	정부수립 과정에서 각 정치세력들의	이자

정치세력	좌파진영	2	중도진영		우파진영	
	기네	중간좌파(근로민	민독당	중간우파	7] 7	이승만
이슈	좌파	주당, 5당 캄파)	(홍명희)	(김규식)	김구	한민당
유엔 감시하	극력	7.17 비네	2] 2]	지지	지지	지지
전국총선	반대	적극 반대	지지			
유엔 감시하	극력	적극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지지
남한단선	반대	식도 반대				
남북협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시 기 키스	즉시	조기 원스	-	철수(3~6개	즉시철수	주둔
양군 철수	철수	즉시 철수		월 준비기간)	(유엔 치안)	
5 · 10선거에	폭력	적극 반대	적극	불참	불참	참여
대한 대응	저지	식구 반대	반대	至台	풀섬	
해주 남조선	참여	참여	참여	반대	반대	반대
인민대표자대회	심역	[설억	검역			
체제선택		북한	남한			

(3) 5 · 10선거와 그 결과

5·10선거는 분단과 함께 남한 반공체제와 우파세력의 정권장악이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진 조건하에서 치러졌다. 반공체제하에서 좌파는 사실상 불법화되었으며, 좌파세력 스스로도 남한체제내의 합법적 정치세력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5·10선거를 무력으로 저지하려 시도하는 일방 북한정권 수립에참여하는 길을 택하였다. 더욱이 단정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김규식 및 김구가 선거에 불참함으로써 이승만과 한민당에 필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는 시행되었다. 그러나 반공체제와 우파세력만의 참여라는 한계내에서도, 선거 자체는 복수정당의 참여와 경쟁이 보장되고모든 성인에게 평등하게 1인 1표가 보장되는 즉,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기초

하여 치러졌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5·10선거는 미군정이 주관하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참관한 가운데 준비되고 실시되었다. 2월 2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지역 선거 참관을 결정하자, 3월 1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를 통해 선거를 5월 9일 실시할 것임을 공포하였다. 이어 3월 3일에는 선거관리기관인 '국회선거위원회'가, 기존의 중앙선거준비위원회를 그대로 계승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으며, 17일에 〈국회의원선거법〉, 22일에 〈국회의원선거법 시행세칙〉이 각각 공포되었다.40) 이상과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미군정은, 단선 반대세력의 선거 반대투쟁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등 치안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조직을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선거 홍보 및 등록촉구 등에 모든 공공기관을 동원하였다.41)

군정의 선거준비 조치와 함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선거 참관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착수하였다. 위원단은 선거 참관의 조건으로 제시한 자유분위기조성을 위한 10가지 사항을 3월 19일 하지에게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형사소송법〉개정, 정치범 3,140명의 사면, 청년단체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등록과정의 자유분위기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위해 중앙선거감시위원회 및 지방감시반을 편성하였다.42)

이상과 같은 선거 준비를 바탕으로 3월 30일부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었

⁴⁰⁾ 선거법과 시행세칙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보선법과 중앙선거준비위 원회가 준비한 시행세칙을 중심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미군정이 협의하여 개정한 것이었다.

⁴¹⁾ 경남지역에 대한 군정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모든 행정단위의 한국인 관리들이 선거위원회 지원팀으로 조직되었고, 도청이나 군청·시청 등에서 다른 업무는 거의 중지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n the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on 1948.5.10,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UTCOK"(이하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Inclosure No. 45, Records of the American Delegation, U.S.-U.S.S.R. Joint Commission on Korea, and Records Relating to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 1945~1945(The National Archiv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roll 13.

^{42) 《}조선일보》, 1948년 3월 25일.

다. 유권자 등록은 남로당의 폭력적인 단선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속에서 진행되었다. 남로당의 단선 저지투쟁은 '2·7구국투쟁'으로 본격화되었는데,⁽⁴⁾ 유권자 등록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봉화 소요, 선거등록사무소 피습, 등록서류 파기사건 등이 발발하였고, 제주도에서는 단선 저지를 위한 무력시위('4·3사태')가 발발하였다.

남로당의 무력투쟁보다 단선 추진세력에게 부담이 된 것은 김구·김규식 등이 중도파세력과 함께 추진한 남북협상이었다. 남북협상을 통해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이들의 민족주의적 주장은 상당한 대국민 호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단선 참여세력들은 남북협상을 "총선을 파괴하려는 북한의 모략"이라고 비난하였고, 군정당국 역시 '남북협상의 허구성'을 홍보하는 데 선전·홍보활동의 초점을 맞추었다.

선거인 등록에는 경찰·청년단체·행정기관 등에 의한 압력 및 강압적 수단도 동원된 듯하다.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각도와 주요 도시를 시찰한 유엔위원단은, "미곡배급통장을 발급하는 지방행정 사무실에서 등록을 실시하고 미곡배급통장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하여 강제등록을 시키며, 경찰 및 청년단체가 등록을 강제한다는 등의 불평을 접수했지만 구체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밝히면서, "등록반대자 중에는 주위에서 그들의 애국심을 의심할까 두려워서 등록한 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군정측의 선거 결과보고서 역시 "등록 및 선거하도록 하는 협박 및 폭력이전혀 없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여 압력과 강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44)

이러한 논란 속에서 4월 16일 유권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국회선거위원회는 등록 결과 총유권자 877만 1.126명 중 805만 5.295명이 등록함으로써

⁴³⁾ 김남식, 《남로당 연구》(돌베개, 1984), 303~333쪽.

⁴⁴⁾ 국제신문사 출판부 역, 앞의 책, 166~167쪽.

[&]quot;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Inclosure 45. 한국여론협회가 4월 12일 서울 충무로와 종로에서 행인 1,26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자발적 등록이 9%, 등록을 강요당한 자가 91%라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보부는 조사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하였다. 《조선일보》, 1948년 4월 15·16일.

91.8%라는 높은 등록률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고,45) 하지는 90% 이상의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것은 "투표하고자 하는 전 조선국민의 압도적 표시"라고 환영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 수치는 약간 과장된 것이었다. 왜냐하면이 수치는 선거 당시의 정확한 인구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946년 8월 25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유권자수에 바탕한 것이었기 때문에,46) 그 이후의 인구증가분(남한으로의 이입인구 및 자연증가)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등록률이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선거 이후 작성된 미군정의 공식 선거보고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48년 4월 1일 현재 추정 총인구 1,994만 7천 명의 49.3%인 983만 4천 명을 유권자로 추산함 때 등록률은 79.7%로 계산된다(〈표 2〉).47)

⟨丑 2⟩

5·10선거 투표현황

구분 지역	총인구 (1948.4.1.현재)	유권자	등록자 (유권자 대비 등록률)	투표자 (등록자 대비 투표율)	투표율 (유권자 대비)
서울	1,247,000	616,000	568,2914(92.2)	488,3049(92.8)	79.2
경기	2,575,000	1,269,000	1,085,470⑤(85.4)	981,638(96.6)	77.3
강원	1,167,000	575,000	467,554 (81.3)	458,038 (98.0)	79.7
충북	1,147,000	565,000	461,885 (81.8)	444,632 (96.3)	78.7
충남	1,992,000	982,000	794,392 (80.9)	760,694 (95.8)	77.5
전북	2,093,000	1,032,000	801,988⑥(77.7)	727,718@(96.7)	70.5
전남	3,058,000	1,508,000	1,106,397⑦(73.3)	908,879(93.6)	60.2

^{45) 《}경향신문》, 1948년 4월 15일.

^{46) 《}서울신문》, 1948년 4월 15일.

^{47) &}quot;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p.cit., p.5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 91쪽,

등록자수에 대한 자료로는, 위의 군정 및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서 외에도 《남조선과도정부활동보고서》(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No.31, p.151. 등록자수 7,837,504명, 등록률 78.7%), 4월 14일자 국회선관위의 공식 발표(《경향신문》, 1948년 4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초로 발행한 선거사인《대한민국선거사》(1964) 등이 있는데, 조금씩 수치가 틀린다. 여기에서는 당시 선거 시행당국인 군정당국과 선거 참관기관이었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서를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다.

구분 지역	총인구 (1948.4.1.현재)	유권자	등록자 (유권자 대비 등록률)	투표자 (등록자 대비 투표율)	투표율 (유권자 대비)
경북	3,260,000	1,607,000	1,227,597\&(76.4)	992,036@(92.1)	61.7
경남	3,300,000	1,627,000	1,287,890 (79.2)	1,242,750 (96.5)	76.3
제주①	108,000	53,000	37,040 (69.8)	32,062 (86.6)	60.5
총계	19,947,000②	9,834,000③	7,837,504 (79.7)	7,036,750@(95.2)	71.6

- *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p.cit., Inclosure No. 4. & Inclosure No. 55;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1: 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 I》, 1987, 91쪽.
- ① 선거무효된 북제주군을 제외한 남제주군만의 통계.
- ② 1946년 9월 현재 총인구(19,369,270명)+1946년 9월부터 1948년 3월까지 남한으로의 이입 인구(228,369명)+자연 인구증가분(523,240명, 증가율 년 1,8%로 계산).
- ③ 1947년 21세 이상인 자의 등록(750만 명 대상)에서 도출된 49.3%에 기초.
- ④ 단독입후보 1개 선거구(등록자 42.021명) 포함.
- (5) 단독입후보 2개 선거구(등록자 68.755명) 포함.
- ⑥ 단독입후보 1개 선거구(등록자 49,149명) 포함.
- (7) 단독입후보 3개 선거구(등록자 135,292명) 포함.
- (8) 단독입후보 5개 선거구(등록자 150.405명) 포함.
- ⑨ 단독입후보 선거구의 유권자는 제외.

하지만 80%에 이르는 등록률을 보인 것은, 그것이 최초의 보통·평등선거 였다는 점, 남로당의 폭력적 저지와 남북협상이 진행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높은 등록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입후보자 등록 역시 4월 16일에 마감되었다. 그 결과 200개 선거구에 총 948명의 후보자들이 입후보하였다. 소속정당·단체별로 보면, 대한독립촉성 국민회 235명, 한국민주당 91명, 대동청년단 87명, 민족청년단 20명 등의 순이었고, 무소속이 417명을 차지하였다. 단체별 인원에서 보듯이 입후보자의 주류는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회와 한민당, 우익 청년단체 등이었다. 무소속의 다수는 역시 우파세력이었다.⁴⁸⁾

⁴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1964), 383쪽.

미군정 당국의 보고서는 "당 소속을 선언하지 않은 많은 후보자들은 남한지역에서 인기 없는 한민당과의 연관이 가져올 폐해를 회피하기를 열망하는 사실상의 우익분자들이었다"라고 적고 있다(〈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 86쪽).

입후보자 등록과정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부각되었다. 하나는 우익진영의후보자 난립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중도파세력의 입후보였다. 한독당·민족혁명당·민족자주연맹 등 남북협상에 참여한 중도파세력들은 모두 당이나조직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거 불참을 선언했지만, 상당수가 무소속 내지개인자격으로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한민당·조선민주당·동아일보 등 우파진영에서는, 단선에 반대해 온 이들이 입후보한 것은 "웃지 않을 수 없는 일"로서 "민족진영을 착란하여 독립을 지연시키려는 분홍색 푸락치의 선거 방해공작"이라고 격렬히 비난하였다. 특히우파진영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한국독립당과 중도파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자,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경계의식하에 '민족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시도되기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49)

입후보 등록까지 마감되고 투표일이 다가오자 군정은 남로당의 선거 파괴 위협에 맞서 경비태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군정은 선거기간에 경찰력을 보충하여 좌익의 선거 방해를 막고 향토를 방위한다는 목적 아래 향보단을 조직하였다. 향보단은 딘(William F. Dean)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경무부장의 지시에 의해 각 경찰지서 단위로 설치되었는데,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 남자로 구성되었으며 우익 청년단원들이 대부분 이에 소속되었다.50) 선거에 즈음하여 5월 3일 경무부내에 비상경비총사령부가 설치되고, 5월 8일에는 미군당국에 의해 특별경계령이 내려졌으며, 국방경비대에도 경계령이 내려졌다. 선거일에 임박한 5월 8일, 남로당에 의한 '단선반대 구국총파업'을 필두로 마지막 공세가 이후 며칠 동안 격렬하게 전개되어 8~10일 동안에만 경찰 및 좌우민간인 등 총 80여 명이 사망하고 경찰서 및 투표소 90여 곳 이상이 습격을 받았다.51) 〈표 3〉에서 보듯이 남로당의 '2·7구국투쟁'부터 5월 14일까지 사망 334명, 부상 330명이라는 인명 피해상황만 보아도 선거가 얼마나 치열한

^{49) 《}동아일보》, 1948년 4월 3·8·11·14·21·25일.

[《]경향신문》. 1948년 4월 14 · 26일.

[《]조선일보》. 1948년 4월 25 · 27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 앞의 글, 87쪽.

^{50) 《}조선일보》, 1948년 4월 17·18일.

⁵¹⁾ G-2. W/S. no.139.

414 IV.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좌우갈등 속에서 치러졌는지를 알 수 있다.

남로당의 저지투쟁과 함께 남북회담이 추진되고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5월 10일 남한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남한 전역에서 등록자 중 90% 이상이 투표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과 과도정부는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라고 논평했지만, 선거를 보이코트한 좌파와 중도파에서는 이번 선거는 웃음거리일 뿐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채 시행되었다고 비난하였다.52)

〈표 3〉 선거 방해 활동(1948년 2월 7일~1948년 5월 14일)

종류		건수 또는 인명수	종류		건수
선거사무소 피습		131		소총	68(회수 58)
관공서	피습후 격퇴	220	무기	카빈	50(회수 19)
피습	방지	81	도난	권총	2(회수 2)
경찰 피		72		탄약	1,619(회수810)
	선거공무원	사망 15, 부상 61	철도	기관차	71
	후보자	사망 2, 부상 4	시설	철도차량	11
인명	경찰관	사망 49, 부상 128	파괴	괘도	65
피해	우익인사	사망 11, 부상 47	통신	전화선 절단	541
7 011	경찰관 가족	사망 7, 부상 16	시설	전신주	543
	일반인	사망 107, 부상 387		통신수단 파괴	13
	폭도	사망 261, 부상 123	파괴	전선 절단	15
	선거 사무소	32	선거문서 도난		116
	선거 시설	5	선거종사 공무원 위협		73
방화	경찰서	16	후보자 위협		24
	관공서	18	선거반대 파업		44
	주택	153	선거팀	반대 맹휴	75
	선거 시설	41	선거반대 데모 전단 살포		241
파괴	경찰서	12			275
	관공서	22	봉화		877
	주택	69			
	도로 및 교량	48			

^{* &}quot;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p.cit.*, Inclosure No. 42B. Table of Anti–Election Activities.

^{52) 《}경향신문》, 1948년 5월 13일. 조순승, 앞의 책, 176쪽.

선거 종료 이후 미군정의 공식 보고서 및 이에 기초한 유엔한국임시위원 단 자료에 따를 때, 투표율은 등록자 대비 95.2%였다. 53) 총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의 투표율은 71.6%였다. 선거에는 당초 입후보자 942명 중에서 사망·기권 등으로 빠진 40명을 제외한 902명이 최종 출마함으로써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 결과 전국 200개의 선거구 중에서, 4·3사태로 인해 무효로 선언된 북제주군 2개 선거구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의원이 선출되었다. 54) 당선자 198명의 소속정당을 당선자 스스로 밝힌 바에따라 살펴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4명, 한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민족청년단 6명, 한국독립당 1명, 조선민주당 1명, 기타 군소단체 10명, 무소속85명 등이었다. 55) 그러나 이것은 당선자의 정확한 정화별 구성을 반영하지못하는 것이었다. 56) 보다 정확한 통계는 85명에 이르는 무소속의원을 다시정화별로 분류한 국회선거위원회의 발표였다. 이를 기준으로 당선자들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한민당 76명, 대한독립촉성국민회 61명, 한국독립당 17명, 대동청년단 16명, 민족청년단 10명, 조선민주당 0명, 중도계 10명, 기타 10명

⁵³⁾ 투표율에 대해서 1968년 발행된 《대한민국선거사》는 95.5%라고 기록하고 있다.

^{54) 5}월 24일 단 군정장관은 북제주도 갑·을 양구의 투표가 5할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선고하고 6월 23일 재선거를 시행하기로 명령하였는데, 6월 10일 이를 다시 무기연기시켰다.

[《]서울신문》, 1948년 6월 13일.

[《]동아일보》, 1948년 6월 13일.

^{55) 1949}년 5월 10일 실시된 북제주군 선거를 포함하면 대한독립촉성회 55명, 한 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민족청년단 6명, 한독당 1명, 조민당 1명, 기타 단체 11명 등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1(1973), 616~617쪽. 국회사무처, 《제헌국회경과보고서》(1986), 21쪽.

⁵⁶⁾ 전체 의원의 42.5%를 차지하는 무소속의 경우, 한민당원이 공천에서 탈락하였거나 아니면 한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나쁜 이미지를 고려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한 예가 적지 않았고, 또한 한독당이나 중간과 계열의 인사가 단선불참이라는 당명을 어기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도 있었다(김일영, 〈농지개혁, 5·30선거, 그리고 한국전쟁〉, 《한국과 국제정치》11·1, 1995년 봄·여름, 305쪽). 또한 정당공천제가 법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부재했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정당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입후보한 경우도 허다하였다. 더욱이 5·10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단체 역시 뚜렷한 조직적 결집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특히 대한독립촉성회같은 범정당적 조직에는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등이었다.57)

선거 이후, 유엔한국임시위원단내에서는 5·10선거 결과 구성된 의회를 11월 14일자 총회결의안에 명시된 국회(National Assembly)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6월 25일 "1948년 5월 10일의 선거 결과는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하고 전 한국민의 3분의 2를 점하는 지역의 선거민들이 그들의 자유의사를 합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유엔한 국임시위원단은 6월 25일 국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국회는 한국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1948년 5월 31일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국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58)

(4) 제헌국회와 정부수립

5·10선거 이후, 선거에 참여한 단정추진세력과 미군정 및 과도정부는 조속히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를 수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된다. 이에 대한 도전은 두 방향에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좌파세력이었다. 5·10선거를 무력으로 저지하는 데 실패한 좌파세력은, 남한 지하선거를 통해소위 '전국적 대표성'을 지닌 정부를 북한에 수립한다는 전략으로 나왔다.이를 위해 좌파세력은 7월 15일부터 남한 전역에서 인민대표자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지하선거'를 감행하였고,59) 미군정·과도정부는 대대적인 검거로 이에 맞섰다.

단정수립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은 임정 및 중도파세력으로부터 나왔다. 김

⁵⁷⁾ G-2, W/S, no.141, p.5.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관한 미국 연락장교의 보고서〉, 90쪽. 한편 선거 후 한민당 선전부는 자당 당원으로서 당선된 자가 84명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 1948년 5월 22일).

⁵⁸⁾ Department of State, *U.S.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 1950*(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pp.151~152. 김동국,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연구〉(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9),

^{98~99}쪽. 송선희, 앞의 글, 12~13쪽.

⁵⁹⁾ 김남식, 앞의 책, 342~343쪽.

구와 김규식은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회에 불참한 것은 물론 북한선거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를 정권 처분함으로써 북한정권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남한정부 수립과정에도 역시 참여를 거부하였다. 김구는 단정 불참과 통일독립노선을 재확인하고, 독자적으로 유엔에 대표를 파견하여독자노선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제헌국회의 건국과정과 맞물리면서 전개된임정세력 및 중도파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승만·한민당진영과 대립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내에 진출한 중도파세력의 동향이다. 제한국회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당수의 김구·김규식노선 지지세력이 원내에 진출하였는데, 이들은 한민당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양대 보수세력에 더하여 제3의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제헌국회 초기 원내 정파의 세력은 대체로한민당 70~80여 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 60여 석, 무소속 50여 석 정도로추산되는데, 무소속 중 약 30여 명 정도가 김구 및 김규식계의 중도파세력으로 추산된다.60) 이들은 친일파 처리문제, 토지개혁문제, 통일문제 등 건국초기의 중요한 의제를 둘러싸고 원외의 중도파세력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참여를 통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헌법제정 및 정부수립 과정은 크게이들 세 정치세력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먼저 5월 31일 개원한 국회는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대한독립촉성회의 申翼熙와 한민당의 金東元을 각각 선출한 데 이어, 6월 3일 '헌법 및 정부조 직법기초위원회' 설치를 마치고 헌법안 작성에 착수하였다. 주지하듯 헌법초 안은 기초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김성수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俞鎭 午案을 텍스트로 하여 작성되었고,61) 기초위원회 위원장은 한민당의 徐相日이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헌법안은 이승만의 내각제 반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각책임제・단원제・대통령간선제 등을 골자로 택하였는데, 한민당의 의사가 대체로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62) 그러나 헌법안의 본회의 상정 직

⁶⁰⁾ 김영상, 〈국회내 각파세력의 분포도〉(《신천지》, 1949년 3월).김일영, 앞의 글.

⁶¹⁾ 유진오, 《헌법기초록회고록》(일조각, 1980), 17~51쪽. 류수현, 〈제1공화국 헌법제정과정〉(《한국의 사회와 문화》7, 1986년 10월), 194~195쪽.

전, 이승만은 내각책임제하에서는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민당을 위협하였다. 김구·김규식 등 민족주의 우파세력마저 단정수립에 불참한 상황에서 이승만마저 이탈할 경우 신생정부의 수립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한민당은 당초 주장을 꺾고 내각제 중심의 헌법안을 대통령제로 긴급히 수정하였다.

기초위원회에서 작성한 헌법안이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본격적인 헌법안 심의가 시작되었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는 내각중심제와 대통령제, 양원제와 단원제 등 권력구조를 둘러싼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으며, 그 외 국가통제를 규정한 경제조항, 근로자의 권익보호조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반민족행위자처벌 특별법 제정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대체로 무소속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세력들이 이승만에 맞춘 권력구조의개조 및 졸속 심의 등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음에 반해, 한민당과 이승만의 단정연합은 조속한 정부수립을 위해 헌법안의 조기 통과에 주력하였다. 63) 그결과 헌법안은 불과 13차의 회의를 거쳐 7월 12일 최종적으로 통과되었고, 7월 17일 하지를 비롯한 군정요인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공포식이 거해되었다.

제헌헌법은 권력구조에 있어 기형적인 면이 있었지만, 내용 자체만을 두고볼 때는 기본권의 광범위한 보장, 3권분립을 통한 권력간 견제와 균형, 사법권 독립, 지방자치 등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모두내포한 선진적인 것이었다. 특히 경제조항에서 자유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되 광범한 국가통제와 균등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사회주의적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 각국 헌법, 바이마르헌법 등 선진 외국의 헌법들이 폭넓게 수용된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토지개혁, 노동3권, 노동자의 기업이익분배 균점권, 반민족행위자처벌 근거조항64) 등 건국과정에서 제기된 일

⁶²⁾ 헌법기초위원회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승만은 헌법 초안을 전 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사 편, 《비화 제1공화국》1(1975), 104~107쪽.

⁶³⁾ 대체토론 과정에서 신익희 부의장의 제의로 각 의원의 발언시간은 5분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축조심사과정에서는 조속한 헌법제정과 정부수립을 위해 수 정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 이승만의 요구에 따라 백여 건에 달하는 수 정안이 거의 철회되기도 하였다.

⁶⁴⁾ 반민족행위자 소급 처벌규정은 당초 초안에는 없었지만, 제헌국회 중반기 소

반 국민들의 요구를 광범하게 수용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 제정 다음의 과제는 정부수립 즉, 정·부통령선거와 組閣이었다. 이 시점에서 이승만의 대통령 취임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다. 이승만과 대결할 유일한 위치에 있는 김구는 5·10선거 참여를 거부하였고 또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이승만은 7월 20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196명 중 180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따라서 초점은 부통령선거, 대통령에 의한 국무총리 지명, 장관 인선 등에 맞추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승만과 한민당의 관계, 그리고 임정계 및 중도파세력의 입각 여부였다.

먼저 제헌과정에서 이승만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통령제를 수용하였던 한민당은 내각을 장악하려는 시도로서, 원내 제1당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정당내각'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국무총리 김성수하에 한민당·조선민주당·대한독립촉성회·과도정부세력 등이 참여하는 연립내각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65) 대한독립촉성회를 중심으로 한 비한민당 우파세력과무소속의원들의 반발로 좌절당하게 된다.66)

한편 이승만계와 한민당세력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임정계열 및 중간파의입각을 배제하는 데에는 이해를 같이 하였다. 임정계 및 중도파세력은 5·10 선거 이후 '남한정부 지지파'와 '독자적 통일운동파' 등으로 분화되는 양상을보였는데, 특히 무소속으로 원내에 진출한 진보·민족주의적 분파들을 중심으로 김구·김규식계를 남한정부에 참여시키려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67)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무소속구락부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장파로 활동한 김광준 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부칙으로 삽입되었었다. 김영상, 〈헌법을 싸고 도는 국회 풍경〉(《신천지》, 1948년 7월), 24~26쪽. 유진오, 앞의 책, 55쪽.

⁶⁵⁾ 문창영, 〈한민당은 어데로 가나?〉(《신천지》, 1948년 9월), 27쪽.

^{66) 〈}통합체 무소속구락부〉는 국무총리 및 내무·재무·국방부 장관 등의 요직에 과도정부 인사와 한민당측 인사를 기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22일 이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무소속 의원들도 〈조각 인선에 관한 건의안〉을 이승만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일보》, 1948년 7월 23일.

[《]제1회 국회 속기록》제37호(1948년 8월 2일).

⁶⁷⁾ 도진순, 앞의 책, 315쪽.

김구, 국무총리 조소앙'안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68) 그러나 임정계 및 중도 파의 정부참여 시도에 대해 한민당과 이승만계는 강력히 반대하였다.69) 이러한 대결구도하에서, 결국 7월 20일 李始榮이 부통령에 당선되었고,70) 국무총리에는 李範奭이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된다.71)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으로는 외무 張澤相, 내무 尹致暎, 재무 金度演, 법무 李仁, 국방 이범석(겸임), 문교 安浩相, 농림 曹奉岩, 상공 任永信, 사회 錢鎭漢, 교통 민희식, 체신 윤석구. 무임소국무위원 李靑天・李允榮 등이 임명되었다.72)

원내 최대 정파인 한민당은 김도연 한 명이 입각하는 데 그쳤고, 초대 정부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보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을 임정계 및 중도파세력역시 배제되었다. 이승만은 한민당과 임정계·중도파의 갈등을 이용하여 이

⁶⁸⁾ 무소속구락부는 7월 17~19일 연 3일간 회합을 통해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김구, 국무총리 조소앙'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동아일보》, 1948년 7월 20일;《서울신문》, 1948년 7월 20일). 그러나 7월 20일 국회의 부통령선거에서 김구는 1차투표에서 65표, 2차투표에서 62표를 얻는 데 그쳤다. 김구 부통령 카드가 무산되자 무소속구락부는 국회의원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소앙을 국무총리에 임명할 것을 이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경향신문》, 1948년 7월 11일;《동아일보》, 1948년 7월 23일; G-2, W/S, no. 150, 1948년 7월 30일).

⁶⁹⁾ 대동청년단의 이청천이 '김구 부통령'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통령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한 세트로 하여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전 조정할 것을 제안하자, 한민 당과 친이승만세력은 이럴 경우 민족진영의 쌍벽인 '이승만-김구'의 이미지로 인해 김구가 부통령에 당선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 저지하였다. 또한 이 승만은 7월 20일 오전 대통령에 당선된 뒤 오후의 부통령선거에 앞서 이시영 을 공개적으로 부통령에 추천하였다. 이시영은 임정 출신이었지만, 김구의 남 북협상노선을 배격하고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지지한 인물이었고 더욱이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원로'에 불과하였다(동아일보사 편, 앞의 책, 1975, 129~134 쪽). 국무총리 지명에 있어서도 이승만은 조소앙에 대해 "단정 반대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는 어렵다"는 말로써 배제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⁷⁰⁾ 김구가 자신의 부통령 추대 움직임을 거부하는 가운데, 한민당과 대한독립촉 성회의 우파연합이 이시영을 지지하고, 무소속계가 김구에게 표를 던진 결과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⁷¹⁾ 이승만은 일반적으로 예상되었던 김성수·신익희·조소앙 등을 모두 배제하고 월남한 이윤영을 총리로 지명하였지만 국회인준을 받는 데 실패하였고, 결국 2차로 지명한 이범석이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된다.

 ⁷²⁾ 김성수도 무임소국무위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을 거절하였다.
 《동아일보》, 1948년 8월 4·5·8일.
 《조선일보》, 1948년 8월 13일.

들 모두를 초대 정부에서 배제한 것이다. 초대 내각의 성격은 주도적 정파가 없는 일종의 연립내각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내각에 참여한 자들은 대개 이승만의 사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이 점에서 이승만 정부의 조각 구성은 5·10선거의 미진함을 보완하여 우익의 통합을 달성하기는 커녕, 단정진영내의 분열까지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이러한 초대 정부의 구성과정은, 임정계 및 중도파 배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친미반공이라는 정권의 성격을 뚜렷이 함과 동시에, 반공체제내에서 한민당과 이승만간의 격렬한 권력투쟁으로 인한 헌정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헌법제정 및 정부구성 과정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극동연합군총사령관 맥아더,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장 루나(Luna)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하지는 15일 밤 자정을 기해 주한미군정이 종식됨을 알렸다. 신정부가 수립된 뒤 한ㆍ미정부간에 정권 이양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8월 24일 신정부에 경찰ㆍ통위부ㆍ해안경비대의 통솔권 및 통수권의 점진적이양을 규정한〈한미군사협정〉이 조인되었으며, 9월 11일 양국 정부간에〈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정권이양은 마무리되었다.74)

신생정부는 스스로를 남북한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정부라고 주장하였다. 6월 12일 국회는 결의문을 통해, 북한지역에서도 유엔총회의 결의에 준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선출된 대표들을 서울의 국회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75) 결정적으로 제헌국회는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남한의 정부수립이 마무리되자, 분단의 책임 회피를 위해 정권수립을 미루어왔던 북한 역시 정권수립을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이미 1947년 12월 마련한 헌법 초안을 1948년 4월 29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통과시킴으

⁷³⁾ 도진순, 앞의 책, 317쪽.

⁷⁴⁾ U. 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한호철 역, 《美國의 對韓政策: 1834~1950》,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8), 141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대한민국사 8》(1998), 95쪽 및 324~332쪽.

⁷⁵⁾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 속기록》제9호(1948년 6월 12일). 《동아일보》, 1948년 6월 13일.

로써 정권수립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남한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은, 소위 '남한 지하선거'를 통해 선출된 남측 대표를 포함함으로써 전국적 대표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였고, 최고인민회의는 9월 9일 내 각구성을 완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립을 선언하였다. 북한 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강에서 북한정권이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에의하여 수립된 통일적 조선중앙정부"라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남과 북에는 자신이 한반도의 유일한 중앙정부라고 주장하는, 사실상의 두 개의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남북정권 수립을 후원한 美·蘇는 1947년 말의 상황과 같이 유엔에서 두 정권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다시 격돌하였다.76) 미국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소련은 전국적인민주적 선거에 의해 조직된 북한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정통성과 국제적 지지를 부여하는 미국측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77) 이 결의안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전역에 걸쳐 통치권을 갖는 정부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었지만.78) 이후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

 ⁷⁶⁾ 미국은 1948년 12월 12일의 제3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1949년 1월 1일 대한민국정부를 합법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앞서 1948년 8월 12일에 신정부가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결의에 의해 구성된 한국의 정부로 간주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신정부를 사실상 승인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ugust 22, 1948, p.242).

⁷⁷⁾ 결의안 2조는 다음과 같다.

[&]quot;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한국내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이 전 한반도에 걸쳐 통치권을 가지는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은, 구한말부터 시작하여 식민지기, 미·소의 분할점령통치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추구해 온 근대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여망이 일정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신생정부는 최초의 보통·평등선거를 통해 대내적 정당성을 확보한 동시에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통해 대외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었고, 최소한 법적·제도적 수준에서는 근대적인 입헌국가, 대의제 민주주의국가를 성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헌헌법 속에 토지개혁, 친일파 처벌 조항 등을 명문화함으로써일제 잔재 청산과 반봉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생 대한민국은 많은 한계와 도전을 안고 출범하였다. 남과 북은 냉전체제의 두 패권국가인 소련과 미국의 영향권에 배타적으로 편입되면서 국제냉전의 최전방에 내몰리게 되었다. 더욱이 남북의 두 정권은 서로를 '외세의 괴뢰'라고 비난하면서 상대방의 절멸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었다. 분단이 남긴 내부의 상흔 역시 심각하였다. 분단체제 속에서 이념과 사상의지평이 폐색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심하게 제약당했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많은 민족독립세력들이 배제당한 반면, 친일파세력은 행정부와 경찰 등 신생정부의 핵심에 자리잡음으로써 신생정부는 민족적 정통성의측면에서도 흠결을 안고 출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생 대한민국은 서구의대의제민주주의를 거의 완벽하게 법제화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기반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이처럼 신생 대한민국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민족통일의 달성, 민주주의의달성, 민족적 정통성의 구현, 사회경제적 발전과 근대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던 것이다.

〈朴璨杓〉

⁷⁸⁾ 이에 대해 덜레스는, "공동결의안 제2항은 단지 명백히 사실인 것만을 언급하기 위해 신중하게 용어가 사용되었고, 사실상 현 정부가 전 한국의 정부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에 또 하나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았다"라고 언급하였다(조순승, 앞의 책, 186쪽).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1) 해방 후 북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수립과 소련군 주둔

(1) 소련군의 북한 진주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對日戰 참가의 조건으로 사할린 및 부속 島嶼의 반환, 旅順 항구의 조차권 등 옛 러시아제국이 극동지역에서 누렸던 이권들을 재확보한다는 점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은 바 있었다.1) 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2) 독일 패망 후 3개월 후인 8월 8일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3)

소련은 일본 관동군과 만주국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1 極東戰線, 제2 극동전선 및 자바이칼 전선(Забай калский Фронт) 등 3개 전선을 조직하였다. 극동전선 1군(사령관 메레쯔코프 Мерецков К.А. 원수)은 연해주지역에서 만주로 진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한국도 작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극동 소련군총사령관인 바실례프스키(Василевский А.М.) 원수가 작전을 총지휘하였다.

전투 개시 후 일본의 관동군·만주국군은 급속히 패퇴하였다. 한국의 해방을 직접 담당한 부대는 치스짜코프(Чистяков И.М.) 대장이 지휘하는 제25군이었다. 제25군은 태평양함대와 연합작전을 펼쳐 8월 11일에서 20일까지 웅기·나진·청진과 나남을 점령하였다. 8월 21일 상륙부대는 군항 원산을 점령하였으며, 8월 24일과 25일 소련 공수부대들은 산업중심지인 함홍과 평양

¹⁾ 合同通信社調査部 譯編,《알타비밀협정-美國務省發表全文》(合同通信社, 1956), 445等.

가브리엘 콜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戰後 처리문제〉(《분단전후의 현대사》, 일월서각, 1983), 60쪽.

³⁾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의 戰後 처리 문제에서 소련보다 우위를 확보하게 되며, 한반도의 분할·점령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소련과 경쟁관계에 돌입하였다.

에 투하되어 일본군 수비대의 항복을 받아냈다. 제25군 일부는 일본군과 헌병대·경찰을 무장해제시키면서 계속 남쪽으로 진격하여, 9월 초에는 미국이제안한 38도선 분할점령안에 해당하는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4)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은 각 지역에 경무사령부를 설치하였다. 8월 26일 평양에 총사령부를 설치한 데 이어,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의 명령에 따라 6개 도, 85개 군, 7개 시(평양·진남포·청진·함흥·신의주·해주·원산)에 경무사령부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들은 일본군에게 항복을 받고 무기를 접수하였으며, 행정기관·경찰서·법원은 물론 일본인 소유 대기업·철도·통신수단·은행 등을 관리하였다.5)

북한에 진주하는 소련군에는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東北抗日聯軍教導旅(일명 88여단) 소속이었다. 대일전쟁 종결 시점인 1945년 8월 25일 현재 동북항일연군교도려의 부대 전체 인원은 1,354명이었는데, 그중 한국인이 103명이었다.6) 전쟁이 종결된 시점에서 韓・中 대원들은 만주와 북한의 연고지역으로 투입되어 소련군의 점령정책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군 경무사령부 활동지역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주민 사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경무사령부 부사령관이나 고문, 지역방위담당 등으로 배치되었다. 103명의 한국인들 가운데 47명은 각 지역 경무사령부 부사령관 및 고문으로, 15명은 통역요원으로, 37명은 지역방위 및 그 외의 기관으로 배속되었다. 간부급들은 모두 각 경무사령부로 배속하게 되어있었다. 金日成은 평양에 부임하도록 하고, 金策一함흥, 安吉 청진, 金一신의주, 崔賢 - 강계, 徐哲 - 원산, 金京石(金庚石) - 진남포, 崔勇進 - 정주, 林春秋 - 사리원으로 각각 부임하도록 하였다.7)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한 김일성

⁴⁾ 유리 바닌, 〈한국의 해방: 러시아의 시각〉(《현대북한연구》 3권 2호, 2000), 27 4~282쪽.

⁵⁾ 鄭聖姙, 《소련의 對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연구-1945. 8~1948》(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39~40쪽.

기광서, 〈1940년대 전반 소련군 88독립보병여단 내 김일성 그룹의 동향〉(《역사와 현실》 28, 1998), 277쪽,

^{6) 103}명은 東北抗日聯軍 출신 88명과 소련계 한인 15명을 합친 수이다(기광서, 위의 글. 280쪽).

⁷⁾ 기광서, 위의 글, 281~284쪽.

동행 그룹은 9월 19일 원산항에 도착하였다.⁸⁾ 김일성의 귀국시 소련군 지도 부로부터 받은 직책은 평양주둔 경무사령부 부사령관(고문에 해당)이었다.⁹⁾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소속 한인들은 단지 소련군의 군사활동을 보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방 후 건국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독자적인 조직을마련하였다. 1945년 7월,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별도로 '朝鮮工作團委員會'를 조직하였다.이 위원회의 서기는 崔庸健이었으며, 김일성·김책·안길·서철·최현 등이 위원이었다. 김일성은 이 위원회에서 정치군사 부문의 책임자였다. 조선공작단위원회는 8·15 이후 북한에서동북항일연군세력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토대가 된다.10) 김일성을 비롯한 이들 유격대원들 다수는 1936년에 조직된 '동북항일연군'과 '(在滿韓人) 祖國光復會' 등에서 활동한 인물들로서,그 역사적 경험 위에서 해방 후 건국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11)

한편 소련군사령부는 북한에서 민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1945년 11월 말 소련군사령관 예하에 50명의 장교단을 통솔하는 민정담당 부사령관 직제가 도입되었다. 민정담당 부사령관에는 35군 군사평의회의원을 역임한 로마넨꼬(Романенко П.Р.) 소장이 임명되었다. 로마넨꼬 밑에는 정치행정부・산업부・재정부・상업조달부・농림부・보건부・사법검찰부・경찰통제지도부가 조직되었다. 민정담당 부사령관 기구는 1947년 5월까지 존속했으며, 그후 소련국방상의 명령에 따라 '주북한소련민정국'으로 개편되었다. 민정국은 13개 부, 총원 78명으로 구성되었다.12)

⁸⁾ 와다 하루끼(이종석 옮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창작과비평사, 1992), 290쪽.

⁹⁾ 기광서, 앞의 글, 287쪽.

¹⁰⁾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 - 민족주의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 계열의 대립과 연대를 중심으로》(아세아문화사, 1999), 489~493쪽.

¹¹⁾ 동북항일연군과 조국광복회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와다 하루끼(이종석 옮김), 앞의 책. 신주백, 위의 책.

이종석, 〈북한지도집단과 항일무장투쟁〉(《해방전후사의 인식》 5, 한길사, 1989).

¹²⁾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韓國獨立運動史研究》9, 1995), 358~359쪽.

(2)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성립과 개편

일본이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소련군이 북한지역을 장악해 가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 지부, 인민위원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조직되는 이들 지방조직들은 그 지역에서 꾸준히 민족운동·사회운동을 주도해 온 인물들에 의해 연합전선적인 형태로 건설되었다. 각 지역마다 주도세력에는 차이점이 있었다. 기독교·민족주의세력이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평안남·북도지역에서는 민족·자본주의 계열이 주도하여 건국준비위원회 지부 등을 결성하였다. 그 반면 혁명적 농민조합·노동조합운동의 전통이 강한 함경남·북도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였다. 황해도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자본주의 계열 어느 쪽도 주도권을 잡지 못한 가운데 두 세력이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방 후 북한지역의 정치적 중심지는 平壤이었다. 일제하에 평양을 비롯한 평안남·북도지역은 민족자본가층이 두텁게 존재하였으며 민족주의운동, 특히 기독교 민족주의운동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해방 직후 이 지역에서 건국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바로 이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었으며, 그 지도자는 曺晩植이었다. 조만식이 주도하여 출범한 '平安南道建國準備委員會'의 간부 명단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曺晩植, 부위원장 吳胤善, 총무부장 李周淵, 치안부장 崔能鎭, 선전부 장 韓載德, 교육부장 洪箕疇, 산업부장 洪貞模, 재정부장 朴承煥, 생활부장 李宗 鉉, 지방부장 李允榮, 외교부장 鄭基秀

무임소위원 金炳淵, 韓根祖(법조계), 金翼鎭, 金主敎(종교계), 池昌奎(유림), 朴賢淑(여성계), 金秉瑞(의료계), 金洸鎭 등(오영진, 《소군정하의 북한-하나의 증언》, 국민사상지도원, 1952, 35~36쪽; 김용복, 〈해방 직후 북한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5, 한길사, 1989, 203쪽).

평남건준은 조만식 등 평남지역의 기독교도와 민족주의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李周淵과 한재덕·김광진 등 사회주의 성향의 인물들도 이조직에 동참하였다. 조만식을 비롯하여 김병연·한근조·지창규는 민족협동 전선조직 新幹會의 平壤支會를 주도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로서,13) 민족주의

계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도 부분적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총무부장을 맡은 이주연 또한 신간회 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직을 수행하였던 咸南 端川 출신의 사회주의 농민운동가였다. [4] 이같은 민족진영의 움직임과 별도로 평양에서는 玄俊赫・金鎔範・朴正愛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가 8월 17일에 결성되었으나 소련군의 진주 전에는 그 세력이 미약하였다. [5]

평안북도에서는 8월 16일에 민족주의자 李裕弼을 중심으로 신의주치안유 지회가 결성되었다. 8월 26일에는 평안북도자치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위원 장에 이유필, 부위원장에 좌익계열인 白容龜가 선출되었다. 보안부장에는 공 산주의자 韓雄. 문교부장에는 咸錫憲이 선출되었다.16)

해방 직후 함경남도에서 한국인들은 친일경력자·민족주의자·공산주의자의 세 부류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한 쪽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8월 16일에 咸興刑務所에서 약 2백 명의 정치범·경제범이 석방되었다. 석방된 정치범 宋成寬·金在奎·朴庚得·文會彪·崔浩敏·朱致旭 등은韓祉福·朱璋淳·朱啓燮·金淸哲·朱文禛 등과 회동하여 그날 밤,'咸鏡南道人民委員會左翼'을 결성하였다.17'이 조직에 모인 사람들은 "조선 독립의 조건들이 구비되었다는 취지의 선전 삐라를 각처에 뿌리면서 급거 과거의 …동지를 통합하여 … 함남 각지에 조직운동가를 파견하는 등 활발한 운동을전개하였다. 이 결과 2~3일 만에 이미 함흥에서만 1백 명에 가까운 동지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함경남도인민위원회좌익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咸鏡南道共産主義者協議會'를 결성"하였다. 이와 별도로 都容浩·崔明

¹³⁾ 이균영, 《신간회연구》(역사비평사, 1993), 306쪽. 신간회 평양지회에서 조만식계열과 마찰을 빚었던 노동운동가, 사회주의자들은 평남건준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양에서 신간회 경험이 건국준비위원회의 토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간회 활동가들 전체가 해방 후 다시 손을 잡게 되는 것은 아니다.

¹⁴⁾ 이균영, 위의 책, 483쪽.

¹⁵⁾ 와다 하루끼,〈소련의 對北韓政策 1945~1946〉(《분단전후의 現代史》, 일월서 각, 1983), 249쪽.

¹⁶⁾ 김용복, 〈해방 직후 북한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해방전후사의 인식》5, 한길사, 1989), 204쪽.

¹⁷⁾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錄》 (嚴南堂書店, 1964), 165쪽.

鶴 등을 중심으로 함경남도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18) 도용호는 좌익 민족주의자였다.

황해도에서는 좌우익 세력간에 팽팽한 대립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金德永을 위원장으로 한 공산당 황해도지구위원회와 金應珣을 위원장으로 한 건준 황해도지부 등이 상호 충돌하고 있었다.19)

소련군은 자신의 점령지역에서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조직 결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제2차 대전시기에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은 다음의 추상적인 기본방침만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일본 및 다른 국가들이 한반도를 또다시 소련 침략의 근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반도에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할 것. 둘째, 한반도 문제를 소련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미국 등 연합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주면서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45년 8월,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분할점령을 제의해 옴에 따라, 한반도에서 소련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에 소련군을 주둔시킨다는 방침이 세워졌을 뿐이었다.20)

8월 15일 소련 제25군 사령관 치스짜코프 대장이 발표한 호소문에는 소련 군이 조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 실현은 조선 인민 자신의 몫이라는 점, 소련군은 조선 기업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상적 작업을 원조한다는 '해방자'로서의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²¹⁾ 구체적인 소련의 정책은 밝히고 있지 않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제25군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다.

뚜렷한 정치 행동지침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반도를 일본제국의 일 부로 간주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 조선총독부 기구와 관리를 그대로 활용하

¹⁸⁾ 磯谷季次,《朝鮮終戰記》(未來社, 1980), 121~122쪽. 와다 하루끼, 앞의 글, 250~251쪽에서 재인용.

¹⁹⁾ 森田芳夫, 앞의 책, 177~181쪽,

²⁰⁾ 김성보, 〈소련의 대한정책과 북한에서의 분단질서 형성, 1945~1946〉(《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61 \sim 62$ 쪽.

^{21) 〈}해방된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소련극동군 제1전선 제25군 사령관 호소문〉(《蘇聯과 北韓과의 關係-1945~1980》, 국토통일원, 1987), 31~32쪽.

는 방법을 택한 미국과 달리, 한반도를 '해방'하고 그 주민에게 권력을 되찾게 해 준다는 선언을 한 소련군으로서는, 일본 식민지 지배기구와 거리를 둔한국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소련군은 각 지역에서 건국 준비를 위해 자생적으로 조직되고 있던 각종 자치기구들에 주목하였다. 소련군은 이들 자치조직들을 주둔정책의 협력자로서 인정하였다. 다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었다. 자치조직에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방침은 먼저 함경도지역에서 취해졌으며, 평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 결과 함경도지역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급진성이 통제되었으며, 평안남・북도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사회주의자들이 자치조직에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대등하게 활동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8월 14일 나진에 진주한 후 대표를 자처하는 한국인들이 소련군을 환영하러 나왔을 때, 사령관은 "자치단체의 지도자들은 시민들 자신이 선출"하여야한다고 못박았다. 정치부와 위수사령관들은 보다 검토되고 민주적인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하였다. 즉, 집회에서 훌륭한 활동적인 애국자들을 선출하고 시자치기관에서 노동자와 주민 여러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그들에게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진에서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이홍덕이라는 醫師에게 시자치기관의 지도권이 위임되었다. 청진과 웅기에서도 시자치기관이 구성되었다.22)

함경북도인민위원회는 9월 말 청진에서 결성되었는데, 초대 위원장은 李昌仁(도회의원, 나진 실업가)이었다.²³⁾ 함남에서는 소련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미리 조직되어 있던 咸鏡南道共産主義者協議會와 함경남도건국준비위원회가연합하여 '조선민족함경남도집행위원회'라는 하나의 단체가 조직되었다. 간부진은 두 조직의 대표 각각 11명씩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²⁴⁾ 8월 25일에는함경남도공산주의자협의회의 宋成寬・崔基模・林忠錫・金仁學과 건국준비위

²²⁾ A. M. 와시리예프스키 외, 《레닌그라드에서 평양까지》(함성, 1989), 193~194쪽.

²³⁾ 森田芳夫, 앞의 책, 163쪽.

²⁴⁾ 김용복, 앞의 글, 208쪽.

원회 함경남도지부의 都容浩·崔明鶴이 高昌一·金禮鏞과 함께 치스짜코프(Цистяков И.М.) 대장을 소련군사령부로 방문하여 조선민족함경남도집행위원회를 결성하였음을 알리고, 일본측의 행정권과 기타 일체 특권을 이 위원회에 이양하도록 교섭하였다. 소련군사령부는 이를 승인하였다.²⁵⁾ 8월 30일, 조선민족함경남도집행위원회는 '함경남도인민위원회'로 개칭하고, 아래와 같이 간부진을 편성하였다.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이다.

위원장 都容浩, 부위원장 崔明鶴, 교육국장 文錫九, 재무국장 李鳳洙, 행정국 장 金濟鳳, 교통체신국장 宋成寬, 농림국장 張會建, 사법국장 趙松波, 인민보호 국장 張海友, 보건국장 崔明鶴, 함흥시인민위원회 위원장 朴鍾煥(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錄》, 嚴南堂書店, 1964, 172쪽).

함경남도에서 정치활동가들은 주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 선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한 자료에 의하면, "24일에는 각 郡·面 대표들 로서 道內 주민대표대회를 개최하고 도인민위원회를 선거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함경남도인민위원회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 전신인 조선민족함경남 도집행위원회를 가리키는지는 불확실하다.²⁶⁾

8월 26일 평양에 입성한 소련군은 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를 건준측과 공산측 위원 각 16명 씩으로 된 '평남인민정치위원회'로 개편토록 유도하였다. 위원장은 조만식이 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건준측의 오윤선 외에 공산측의 현준혁이 선출되었다.²⁷⁾

평안북도에는 8월 27일 소련군 선발대가 진주하였으며, 30일에 치스짜코프 일행이 신의주에 입성하였다. 31일에 치스짜코프는 행정을 평북임시인민정치 위원회에 이양함을 선언하였다. 이 위원회는 평북자치위원회가 단지 이름만 을 바꾼 것이었다. 조직 개편은 없었던 것 같다.²⁸⁾

²⁵⁾ 森田芳夫, 앞의 책, 169쪽.

²⁶⁾ 金哲, 〈北朝鮮人民會議는 朝鮮 實情에 가장 適切한 進步的民主主義 最高人民 政權形態〉(《인민》, 2권 4호, 1947년 5월호;《북한관계사료집》13, 국사편찬위 원회, 1992, 447쪽).

²⁷⁾ 오영진, 《소군정하의 북한-하나의 증언》(국민사상지도원, 1952), 116~117쪽.

²⁸⁾ 김용복, 앞의 글, 212쪽.

지방인민위원회들은 산하에 총무부·산업부·농림부·교육부·보안부·교통부 등 여러 부서들을 두었다.²⁹⁾ 건준지부, 또는 인민위원회의 이름으로 조직되는 지방자치기구들은 어떤 뚜렷한 정치이념·노선·세력을 기반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지역적 기반을 가진 활동가들이 널리 연계망을 형성하여 조직한 것이었으며, 일반 대중들에 기반을 두고 각종 현안을 처리하였다. 인민위원회들은 친일세력의 숙청(인민재판), 소작료 3·7제 실시, 철수한 일본인 재산·기업·농지의 운영, 식량문제 해결 등 현안들을 처리하였다. 1945년 11월 20일에 열린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38도선 이북에 인민위원회는 7개 도(경기도 포함), 9개 시, 70군, 28읍, 564개 면에 조직되었다.³⁰⁾

(3) 스딸린 비밀전문과 서북5도행정국

북한지역에 주둔한 소련극동군 제25군은 이상의 일반적 방침 이상으로는 구체적인 방침을 하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한 달을 보냈다. 드디어 9월 20일, 소련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스딸린(Сталин И.В.)은 북한지역 주둔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하달하였다. 그 내용은 최근 전문이 공개되었다.

〈북한에서 소련군 부대와 지방정권기관 및 주민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소련 극동사 령관,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와 제25군에 내린 소련군 최고사령관의 지시〉

- 1. 북한 영토 안에 소비에트 및 소비에트 권력의 다른 기관을 수립하지 말고 소비에트제도를 도입하지 말 것.
- 2. 모든 反日 민주주의정당·단체의 광범한 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권력을 수립하는 데 협력할 것.
- 3. 붉은 군대가 점령한 한국 땅에서 反日 민주주의 정당·단체 결성을 방해하지 말고, 그들의 사업을 도와줄 것.
- 4. 지방 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홍보할 것.
 - 가) 붉은 군대의 북한 진주는 일본 강점자를 섬멸하는 것이 목적이며 한국 영토를 탐내거나 소비에트식 질서를 부식시키자는 것이 아님.

^{29) 《}조선전사》 23(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108쪽.

^{30) 〈}全國人民委員會代表者大會議事錄〉(《한국현대사자료총서》12, 돌베개, 1986), 470쪽.

- 나) 북한 인민의 개인적, 사회적 소유는 소련군 당국의 보호를 받음.
- 5. 지방주민들에게 자신의 평화적인 사업을 계속하도록 호소하며 그리하여 공업, 상업, 교통 및 기타 기업들의 정상 가동을 도모하고 소련군 당국의 지시와 요구에 응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해 주도록 알릴 것.
- 6.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장병들에게 군기를 엄격히 지키고 주민을 괴롭히지 말며 행동을 잘 하도록 訓示할 것. 종교 예식 수행과 행사 등을 방해하지 말고 사참과 기타 종교시설에 손대지 말 것.
- 7. 북한의 민간행정에 대한 지도는 연해주군관구 군사평의회에서 수행할 것.(러시아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ΙΙΑΜΟΡΦ), 문서군(Φομд) 148, 목록(οπись) 3763, 문서철(делю) 111, 92~93쪽).

스딸린 비밀전문의 요점은 소련에 우호적인 권력을 북한지역에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반일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하며, 그 권력의형대는 소비에트가 아닌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소련군이 단지 일본군 무장해제만을 목적으로 하여 주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소련의 국가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에서 주둔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비밀전문은 권력수립의 문제에서 문장만으로는 그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북한지역에 친소적인 권력수립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연합국간 합의사항인 한반도 신탁통치 방침과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인가. 한반도 전역의 신탁통치 방침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미리 전제하고 분단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의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를 연합국간에 합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친소적인 권력을 수립하여 그를 바탕으로 하여 신탁통치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한 임시 권력·지역 권력수립 방안이었을까.

9월 20일은 런던에서 미·소·영 3개국의 제1차 외상회의(9월 11일~10월 2일)가 열리고 있던 시점이다. 러시아 외교문서에 의하면, 당시 소련은 한반도의 4개국 신탁통치에 참여하며 그와 더불어 釜山 등 남한지역의 항구들을 소련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자 하였다.31) 당시 분단정부 수립을

³¹⁾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로 미국과 소련간에 의견이 대립하게 되는 시점은 9월 24일 이후이다. 그 이전에 미국과 소련이 동북아시아 문제로 충돌하지는 않았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구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련은 한반도를 국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미국측의 일관된 주장에 일단 보조를 같이하되, 향후 수립될 한국정부에서 소련의 안보상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보장되게 하기 위해 북한지역에서 먼저 자신의 지지기반을 임시적으로 창출하려 한 것이 이 훈령의 의도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후 소련군의 북한주둔정책은 이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된다. 소련은 한편으로는 연합국간 신탁통치 문제를 논의해 나가되, 다른 한편으로 북한지역에서는 친소적인임시권력 수립을 현실화해 갔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그 권력을 전제로 해서 남한지역의 민주적 정당·사회단체들과 연립하여 통일임시정부를수립하고 이를 연합국들이 후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분단정부 수립방침은 적어도 1945년 시점에는 세워져 있지 않았다.

소련주둔군은 스딸린 비밀전문에 입각하여 정책을 전개하였다. 우선 지역인민위원회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0월 8~10일 사이에 평양에서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 연합회의'가 개최된다.32)이 회의에는 각 도인민위원회 대표 111명, 평양의 각계 대표 39명, 그리고 소련군사령부 대표 20명, 총170명이 참가하였다. 각 도인민위원회 대표 111명 중 51명이 공산주의자들이었다.33)

치스짜코프의 연설 후, 5개 분과별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의제는 ① 농산물 확충과 식량 성출 문제, ② 군수공장의 민수공장으로의 전환문제, ③ 금융재정 문제, ④ 지방기구의 정비·통일문제였다.34) 이 회의에서는 여러 의제 중 하나로 "광범한 모든 반일 민주주의 정당과 조직들의 블록에 기초하

다. 다시 말해 9월 20일의 시점은 미·소간에 국제적인 협조관계가 손상되지 않은 시점이다. 런던외상회담에 대해서는 김성보, 앞의 글, 62~69쪽 참조.

³²⁾ 국사편찬위원회 편, 〈해방 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일지〉(《북한관계사료집》7, 국사편찬위원회, 1989), 576쪽.

³³⁾ Лебедев Н. Г.(레베데프), "Заря свободы над Кореей (한국에서의 자유의 여명)", Во имя дружбы с народом Кореи—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ы(한국 인민과 우호를 위하여—회상기와 논문), Наука, Москва, 1965, 38쪽.

[〈]해방 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 일지〉(《북한관계사료집》7권), 576쪽에는 각도 대표 75명이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다.

^{34) 〈}해방 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 일지〉(《북한관계사료집》7), 576쪽.

여 민주적인 권력을 창출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945년 11월에 전체 里民 대회에서 이장을 선출하며 농촌과 촌락에서 선출된 선거인들의 면대회에서 7~8명으로 구성된 면인민위원회선거를 실시하기로"하였다. 또한 "시·군·도임시인민위원회들은 다양한 반일 민주주의 조직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대로 놓아두기로"하였다. 당시 시위원회는 27명까지, 郡임시인민위원회는 17~19명, 道임시인민위원회는 45~47명까지 구성35)되어 있었는데, 임시인민위원회들의 조직 구성을 보면, 각 도인민위원회에는 위원장·내무국장·보안국장·공업국장·재정국장·상업국장·농업국장이 두어졌으며, 군임시인민위원회들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36)

이 회의에서는 인민위원회 선거들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 선거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각 도임시인민위원회들에게 선거를 지도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한국의 국가헌법이 작성될 때까지 인민권력의 임시기관들에 대한 선거는 보통ㆍ평등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성ㆍ재산상태ㆍ신앙ㆍ교육ㆍ거주ㆍ민족성에 구별없이 모든 20세 이상의 시민에게 주어졌다. 일본인들은 선거권을 잃었다. 입후보권은 각 도임시인민위원회와 소련군사령부에게 강령과 지도부의 구성원을 등록한모든 반일 민주정당ㆍ단체들에게 주어졌다.37)

³⁵⁾ 면위원회는 7~8명으로 구성되었다. 각급 인민위원회 구성원들은 모두 1만 명이 넘었다. 인민위원회들에는 주민 각층이 대표되었다. 노동자・농민・인텔리 겐차・수공업자・상인・기업가・종교인・지주. 명확한 친일적 요소들은 참여하지 못하였다(러시아현대사자료보존 및 연구센터(РЦХИДНИ),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1119. 160쪽).

³⁶⁾ 러시아현대사문서보존 및 연구센터,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94, 15쪽. 각도인민위원회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황해도인민위원회는 내무국·교육국·鑛工局·農商局·재정국·경찰국·사법국·교통통신국·수송국(ILIAB HOЙ OTICEI)·입법국의 10개 국을 운영하였다. 평안남도인민위원회에는 입법국과수송국을 제외한 8개 국만 설치하였다.

Шетинин Б. В.(쉐찌닌), "Власть—Народу(권력—인민에게)", Во имя дружбы с народом Кореи—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ы(한국 인민과 우호를 위하여—회상기와 논문), 122쪽.

³⁷⁾ 러시아현대사문서보존 및 연구센터,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94, 15쪽. 레베데프에 의하면,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 연합회의'에서 리장선거는 11월 1~15일 사이에, 면인민위원장선거는 11월 15~30일 사이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Лебедев Н. Г.(레베데프), 앞의 글, 39쪽).

소련군은 주둔 직후에는 자생적으로 건설되고 있던 인민위원회에 대하여 '위'로부터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동일 비율로 조절토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³⁸⁾ 10월 단계부터는 '아래'로부터, 즉 촌락과 면 단위에서부터 선거를 통해 권력을 건설해 가는 방식을 유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선거계획은 실천에 옮겨지지는 못하였다. 그 대신 각 도인민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할 북조선행정국이 1945년 11월에 설치되었다. 소련주둔군사령부는 "경제생활을 급속히 整齊시키며 경제생활의 통일적 지도와 관리사업의 만전을 기하며 民政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소재지를 평양으로 한 北朝鮮諸行政局을 조직하고 국장들을 임명하였다.

공업국장 鄭準澤, 재무국장 李鳳洙, 교통국장 韓熙珍, 교육국장 張鍾植, 농립국장 李舜根, 보건국장 尹基寧, 상업국장 韓東燦, 사법국장 趙松波, 체신국장 趙永烈, 보안국장 崔庸健(《正路》, 1945년 11월 25일).

그리고 소련군사령관의 檢事감독에 관한 고문관으로 韓洛奎, 재판에 관한 고문관으로 梁台源이 임명되었다.39) 북조선행정국의 사업은 "신조선 건설, 국내의 경제생활 개선, 민족문화 발전 및 인민의 생활 형편을 향상시킴에 방향"을 두었다.40)

2) 정당들의 조직과 활동

해방 후 형성된 북한 권력의 중심에는 북조선노동당(북조선공산당, 북조선신민당)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였던 것은 아니며, 조선민주당·북조선천도교청우당 등 다른 정당 및 북조선농민연맹·청년동맹·직업동맹 등 사회단체들과 권력을 분점하는 통일전선정권이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북한 초기의 권력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조선노동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사회단체들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며, 아울러 여러 정당·사

³⁸⁾ 김용복, 앞의 글, 206~214쪽 참조.

^{39) 《}正路》, 1945년 11월 25일.

^{40) 《}正路》, 1945년 12월 5일.

회단체들간의 관계가 해명되어야 한다.

해방을 전후하여 북한지역에서는 함경남·북도지역의 농민조합·노동조합 운동가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내 사회주의자들(吳淇變·朱寧河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9월에는 동북항일연군 계열의 사회주의자들(金日成 등)이 귀국하였으며, 12월에 조선독립동맹 소속 활동가들이 귀국하였다. 이들 국내 사회주의 계열, 동북항일연군 계열, 조선독립동맹 계열은 소련국적 한인(허가 이 등)들과 함께 북한에서 朝鮮共産黨 北朝鮮分局과 朝鮮新民黨 등을 결성하여 소련군과 정치적으로 협조하게 된다. 그 반면 민족·자본주의세력으로서 는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曺晩植 등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朝鮮民主黨 창당을 인정받은 것 외에는 조직적인 활동이 통제되었다.

(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해방 후 북한지역에서는 서울에 본부를 둔 朝鮮共産黨으로부터 상대적인 독자성을 지니는 北朝鮮分局이 설치된다. '러시아 현대사자료보존 및 연구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한 문서에 의하면, 조선공산당의 정책 방향을 세우고북조선분국을 창설하기로 공식 결정하게 되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5도당원및 열성자대회'는 10월 13일에 열렸다. 이 대회에서 "조직문제에 대하여 오기섭과 김일성이 보고 연설을 하였다"는 기록이 신뢰할만 하다면, 김일성은이 시기에 이미 당 조직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있다.41) 한편 이 문서에는 1945년 10월 1일에 이미 평양에서 북조선의 도당책임자 및 열성자들의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朴憲永을 지도자로 하는 조선

⁴¹⁾ 러시아현대사문서보존 및 연구센터,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1119, 219쪽. 한편 소련군 정치사령부(ГлавПУРККА) 제7국 부국장 사포쥬니코프는 연해주군 관구의 보고에 근거하여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그에 의하면, 10월 6일 북조선지역의 공산당 조직위원회가 10월 6일에 창설되었다. 이 조직위원회에는 선전부·조직부·공업부·농민부·기술부의 5개부서를 둔 조직국이 만들어졌으며, 별도로 통제위원회가 두어졌다. 조직국 제1비서는 김용범이며, 제2비서는 오기섭이었다. 그리고 선전부를 박정애(베라최)가, 조직부를 이동화가, 농민부를 김책이 담당하였다(러시아현대사문서보존 및 연구센터,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47, 19~21쪽). 위의 조직 편성과책임자 임명이 확정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10월 13일의 대회를 전후하여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종속된 "북조선의 당조직 지도를 위한 조직국 창설이 발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⁴²⁾ 10월 13일에 공식적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 국 창설이 공표되기 이전에, 그 창설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의가 사전에 열렸음을 알 수 있다.⁴³⁾

위 회의의 결정에 따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중앙이 실제로 조직된 시점은 10월 20일이다.44) 북조선분국 설치와 더불어 책임비서 金鎔範・吳淇燮의 지도 아래 북한 6개 道에 道委員會가 설치되었다.45) 12월 17·18일에 열린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중앙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당 활동의 비약적 전개와 全 혁명세력의 총집결"을 위하여 金日成을 책임비서로 추천하고 延安에서 돌아온 武亭을 간부부장으로 영입하였다. 이때 새롭게 짜여진 조선 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간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책임비서 金日成

제2책임비서 金鎔範, 간부부장 武亭, 조직부장 吳淇燮, 선전부장 尹相南, 노동부 장 許가이, 농민부장 朴昌燮, 청년부장 楊永筍, 婦人部長 朴正愛.

북조선6도당 책임 진용:평남도 張時雨, 황해도 崔景德, 평북도 金明, 함남도 鄭達憲, 함북도 張順明, 강원도 金大鳳(《옳다》, 1946년 1월 6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국가건설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본민주주의)정 권 수립론으로서, 계층적으로는 노동자·농민은 물론 자본가 등을 포괄하 며46). 정치적으로는 "모든 반일 민주주의당들과 정치적 단체들의 넓은 연합

⁴²⁾ 러시아현대사문서보존 및 연구센터, 문서군 17, 목록 128, 문서철 1119, 216쪽.

⁴³⁾ 북한 출판물에 의거하여 북조선분국 결성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예비회의가 1945년 10월 5일부터 열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박명림,《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나남출판, 1996, 228~230쪽; 이종석,《조선노동당연구-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5, 169쪽). 예비회의의 정확한 개최 일 자는 불확실하지만, 1945년 10월 13일의 공식 대회인 '조선공산당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를 앞두고, 이 대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예비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설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44) 《}해방후 10년일지》 (조선중앙통신사, 1955), 41쪽,

^{45) 《}옳다》, 1946년 1월 6일.

^{46) 〈}조선공산당 북부조선 5도연합회에서 한 당조직문제 보고〉(《북한현대사 1》, 공동체, 1989), 315쪽.

의 기초"47) 위에 수립하는 통일전선정권 수립론이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소련주둔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북조선분국은 1946년 5월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 北朝鮮共産黨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서울 중앙으로부터 형식적으로나사실적으로나독립하게 된다.

(2) 조선민주당

북한지역의 민족주의자들은 1945년 11월 3일,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朝鮮民主黨'을 창당하게 된다. 당수에 조만식, 부당수에 이윤영·최용건이 선출되었으며, 1백여 명의 중앙집행위원과 30여 명의 상무집행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민족자본가·도시 소자산가·기독교인들이 주요 기반이었다.

조선민주당은 소련 등 연합국과 협조하면서 '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선민주당의 창당시 강령과 정책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 령〉

- 1. 국민의 총의에 의하야 민주주의공화국의 수립을 기함.
- 2. 민권을 존중하여 민생을 확보하야 민족전체의 복립증진을 圖함.
- 3. 민족문화를 昻揚하야 세계문화에 공헌함.
- 4. 종교·교육·노농·실업·사회 각계 유지의 결합을 요함.
- 5. 반일적 민주주의 각 당파와 우호협력하야 전 민족의 통일을 도함.
- 6. 소련 及 민주주의 제 국가와 친선을 도하야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함.

〈정 책〉

- 1.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 及 신앙의 자유와 선거 及 피선거권을 유함 민족반역자는 5대 자유와 공권을 박탈함.
- 2. 의회제도와 보통선거제의 실시.

^{47) 〈}북부조선당 공작의 착오와 결점에 대하여〉, 위의 책, 336쪽,

^{48) 《}조선로동당 력사교재》(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142쪽. 변영호, 〈해방 직후 북한에 있어서 통일전선〉(《북한현대사 I》, 공동체, 1989), 221쪽.

- 3. 교육·보건의 기회 균등.
- 4. 문화 及 사회사업기관의 확충.
- 5. 문화인 及 과학기술자의 육성과 우대.
- 6. 국제 무역의 진흥과 국내 상업의 발전촉진.
- 7. 물가와 통화를 적정조절하야 국민생활의 안정 기도.
- 8. 소작제도의 개선, 자작농창정의 강화, 농업기술의 향상.
- 9. 均正簡便한 세제의 확립.
- 10. 노농운동의 정상적 발전을 조성함.
- 11. 노자문제의 일치점을 득하야 생산의 지장이 없기를 기함.
- 12. 실업자의 대책 수립, 공장법 생산보험 건강보험 최저임금제의 지정.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미군노획문서 Microfilm(No. 809)).

강령과 정책을 보면, 조선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자본주의적 국가체제를 지향하였으며, 토지개혁 등 근본적인 사회경제개혁에 대한 정책은 지니지 않고 있었다.

조선민주당은 1946년초 모스크바 3상회의의 조선문제 결정에 반발하면서소련주둔군 및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과 마찰을 빚게 된다. 그 과정에서 조만식은 연금되고 상무위원급 33인 중 15인이 월남하였다.49) 1946년 2월 5일에 개최된 조선민주당 열성자협의회에서는 조만식 계열을 비판하는 선언문・결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조선공산당에 협조적인 인물들로 중앙위원회를 개조하고 강양욱이 임시당수 대리가 되었다.50) 이로써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간에 유지되었던 균형적 협조관계는 종식되었다.

(3) 북조선천도교청우당

천도교계는 현실참여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1945년 8월 해방 이후 신국 가건설과정에서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理想國家의 건설을 위하여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천도교청우당은 그 정치활동을 담당한 천도교계의 정치조 직으로서, 남북한에 각각 남조선천도교청우당·북조선천도교청우당이 조직.

⁴⁹⁾ 김성보, 〈북한의 민족주의세력과 민족통일전선-조선민주당을 중심으로〉(《역사비평》, 1992년 봄호), 393쪽.

^{50) 〈}해방 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일지〉(《북한관계사료집》7), 594쪽.

운영되었다.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은 30여만 명에 이르는 당원을 기반으로 하여 북조선공산당의 '友黨'으로서, 북조선민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정권수립과 제반의 사회개혁에 동참하였다.

본래 '천도교청우당'은 1931년 2월에 천도교 신파의 천도교청년당과 구파의 천도교청년동맹이 합동하여 만들어진 천도교의 정치사회단체였으나, 신구파 분규가 재연되어 1933년 3월부터 다시 천도교청년당과 천도교청년동맹으로 복귀된 바 있다.51)

은둔 상태에 있던 천도교청우당 활동가들은 해방 직후 각 지역의 조직들을 복원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주둔군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지역에서는 1945년 10월까지 지방에서 당 조직들이 만들어졌다.52) 10월 31일에는 지방 당조직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도교 청우당 부활전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민족통일결성 촉진·전재동포 구제·실업대책·기관지 발행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당위원장과 중앙위원과 각 부서책임자를 선거한 후 폐회하였다. 위원장에 金起田, 부위원장에 李應辰이 선출되었다.53) 소련민정청의기록에 의하면, 이 대회에서는 분단 조건을 고려하여 북한에 '당 서부지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서부지부 중앙위원회는 김정주의 지도 아래 13명으로 구성되었다.54)

1946년 1월 25일 중앙위원회는 당지방조직대표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당지방조직대표의 대다수는 북조선에 독립적인 청우당을 창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이 창당되었다.55) 위원장

⁵¹⁾ 만 2년에 걸친 천도교청우당의 활동은 최근 영인본으로 간행된 기관지《黨 聲》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⁵²⁾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ABIIPΦ),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 혈 47, 99쪽. 한편 표영삼은 신의주 천도교청우당 시당 간부 최동조의 증언에 입각하여 북한지역에 천도교청우당이 부활한 것은 1945년 11월 초 신의주시당 부 조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서술하였다(표영삼, 〈북한의 천도교(상)〉, 《신인 간》 375호, 1980년 3월, 23쪽). 이는 정식 지방조직이 건설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45년 10월 31일 지방 당조직 대표들이 모여 개최한 천도교 청우당 부활전당대회에서 지방 당조직 재건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조직되고 있던 지방조직을 중앙 차원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53) 《}자유신문》, 1945년 11월 5일.

⁵⁴⁾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99쪽.

은 金達鉉56), 부위원장 金廷柱·朴允吉이었다.57) 당검열위원장으로는 金明熺 가 선출되었다.58)

천도교청우당은 창립대회 때 당원이 5만 2,959명이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이 수립되는 1948년 9월 시점에는 당원수가 28만 9,494명으로 팽창하였다. 청우당원의 80%는 농민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 노동자가 7%, 사무원이 3%로서, 노동자-농민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상인·기업가·수공업자·학생 등이 부분적으로 참여하였다.59)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은 농촌에 거주하는 천도교인들로 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조선민주당과기독교계가 주로 도시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면, 천도교는 반대로 농촌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천도교청우당의 국가건설 방략은《黨志》와〈천도교정치이념〉에서 확인할수 있다. 《黨志》에서는 먼저 천도교의 원리를 종지·강령·목적으로 나누어설명한다. 宗旨는 '人乃天', 강령은 '물심일원 성신쌍전 교정일치', 목적은 '보국안민 포덕천하'이다. 그 다음 보다 구체적인 국가건설론을 당강령주해에서설명하였다. 천도교청우당의 4대 강령은 아래와 같다.

^{55) 《}해방후 10년일지》, 46쪽.

⁵⁶⁾ 金達鉉은 1884년 함경남도 高原郡 출신으로 1903년에 천도교에 입도하였다. 그가 사회활동에 나서게 된 시점은 1919년 3·1운동 때부터이다. 3·1운동 당시 고원군에서는 천도교도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는데, 고원군 종리원장 趙東源의 지도하에 김달현 등이 참여하였다. 그후 1922년에 김달현은 無産者同志會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김달현은 1922년 12월 서울의 한 파업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또한 조선농민사 교양부장으로 활동하고, 1933년에는 천도교청년당 중앙위원, 1934년 1월에는 천도교 고원군 종리원장이 되었다. 그해 12월 제8회천도교 임시대회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어 전국적인 인사가 되었다(표영삼,〈天道教의 3·1재현운동과 金達鉉〉,《북한》220, 1990, 4월호, 122~123쪽; 김준엽・김창순、《한국공산주의운동사》2권, 고려대 출판부, 1969, 34쪽).

⁵⁷⁾ 백세명,〈當時 北韓의 教會實情〉(《南北分裂沮止鬪爭-3·1再顯運動誌》, 천도 교중앙총부출관사, 1969), 148쪽.

⁵⁸⁾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99쪽,

⁵⁹⁾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군 0480, 목록 4, 문서함 14, 문서철 47, 100쪽. 1948년 11월 시점에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은 6개 도위원회, 13개 시위원회, 83개 군위원회, 617개 면위원회를 포괄하는 정당으로 성장하였다(위의 글, 101쪽).

- 1. 민족자주의 이상적 민주국가의 건설을 기함.
- 2. 事人如天의 정신에 맞는 새 윤리 수립을 기함.
- 3. 同歸一體의 신생활이념에 基한 신경제제도의 실현을 기함.
- 4. 國民皆勞制를 실시하여 日常輔國의 철저를 기함.

(《북한관계사료집》8, 438~445쪽).

〈천도교정치이념〉은 기본 취지에서는 《당지》와 논리 구성을 같이 하지만, 보다 균형적인 자세를 취하는 변화를 보여 미국식 자본독재와 소련식 무산 자독재 모두를 비판하고 전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조선적 신민주 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다만 그 균형은 보다 사회주의에 가 까운 균형이었다.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소련식에 대해서는 계급독재가 필요하지 않은 한국 적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방식을 취할 뿐이었다.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토지개혁에 동참하는 등,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友黨'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청우당은 1948년 '3·1재현운동' 사건으로 천도교인들 다수가 검거되면서 조선공산당측과 심각한 갈등에 빠지기도 하였다.

(4) 조선신민당

조선공산당의 또 다른 '友黨'은 華北朝鮮獨立同盟을 모태로 하는 조선신민당이었다. 화북조선독립동맹 간부들과 조선의용군 선발대 1,500명은 일제가패망한 이후 안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정부없는 민족에 군대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소련군이 동원한 평안북도 임시인민정치위원회 산하 보안부대에 의해 강제로 무장해제당하고 국경 밖으로퇴각하였다.60) 김두봉을 비롯한 조선독립동맹 간부들은 부득이 1945년 12월 13일, 무장해제된 채 귀국하였다.61)

⁶⁰⁾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조선해방년보》(문우인서관, 1946), 146쪽. 이승현, 〈북조선노동당의 형성과 그 의미〉(《북한현대사》I, 공동체, 1989), 9 1~92쪽

^{61) 《}해방후 10년일지》, 46쪽.

조선독립동맹은 1946년 2월 16일, 당 명칭을 조선신민당으로 개칭하고 북조선공산당의 友黨으로서 활동하였다. 조선신민당의 간부진은 아래와 같이구성되었다.

主席 金科奉, 副主席 崔昌益·韓斌, 조직부장 李維民, 선전부장 金民山, 비서 처장 邊東潤, 총무처장 張徹(이상 본부).

위원장 白南雲, 부위원장 鄭魯湜, 조직부장 沈雲, 선전부장 高贊輔, 비서처장 具在洙(이상 남조선)(7월 12일).

(《조선해방년보》, 149쪽. 이 명단은 1차 대표대회 이후 명단이다).

조선신민당은 〈강령〉에서 "친일분자, 팟쇼분자 및 전쟁범죄자 등 일체 반 동세력을 철저히 소멸"할 것과 "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 보편적 평등적 선 거에 의한 새로운 민주정권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공화 국'건립론이었다.62) 이러한 주장은 해방 이전 조선독립동맹의 국가건설방략 을 계승한 것이다. 화북조선독립동맹은 해방 직전에 작성한 강령 초안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그를 통해 "자주독립 강성번영한 조선민주공 화국을 건립"할 것을 제창한 바 있다. 이 반일민족통일전선 밑에는 "조국독 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각 계층, 각 당파, 각 개인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자" 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 통일전선 안에 지주층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보 았다.63) 다양한 민족운동세력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하나의 통일적 지도기관 을 세울 것을 모색한 것으로서, 계급운동을 민족운동에 종속시키는 논리였 다. 또한 그들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계열처럼 '노동자·농민의 민주주의 적 독재정권'으로의 轉化 논리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통일전 선의 결성에 의한 민족문제의 해결이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강령 초안 에서는 "今日 조선 민족은 식민지 조건하에서 異民族 통치에 대한 민족 모 순이 민족내 각 계급간의 모순을 의연히 초과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64)

조선신민당은 1946년 8월 28일, 북조선공산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

^{62) 《}조선해방년보》, 148~149쪽,

⁶³⁾ 崔昌益, 〈8·15以前 朝鮮獨立同盟綱領(草案)〉(《8·15 以前 朝鮮民族運動의 史的 考察》), 61~64等.

⁶⁴⁾ 崔昌益, 위의 글, 제2조.

로 합류하기 전까지, 북조선공산당에 가장 협조적인 '友黨'으로 활동하였다.

1946년 2월에 수립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해방 후 각지에서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을 하부기반으로 하고 앞서 언급한 정당들을 상부기반으로 하여 건설된다. 그리고 각종 대중조직들이 그 활동을 뒷받침하게 된다. 1945년 11월에는 북조선직업총동맹과 북조선여성동맹이 결성되었다. 1946년 1월에는 공산청년동맹 등이 통합되어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1월 31일 북조선농민동맹이 결성되었다.

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민주개혁'

1946년도는 한반도에 수립될 국가가 통일국가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단국가가 될 것인지 그 기본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한 해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입각하여 미국과 소련은 그 해 3월에 공동위원회를 열어 통일임시정부 수립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사회는 이미 1945년 말~1946년 초에 이른바 '탁치정국'속에서 급속히 좌우익으로 분열되며, 2월에는 남북한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다.65)전자는 미군정에 대한 일종의 자문기구 성격에 국한되지만, 후자는 소련주둔군을 대신하여 사실상 국가권력기구의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 이 두 기구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통일임시정부의 토대로서 수렴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만약 공동위원회가 결렬될 경우, 남북한 각각에서 분단국가 수립의 토대로 작용할수 있는 分斷性을 내포한 과도적 국가기구였다.

(1) '탁치정국'을 전후한 좌우대립

북한의 정치·행정이 사회주의자들 및 그들에게 우호적인 인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로부터 소외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지향적인 인물들

⁶⁵⁾ 민주의원의 의장으로는 이승만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의장으로는 김일성 이 선출되었다. 남북 분단정부를 이끌게 되는 이승만과 김일성은 이미 1946년 2월 시점에 과도기적인 권력기구의 대표로 부상하고 있었다.

은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조직적으로 소련군정 및 조선공산당측에 저항하는 각종 행동을 표출하기에 이른다.

해방 후 북한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반공운동은 1945년 11월 23일에 발생한 '신의주학생사건'이다. 대지주 등 자산가들과 기독교인들이 다수 거주하던 신의주에서는 반공적인 분위기가 초기부터 강하였다. 해방 직후인 9월 초에는 尹河英・한경직 목사 등이 보수적인 '기독교사회민주당'을 결성한 바였다. 11월 18일 龍岩浦 제일교회에서 열린 인민위원회 주최의 시민대회에서한 학생 대표가 공산당의 횡포를 비난하자 좌우익간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사건의 발단이었다. 11월 23일에는 신의주 시내의 중고등학생 3,500여 명이보안서 등을 향하여 시위를 하였고, 시위대에 총격이 가해져 사망자 23명,부상자 700명이 발생하였다. 사건 직후 급파된 金日成은 시민들 앞에서 스스로 공산주의자임을 밝히면서도 신의주 지방의 공산당 간부들을 비판하고 학생들을 관대히 처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전 민족이 총단결하여 민주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여 대중적 지지도를 넓히는 계기로 삼았다.66)

그 후에도 기독교계에서는 '평양章臺峴敎會사건'(1946년 3월 1일), 일요선거 거부사건(1946년 11월 3일)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김일성·강양욱 저격사건' (1946년 3월), '함흥학생사건'(1946년 3월 13일)을 비롯하여,⁶⁷⁾ 천도교계의 '3·1 재현운동사건'(1948년 2월) 등이 전개되었다.⁶⁸⁾

북한에서 좌우익의 대립구도가 명확하게 되는 시점은 1946년 초 '탁치'문 제를 둘러싸고 남한에서 좌우익이 분화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한국에 전달되는 1945년 12월 28일 이후 북한에서는 급속히 사태가 전개되었다.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조선독립동맹,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북부조선총국 등 5개 단체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

⁶⁶⁾ 함석헌, 〈내가 겪은 신의주학생사건〉(《씨올의 소리》, 1971년 11월호). 와다 하루끼, 앞의 글, 276~282쪽.

⁶⁷⁾ 사와 마사히코, 〈해방 이후 북한지역의 기독교〉(《해방후 북한교회사》, 다산글 방, 1992), 22~45쪽.

⁶⁸⁾ 新人間社 편, 《南北分裂沮止鬪爭-3·1再顯運動誌》(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69). 표영삼, 〈북한의 천도교〉(상·중·하)(《新人間》375~377, 1980년 3~4월). ——, 〈天道敎의 3·1재현운동과 金達鉉〉(《북한》220, 1990년 4월호).

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1월 3일에는 북조선 10행정국장 회의에서 3 상회의 결정 지지성명서를 발표한다. 그리고 조선민주당의 지도자 조만식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때문에 1946년 1월 5일 시점에는 북한 권력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리고 1월 8일에는 민주청년동맹지방 열성자협의회에서는 3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자를 '반동분자'로 규정하였으며, 민주주의조선임시정부에 반민주주의적 제 정당, 사회단체를 절대로 참가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원) 열흘 사이에 이미 북한에서는 정치 역학 관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며, 앞으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될 제 정당, 사회단체의 범위에 3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조직은 참여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는 사태가 전개된다. 그리고 한달 뒤인 2월 5일 조선민주당 열성자협의회가 개최되어 당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성은 그 3일 뒤인 2월 8일이었다.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

북한에서는 이미 1945년 11월에 10개 행정국이 세워지면서 국가기구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주권기관을 수립하는 일은 정치권의 결단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70)

1946년 2월에 들어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비롯한 정당, 사회단체대표 들은 북한지역에 중앙주권기관을 세우기 위한 발기위원회를 조직하였다.71) 발기위원회는 2월 5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개최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도 북한에

^{69) 〈}해방 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 일지〉(《북한관계사료집》7), 588쪽.

⁷⁰⁾ 예를 들어, 사법국은 1945년 11월 16일에 재판소·검찰소 등과 함께 설치되었는데, 이때 사법국 부국장으로 임명된 崔容達은 1946년 2월 1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사법국장으로 임명된다(《북조선사법국포고》1·12호). 5도 행정국의 10개 국이 그대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10개 국으로 계승된다.

^{71) 《}조선전사》 23, 116쪽. 김일성은 2월 9일의 〈목전 조선 정치형세와 북조선인민 위원회의 조직문제에 관한 보고〉에서 '발기부'라고 표현하였다(《正路》, 1946 년 2월 10일). 발기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金策, 부위원장 康良煜·朱寧河, 위원 金鎔範·崔璟德·金達鉉·李周淵 등이었다(김광운, 《북한 권력구조의 형성과 간부 충원, 1945. 8~1947. 3》,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9, 143쪽).

이미 통일적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확인한 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기 위하여 당의 모든 부서와 당원을 동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金日成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기 위해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도·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 행정국 국장 등이 참가하는 예비회의를 개최한 후, 대표협의회를 소집하여 선언서와 당면과업을 채택하고 인민위원들을 선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72)

2월 7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기 위한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의 예비회의'가 열렸다. 예비회의에는 북조선공산당 2명, 민주당 2명, 독립동맹 2명, 노동조합 2명, 농민조합 2명, 여성동맹 1명, 민주청년동맹 1명, 종교단체 1명, 朝蘇文化協會 1명 및 도·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들과 행정국 국장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당면 과업을 토의하고, 인민위원선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다음 날인 2월 8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북부조선 각 정당·각 사회단체·각 행정국 及 각 도·시·군인민위원회 대표확대협 의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⁷⁴⁾ 대표단은 정당대표 6명, 사회단체대표 8명, 행정국장 11명, 각급 인민위원회 관련자 등 137명으로 구성되었다.⁷⁵⁾

개회 제1일에는 김일성의 〈목전 북부조선 정치형세와 북부조선인민위원회의 조직문제에 관한 보고〉와 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선거가 있었다. 인민위원에 추천된 23인⁷⁶⁾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일성, 김두봉, 무정, 강양욱, 최용건, 이문환, 한희진, 이순근, 이봉수, 한동찬, 장종식, 尹基寧, 方禹鏞, 최용달, 홍기주, 현창형, 李箕永, 강진건, 박정애, 홍기황, 康永根, 방수영, 김덕영(《正路》, 1946년 2월 10일).

^{72) 《}김일성전집》 3(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82~89쪽,

⁷³⁾ 김광운, 앞의 책, 146쪽.

^{74) 《}正路》, 1946년 2월 10일,

⁷⁵⁾ 김광운, 앞의 책, 147쪽.

⁷⁶⁾ 인민위원 총수 23인은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로서 실제 총수는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서기장 강양욱을 포함하여 26명이라는 견해도 있다(김광운, 위의 책, 148쪽).

그리고 이들 중에서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김두봉, 서기장에 강양 욱이 추천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최고행정주권기관'으로 간주되었다. 사법권은 재판소와 검찰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이 관할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입법권 또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장악하였다. '최고행정주권기관'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입법부와 사법부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인민위원회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사법권까지 장악한 명실상부한 국가최고기관이었다.77)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의 '중앙행정 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의 인민·사회단체·국가기관이 실행할 임시법령을 제정'(3조)할 권한을 가지며, 임시인민위원회의 '各 局과 각도인민위원회 등의 옳지 못한 결정을 시정하며 또는 정지할 수 있는'(4조) 기구이다. 따라서 그동안 '쏘련군사령부에 속하여 있던 각 국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지배를 받으며 그 기관으로 편성'(8조)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시인민위원회가 유일한 중앙주권체는 아직 아니었다. 여전히 소련군의 점령하에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임시인민위원회의 각 국은 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쏘련군사령부에 제출할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작성'하며, 임시인민위원회와 '쏘련군사령부에서 발포한 모든 법령과 결정을 실시'해야 했다. 이를 통해 임시인민위원회 출범으로 중앙의 권위가 임시인민위원회와 소련군 양자에 의해 공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법령과결정의 초안은 임시인민위원회 산하의 각국이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권은 임시인민위원회에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78)

⁷⁷⁾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같이 장악한 이유는, 민주주의 적 선거에 의하여 조직된 독자적인 인민대표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휴회 중에는 최고행정주권기관으로서 상무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상무위원회는 집행권과 입법권을 행사하였을 뿐만아니라 사법권까지도 행사하였다(한석봉,《인민정권 건설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6, 36쪽).

⁷⁸⁾ 柳吉在, 《北韓의 國家建設과 人民委員會의 役割, 1945~1947》(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5), 195쪽.

임시인민위원회 안에는 상무위원회를 두어 임시인민위원회가 폐회기간 중최고행정주권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상무위원회는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3인에 2인의 위원을 추가하여 5인으로 구성하였다. 임시인민위원회 산하에는 10국과 3부를 두었으며, 각 국장들은 인민위원 중에서 선임된다.79) 7월 10일에는 '행정 각 기관 간부에 관한 인사문제'를 관장하는 간부부가, 9월 14일에는 노동부가, 12월 23일에는 '계획 및 통계사업'을 관장하는 기획국이 각각 신설되었다.80)

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에 참가한 기관·단체들에는 조공 분국·조선민주 당·천도교청우당·독립동맹 등의 정당조직들과, 전평 북부조선총국·전농 북부조선총국결성준비위원회·여성총동맹·민주청년동맹 등의 사회단체, 그리고 10개의 행정국, 그리고 각급 인민위원회 등 정권기관들이 망라되었다.81)

선출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들은 1946년 2월 9일, 金日成으로부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당면 과업에 대한 제안을 토의한 후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82) 통과된 11개조 '당면 과업'은 친일잔재의 청산, 토지개혁, 주요 산업의 발전 지원, 중소상공업 육성, 노동운동 지원, 민주주의적 교육·문화 정책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는 북한정치·사회세력들이 자신의 신국가건설노선을 구체화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면 과업'이라는 명칭 그대로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북한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을 천명한 것이었다. 인민민주주의적 개혁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직 국가수립의 단계가아니라는 점과 함께 소련군이 장악하고 있던 주요 산업의 향방이 이 시기에 아직 미정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면 과업'에서 제시된 토지개혁의 문제는 다음 달인 3월 5일에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그 후 3월 20일에 열리게 되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전후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국가건설노선은 보다 정교화한다. 위원장 김일

^{79) 《}北朝鮮法令集》(北朝鮮人民委員會 司法局, 1947), 8쪽,

⁸⁰⁾ 柳吉在, 앞의 책, 196쪽.

⁸¹⁾ 柳吉在, 위의 책, 196쪽.

^{82) 《}正路》, 1946년 2월 10일.

성은 1946년 3월 23일에 〈20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 1. 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 일본통치의 一切 殘餘를 철저히 숙청할 것.
- 2.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 며 팟쇼 및 반민주주의적 정당·단체·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할 것.
- 3. 전체 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시킬 것. 민주주의 적 정당·노동조합·농민조합 및 기타 諸민주주의적 사회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조건을 보장할 것.
- 4. 전 조선 인민은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평등적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선거로써 지방의 일체 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결성할 의무와 권리를 가질 것.
- 5. 전체 公民들에게 性別・信仰 및 資産의 多少를 불구하고 정치・경제・생활 제조건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
- 6. 인격·주택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하며 공민들의 재산과 개인의 소유물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 7. 일본통치시에 사용하며 그의 영향을 가진 일체 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하며 인민재판기관을 민주주의 원칙에서 건설할 것이며 일반 공민에게 법률 상 동등권을 보장할 것.
- 8. 인민의 福利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업ㆍ농업ㆍ운수업 및 상업을 발전시킬 것.
- 9. 대기업소 · 우수기관 · 은행 · 광산 · 삼림을 國有로 할 것.
- 10. 개인의 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하며 장려할 것.
- 11. 일본인・일본국가 賣國奴 및 계속적으로 소작을 주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할 것이며 소작제를 철폐하고 몰수한 일체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그들의 소유로 만들 것. 灌漑業에 속한 일체 건물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것.
- 12. 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제정하여 투기업자 및 고리대금업자들과 투 쟁할 것.
- 13. 단일하고도 공정한 조세제를 규정하며 진보적 所得稅制를 실시할 것.
- 14. 노동자와 사무원은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최저임금을 규정할 것. 13세 이하의 소년의 노동을 금지하며 13세로부터 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 6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것.
- 15.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생명보험을 실시하며 노동자와 기업소의 보험제를 실 시할 것.
- 16. 전반적 인민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광범하게 국가경영인 소·중·전문대학 교를 확장할 것, 국가의 민주주의적 제도에 의한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할 것.
- 17. 민족문화·과학 및 기술을 전적으로 발전시키며 극장·도서관·라디오·방

송국 및 영화관 수효를 확대시킬 것.

- 18. 국가기관과 인민경제의 諸부문에서 요구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특별학교 를 광범히 설치할 것.
- 19. 과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사업을 장려하며 그들에게 보조를 줄 것.
- 20. 국가 병원수를 확대하며 전염병을 근절하며 빈민들을 무료로 치료할 것. (《朝鮮中央年鑑》,朝鮮中央通信社, 1949, 67쪽; 1950, 38·39쪽).

'20개조 정강'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통일임시정부가 지향할 바를 천명한 것으로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천명한 전국적 범위의 국가건설노선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일제잔재의 청산뿐만 아니라 "팟쇼 및반민주주의적 정당·단체·개인들의 활동을 절대 금지"하며 전 조선 인민이인민위원회 결성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것 등, 북한지역에서 실현한 인민민주주의적 개혁노선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 방안과 함께 개인 재산을 법적으로보장하며 개인 수공업·상업의 자유를 허락·장려하는 한편 대기업소·은행·광산 등 주요 산업은 국유화할 것 등 인민민주주의적 경제정책론을 명확히 천명한 점이다. 이상의 정강은 역사적으로 일제하 사회주의 계열의 신국가건설론을 계승·발전시킨 것임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제2차대전 후 소련군이 주둔한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인민민주주의 국가건설의 길이 한반도의 특수사정 속에서 구체화된 것이기도 하였다.83)

(3) '민주개혁'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출발점으로 하여 남

⁸³⁾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소련측은 1946년 3월 16일 연해주군관구의 메레쯔 츠코프와 쉬티코프에게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소·미공동위원회 소련사 령부 대표단에의 훈령 초안〉을 발송하였다(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 서군 07, 목록 11, 문서함 18, 차례(∏op) 280, 1~8쪽). 이 자료는 ⟨소련의 조선임시정부 수립 구상─미·소공동위원회에 보낸 훈령과 조선임시정부 각료 후보〉(《역사비평》24, 1994), 370~373쪽에 번역되어 있다. 이 훈령 초안에는 소련측이 향후 수립될 조선임시정부가 어떤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인지에 관련하여, '정부사업을 위한 기초'로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과제로 18개 항목의 '정치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훈령 초안과 '20개조 정강'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김성보(1995), 앞의 글, 85~88쪽 참조.

녀평등권법령 공포, 주요 산업 국유화, 노동법령 공포, 사법재판기관 개혁 등 제반의 '민주개혁'을 통해 인민민주주의적 국가건설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구축하여 갔다.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대변동을 초래한 것은 토지개혁이었다. 1942년 시점에 북한지역에서 논과 밭의 소작지율은 각각 64.3%, 49.6%였다.84) 그리고 1945년 시점의 통계에 의하면 북한지역의 총 농가 가운데 4%에 불과한 지주가 총 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농가호수의 56.7%에 달하는 빈농들은 총 경지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었다.85)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통해 이와 같은 불평등한 토지소유관계를 해체하고 지주제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농업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토지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은 2월 말, 3월 초까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토지개혁 논의는 일제강점기에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사회주 의 계열과 민족·자본주의 계열간에 하나의 방안으로 수렴되지 못한 상태였 으며, 사회주의 계열 내부에서도 다양한 편차가 있었다. 1945년 10월 이후 조선공산당 내부에서 일정한 합의가 도출되지만, 그 또한 1946년초 '탁치정 국'과 극심한 좌우대립의 상황 속에서 재론의 필요성이 주어지고 있었다. 문 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 것은 북한지역에 주둔한 소련측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였던 점이다. 소련외무성의 방안은 토지를 무상몰수하되 중소지주에게 는 일정량의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도록 하며 농민에게는 토지소유권을 유상 분배하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동유럽에서 시행되는 토지개혁과 유사한 것 이었다. 그 반면 연해주군관구측은 모든 소작지를 무상몰수. 국유화한 다음 농민에게는 경작권만을 제공하는 급진적인 방안을 주장하였다. 연해주군관구 의 방안은 조선공산당측의 방안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결국 토지개혁 논의는 1946년 2월 말에 개최된 '북조선농민대표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대회에서 농민들은 모든 소작지를 지주에게서 무상몰수한 다음 소유권 자체를 농민에게 분여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제출

⁸⁴⁾ 朝鮮銀行調査部,《朝鮮經濟年報》(1948), I-340쪽(황해도는 전부, 강원도는 半數를 북한지역으로 계산함).

⁸⁵⁾ 손전후, 《우리나라 토지개혁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71~72쪽.

하였다.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농민대표대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침에 입각한 토지개혁 법령을 통과시켰다.86)

소작을 주는 모든 토지가 개혁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작 경영하는 지주는 '지주계급'으로 간주되어 토지는 물론 가축·주택 등까지 몰수되었으며 다른 郡으로 이주하도록 하였다. 몰수한 토지는 고용 농민, 토지가 없는 농민 및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가족별 노동력 점수에 따라 분배하였으며. 이주한 지주에게는 自耕을 원하는 경우 토지를 분배하였다.

토지개혁은 리(동) 단위로 조직된 농촌위원회들이 담당하였다. 먼저 농민대회를 소집하여 빈농·고농 중심으로 농촌위원들을 선출한 다음, 이들로 구성된 농촌위원회가 도-군-면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토지몰수와 분배를 하였다. 북한 전체 경지면적(과수원, 대지 포함) 182만 98정보 가운데 55.4%에 해당하는 1백만 8,178정보가 몰수되었다. 이 가운데 95만 5,731정보가 78만 8,249호에 분배되었다. 토지개혁으로 농촌에서 지주층은 소멸하였으며, 농촌 계층구성은 부농 2~3%, 중농 62~63%, 빈농 25% 내외로 재편되었다.87)

토지개혁 후 농민은 국가에 생산물의 25~27%에 해당하는 양곡을 농업현물세로서 납부하게 되었으며, 농업 생산에서 유통까지 국가가 세밀하게 관리하는 국가관리 소농체계가 농촌에 만들어 졌다.⁸⁸⁾ 토지개혁을 거치면서 농민, 특히 빈농들 중 상당수는 사회주의세력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토지개혁당시에는 농민동맹원 수가 108만 3,985명이었으나, 개혁 후에는 144만 2,149명으로 증가하였다.⁸⁹⁾ 1945년 12월 4,530명(농민이 34%)에 불과했던 북한의조선공산당원 숫자는 1946년 4월에는 2만 6천여 명으로, 1946년 8월에는 36만 6천여 명으로 격증하였다.⁹⁰⁾ 북한 토지개혁은 단지 지주제의 몰락을 초래

⁸⁶⁾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역사비평사, 2000), 135~144쪽.

⁸⁷⁾ 김성보, 위의 책, 183~184쪽.

⁸⁸⁾ 김성보, 〈토지개혁 후 북한에서의 國家管理 小農體系 형성〉(《韓國 近現代의 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金容燮教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3)》, 지식산업사, 1997).

^{89) 《}조선전사》 23권(과학백과사전출판사, 1881), 170~171쪽,

⁹⁰⁾ 손전후, 앞의 책, 257쪽.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천주교계의 재정기반을 약화시키고 평안남·북 도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기독교적 민족·자본 주의진영 전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91)

한편 1946년 8월 10일에는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었다. "일본국가와 일본 법인 및 私人의 소유 또는 조선 인민족반역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기업소·광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상업 및 문화기관 등이 무상몰수 대상이 되었다. 법령에 따라국유화한 공장, 기업소는 북한 전체 산업의 90% 이상에 달하는 1,034개이다.

그 외에도 남녀평등권법령, 노동법령 등이 공포되었으며, 문화·교육의 급속한 발전, 사법재판기관 개혁 등 이른바 '민주개혁'이 실시되어,⁹²⁾ 인민민주주의적 국가건설을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4) 북조선노동당 창당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1)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결성과 북조선노동당 창당

1946년 7월부터 북한에서는 전위정당인 북조선공산당을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키고, 기타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을 하나의 통일전선 조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7월 22일, 평양에서 북조선공산당·조선민주당·조선신민당·북조선천도교청우당 등 4개 정당대표들과 북조선직업총동맹·북조선농민동맹·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북조선민주청년동맹·조쏘문화협회·북조선예술총동맹·북조선불교총무원·북조선소비조합·북조선반일투사후원회·북조선교육문화후원협회·북조선공업기술총연맹·북조선보건연맹·북조선건축동맹등 13개 사회단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었다.93)

⁹¹⁾ 김성보, 앞의 책, 162쪽.

⁹²⁾ 金策、〈北朝鮮人民委員會 新發足에 際하여〉(《人民》2-4호, 1947).

^{93)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 결성에 관한 결정서〉(《民主建國에 있어서 北朝鮮民戰의 役割》, 朝鮮出版社, 1947), 139~142쪽. 다른 자료에는 위의 13개 단체에서 북조선교육문화위원회의 이름이 빠져 있으며 그 대신 북조선기독교 도연맹・북조선적십자사・북조선인민항공협회 3개 단체가 추가되어 총 15개

1946년 8월 28일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은 한당 절차를 밟아 북조선 노동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으로 재조직되었다. 두 정당의 합당문제가 본격적 으로 거론된 것은 1946년 7월부터였다. 7월 23일 조선신민당은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 계단의 조선신민당의 과업과 목적이 북조선공산당의 그 과업 목적들과 합치"한다는 이유로 양당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북조선공 산당에 제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신민당 대표 김두봉이 북조선공산당 책 임비서 김일성에게 합당을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고 김일성이 다음 날 이를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회신을 보냈다. 7월 28일에는 양당 중앙위원회 상임위 원회 연합회의를 열어 합당을 결정하였다. 양당 합당과정에서 이를 비판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분출하였으나. 합당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8월 28일부 터 30일까지 북조선노동당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마지막 날 13개 항 으로 이루어진 당 강령과 41개조의 당 규약을 채택하고 당 기관지로서 《정 로》와《전진》을 합하여《로동신문》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당 중 앙위원회 위원 43명과 검열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출한 뒤 폐막하였다.94) 김 일성이 당 중앙위원으로 추천한 43명 중에서 북조선공산당 출신이 30명, 조 선신민당 출신이 13명이었다.95)

북조선노동당은 '민주주의 과업을 실천'하는 '대중적 정당'임을 표방하였지 만. 사실상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정당이었다.⁹⁶⁾

(2) 1946년 11월 인민위원회 선거

1946년도는 북한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국가권력의 모체가 형성되고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의 사회경제적 개혁이 달성된 해였다. 이 임시권력과 사회경제 개혁의 성과는 북한 내부에 제한되지 않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수립될 통일임시정부의 성격과 그 정부에 의해 수행될 사회경제개혁의

사회단체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결성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朝鮮中央年鑑》, 1949, 88쪽).

⁹⁴⁾ 이종석, 앞의 책, 184~188쪽.

⁹⁵⁾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제재료)》(1946), 72쪽. 김광운, 앞의 책, 213쪽.

⁹⁶⁾ 이종석, 앞의 책, 193쪽.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러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그 해 5월초에 결렬되어 통일임시정부 수립의 가능성은 희박해져 갔다. 그에 비례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점차 '임시'적 성격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국가권력으로 轉化해 간다.

분단국가 수립으로의 지향성은 남북한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으며, 서로간의 경계심이 그 지향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1946년 6월 3일에 남한 단독정부수립 계획을 발표하였다(정읍발언). 8월 24일에는 미군정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설치를 위한 선거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10월 12일 과도입법의원 설치안을 정식 공포하였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선거를 완료하였다. 북한에서도 1946년 가을에는 보다 권력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남한에서의 단정수립 움직임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에서의 정치·사회경제적 개혁의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97)

북한에서는 1946년 11월 3일부터 1947년 3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인민위원회 선거를 치루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에 들어섰다. 선거 방식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찬반 의사만을 흑백투표함에 넣어 표시하는 방법이었다.

11월 3일 도·시·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서 총 유권자 99.6%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찬성한 사람의 수는 전체 선거자의 96%였다.98)

선거에 의해 총 3,459명이 도·시·군인민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당선 위원들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노동당 31.8%, 민주당 10.0%, 청우당 8.1%, 무소속 50.1%이었다. 사회 성분별로는 노동자 14.5%, 농민 36.4%, 사무원 36.6%

⁹⁷⁾ 북한측의 공식적인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목적은 다음 대목에 잘 표현되어 있다. "북조선에서 이미 실시된 모든 민주건설과 민주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 공고화함으로써 북조선의 민주건설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적 임시정부를 하로속히 건립하는 데 유일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金策,〈北朝鮮人民委員會新發足에 際하여〉,《인민》2권 3호, 1947년 4월호;《북한관계사료집》13, 299쪽).

⁹⁸⁾ 김일성, 〈인민위원회의 선거총결과 금후의 중심 임무〉(《인민》 2권 3호, 1947 년 4월호; 《북한관계사료집》 13권, 290쪽).

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상인·기업가·문화인·종교인·前 지주들이 부분적으로 당선되었다.

面인민위원회 위원 당선자는 농민이 57.97%, 노동자 8.33%, 사무원 29%로서, 북한 인민민주주의체제에서 기본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지식인 2.3%, 상인 1.69%, 기업가 0.35%, 前 지주 0.07%, 종교인 0.29%였다. 면인민위원회 위원선거에서 참가자 총수 99.98%, 찬성투표자수 96.2%였다. 리인민위원회 위원선거의 참가자수는 99.85%였으며, 찬성투표수는 86%에 머물렀다.99)

도·시·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찬반의 의사만을 물음으로써 스스로 표방한 보통·비밀선거의 원칙에 충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선거권자 90% 이상이 출석하여 80~90%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북한 권력측의의도는 실현되었다.

(3)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창설하기 위하여 1947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平壤에서 1,159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북조선 각 도·시·군인민위원회대회가 소집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대회 대표선거에 대한 규정〉에 기초하여 도·시·군인민위원회 위원 3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된 대표와 정당·사회단체에서 각각 5명씩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도·시·군인민위원회 대표 5명 당 1명의 비율로

⁹⁹⁾ 리인민위원회 선거에서 특히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반대율이 각각 22.3%, 18.89%로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반면에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각각 2.48%, 0.61%로 극히 반대율이 낮다. 두 지역의 정치성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평안북도와 강원도는 중간 형태를 보인다. 면인민위원회 선거에서도 유사한 지역적특징이 나타난다. 평안남도 반대율이 6.5%, 황해도의 반대율은 6.3%였다(朱寧河, 〈北朝鮮 面 및 里(洞) 人民委員會委員選舉 總結에 대하여〉, 《북한관계사료집》13, 371쪽~373쪽). 리・면인민위원회 위원 당선자 정당별 통계표 참조. 노동당은 함경남도에서, 민주당은 황해도에서, 청우당은 평안남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당선자를 냈다.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북조선노동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대표들과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대 표들이 선출되었다.¹⁰⁰⁾

최고주권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가 창설된 후 1947년 2월 21일 최고집행기관을 수립하기 위한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101) 이 회의를 통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주권이 북조선인민회의에 이양되었으며, 북조선인민회의는 다시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북조선인민위원회 구성을 "미·소공동위원회의 통일적 임시정부 수립까지"라는 전제 아래 법적으로 승인하였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의장단 崔庸健은 김일성을 북조선인민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할 책임을 그에게 위임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최용건의 제안을 채택하였다.102) 이리하여그 다음 날인 2월 22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성립하였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위원장에 金策・洪箕疇가 임명되었다. 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 1〉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당	직 위	성 명	소속당
위원장	金日成	북로당	체신국장	朱晃燮	청우당
비이이지	金 策	북로당	상업국장	張時雨	북로당
부위원장	洪箕疇	민주당	보건국장	李東英	민주당
사무장	韓炳玉	북로당	교육국장	韓雪野	북로당
기획국장	鄭準澤	북로당	노동국장	吳淇燮	북로당
산업국장	李文煥	무소속	사법국장	崔容達	북로당
내무국장	朴一禹	북로당	인민검열국장	崔昌益	북로당
외무국장	李康國	북로당	총무부장	金廷柱	청우당
농림국장	李舜根	북로당	간부부장	張鍾植	북로당
재정국장	李鳳洙	북로당	양정부장	宋奉郁	북로당
교통국장	許南熙	무소속	선전부장	許貞淑	북로당

^{* 《}로동신문》, 1947년 2월 23일.

^{100) 《}조선전사 24》, 32~33쪽.

^{101) 《}조선전사 24》, 33쪽.

¹⁰²⁾ 김광운, 앞의 책, 250쪽.

위의 표에 의하면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 22명 중 16명이 북조선노동당원이다. 1947년 2월에 수립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통일전선정권기관의 형식을 띠었지만, 사실상 북조선노동당 1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지향의 정권기관이었다.

5) 헌법 제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1) 헌법 제정

1947년 11월 14일 유엔에서 미국의 제안에 따라 한국임시위원단의 조직을 결정하자, 그 나흘 뒤인 18~19일에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는 헌법 제정 논의를 공론화하였다.103) 이 회의에서 31명의 임시헌법제정위원이 선임되어 헌법 제정을 위임받았다.104)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인민회의 3차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20일 인민회의 상임의원회 의장실에서 개회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전부장인 김택영, 역사가이청원, 북조선최고재판소 판사 김윤동 등 3인을 임시헌법초안 작성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임시헌법제정위원회 상임서기장에는 김택영이 피선되었다. 김택영은 법률학 석사 출신의 소련계 한인이었다.105) 당시 사법국장이던 崔容達은 임시헌법제정위원회에서 제외되었다.106)

¹⁰³⁾ 尹慶燮, <1948년 北韓憲法의 制定背景과 그 成立〉(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5), 40쪽. 1946년 말에서 1947년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북한의 사법관계자들은 소 련의 스딸린 헌법을 국역하고, 동구라파 인민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연구서를 번역하는 등 기본적인 준비를 해 온 바 있다.

¹⁰⁴⁾ 임시헌법제정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科奉,金日成,崔庸健,洪箕疇,朴允吉,崔璟德,金頊鎮,姜鎮乾,朴正愛,李箕永,康良煜,金廷柱,李周淵,鄭達憲,文泰和,金英洙,金應基,崔鳳秀,韓冕壽,崔金福,康仁奎,金始煥,安信浩,李鍾權,金澤泳,金潤東,李淸源,金周經,閔丙均,鄭斗鉉,太成洙(北朝鮮人民會議 常任議員會,《北朝鮮人民會議 第3次會議 會議錄》,1948,117~120等).

¹⁰⁵⁾ 尹慶燮, 앞의 글, 46쪽,

¹⁰⁶⁾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출신으로 보성전문 법학교수를 역임하였고,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직 수행 이래 북한 법조계를 주도한 그가 제외된 것은 북조선노동당 지도부와의 마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1948년 3월, 북조선노동당 제2차대회에서 허가이로부터 사법기관에 친일경력자를 다수

북한헌법 초안 작성과정에 소련은 어느 정도 개입하였을까. 주북한소련민 정국 사법·검찰부의 쉐찌닌(IIIeтинин Б.В.)은 자신의 회상기에서 "헌법 초안 작성에 즈음하여 조선의 동지들은 나에게 자주 법률가로서의 자문을 구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조선의 동지들에게 헌법에 관한 레닌적 강령과소련 및 여타 사회주의제국에서의 헌법제정의 구체적 경험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부르주아 헌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107)

1947년 12월 작성된 임시헌법 초안은 1948년 2월 6~7일 개최된 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 제출되었다. 이 회의의 개최와 관련하여 1948년 1월 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인민회의 4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허가하면서 "(이 회의에서) 헌법 초안을 심의하지 않고 … 헌법 초안에 대해 조선인민의 완전한 의사표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 인민 토의에 부칠 것과 북조선인민위원회 대회를 1948년 3월에 소집하여 임시헌법 초안을 토의 비준한다고 결정할 것"을 제기했다. 이 결정은 인민회의에서 그대로 관철되었다.108)

'전인민 토의'기간 동안 임시헌법제정위원회에 제출된 헌법 초안 지지결 정서는 5만 8천통에 달하였고, 초안에 대한 수정안과 첨가안은 2,236통에 달 하였다. 임시헌법제정위원회는 이 수정안 및 첨가안을 중심으로 헌법 초안을 수정해 나아갔다.109)

인민 토의 기간은 2개월간이나 진행되었다. 본래 3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헌법 채택을 위한 인민회의가 4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북한만의 헌법 논의가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기때문으로 보인다.1100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종료된 뒤인 1948년 4월 29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는 헌법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연석

등용한 점을 비판받은 후 결정적으로 힘을 잃게 된다. 다만 최용달의 헌법관 련 논설이 북조선노동당 기관지인 《근로자》에 실리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어느 정도로든 북한헌법 형성과정에 기여하였을 것은 부인할 수 없다(최 용달, 〈조선인민은 이러한 헌법을 요구한다〉, 《근로자》, 1948년 1호).

¹⁰⁷⁾ 쉐찌닌, 《조선인민과의 우정을 위하여 : 회상과 논문》(모스크바, 1965), 141·142쪽. 108) 尹慶燮, 앞의 글, 66쪽.

¹⁰⁹⁾ 金澤榮,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의 근본원칙》, 8쪽.

¹¹⁰⁾ 정해구, 《남북한 분단정권 수립 과정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174쪽.

회의를 뒤이어 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이었다.

채택된 헌법 초안은 인민위원회를 국가권력의 기초로 하는 인민적 국가형 태와 인민주권 형식을 담고 있으며, 특히 경제구성에서 국가소유, 협동단체 의 소유, 개인소유를 모두 인정하는 점에서 '인민민주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다. 북한헌법 초안은 소련 헌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를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일반화하고 있던 '인민민주주의' 국가건설의 틀에 서 수용한 것이며, 남북 분단의 상황 등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2) 북한에서의 분단정부 수립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였다. 정부수립 이전에 조선인 민군을 창건한 것은 미국·소련 양국군 철수를 대비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북한은 유엔소총회가 1948년 2월 26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하자, 공화국 수립을 서두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단독선거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948년 3월 9일에 열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외국군대가 철거하는 조건 아래 전 조선적으로 최고입법기관을 선거하여 민주주의적 인민정부를 수립하자는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3월 25일에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남북한 정당·사회단체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뒤이어 3월 27~30일 동안열린 북조선노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도 이러한 주장들이 다시 확인되었다.

제2차 당대회가 끝난 뒤 4월부터는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은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사 회단체들의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한의 민주주의민 족전선 소속 단체들은 이에 호응하였고, 남북 지도자들간의 정치협상을 주장 했던 김구와 김규식 등 우익 및 중도계 민족주의자들도 北行을 결정하였다.

1948년 4월 19일,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본회의가 남북의 46개 단체 대표 5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일성의 사회로 조선 정치정세 및 남한단선과 단정반대투쟁 대책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였다. 4월 20일, 김구와 홍명희 등이 평양에 도착하자, 김일성과 김두봉은 김구를 예방하였다. 여기서 김구는 대표자연석회의

주석단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김일성과 단독회담을 요구하였다. 4월 21일에 본회의가 속개되었지만 김구를 비롯한 남한의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김구는 북한이 대표자연석회의를 북한정권 수립에 활용하지 않는가 의심하였다.[11] 남한의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대개 불참한 가운데 회의에서는 단선단정 반대, 소·미 양국군대의 철병, 외세의 간섭없는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의 수립 등이 논의되었고, 단선을 파탄시키기 위한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전국위원회 결성이 결정되었다.

남한 민족주의자들은 대표자연석회의보다 '남북요인회담'에 기대를 걸었다. 4월 26일과 30일에 김일성·김두봉·김구·김규식 4인의 이른바 '4김회담'이 열렸으며, 그와 별도로 남북지도자 15인으로 구성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가 결성되었다. 30일에 지도자협의회는 ①미·소 양군 철수, ②북한의 남침에 대한 우려 불식, ③전국 총선에 의한 통일국가 수립, ④남한의 단선단정 반대를 요지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112)

1948년 남북연석회의는 여러 가지 역사적 한계를 지니지만, 민족분단의 긴 박한 정세에 대처하여 외세에 의한 분단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성을 추구했다 는 점,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단결을 시도하였다는 점, 분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으 로 평가된다.113)

1948년 7월 10일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실시와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¹¹⁴⁾ 정부수립에 앞서 남・북조선노동당은 총선거 및 정부수립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8월 2일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북한에서의 선거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공동추천한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8월 25일 실시된 선거에서 유권자의 99.7% 가 참가하고 98.4%가 찬성함으로써 21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반면 남

¹¹¹⁾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이승만·김구시대의 정치사》(서울대 출판부, 1997), 263~267쪽.

¹¹²⁾ 도진순, 위의 책, 271~281쪽.

¹¹³⁾ 도진순, 위의 책, 289쪽.

^{114) 《}조선중앙년감》(1949), 43쪽.

한에서의 선거는 지하선거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이 채택되었다. 8월 20일까지 지하선거를 통해 인민대표를 선출한 다음, 월북한 이들이 8월 21~25일 사이에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최고인민회의에 보낼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간접선거로 뽑힌 1,080명의 인민대표들은 월북하여 해주에서 최고인민회의에 보낼 36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남북한에서 선거로 뽑힌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572명) 중 항일운동으로 체포·감금 경력자는 248명으로 전체의 43.3%였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항일운동 경력이 있는 자는 총 287명으로 전체의 50.2%에 달하였다.115)

최고인민회의는 9월 2~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9월 8일에 최고인 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이 헌법을 '전 조선 지역에 실시한다'고 선언하였다.¹¹⁶⁾ 같은 날 홍명희의 제안에 따라 최고인민 회의 상임의원회가 조직되었다. 이어 9일에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내각 이 조직되었다. 내각의 명단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당	직 위	성 명	소속당
수상	김일성	북로당	교통상	주영하	북로당
	박헌영	남로당	재정상	최창익	북로당
부수상	홍명희	민주독립당	교육상	백남운	前근로인민당
	김 책	북로당	체신상	김정주	청우당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	정준택	북로당	사법상	이승엽	남로당
민족보위상	최용건	민주당	문화선전상	허정숙	북로당
국가검열상	김원봉	인민공화당	로동상	허성택	남로당
내무상	박일우	북로당	보건상	李炳南	남로당
외무상(겸임)	박헌영	남로당	도시경영상	이 용	신한민족당
산업상(겸임)	김 책	북로당	무임소상	이극로	어학회장
농림상	박문규	남로당	최고재판소장	金翊善	북로당
상업상	장시우	북로당	최고검사총장	장해우	북로당

^{* 《}조선중앙년감》(1949), 13쪽.

^{115)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1(국토통일원, 1988), 100쪽.

¹¹⁶⁾ 국토통일원 편,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1(1988), 34~35쪽.

내각에는 남북의 인사들이 약 반씩 참여한 가운데 남·북조선노동당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남북조선노동당 외에는 민주독립당·인민공화당·근로인민당·신한민족당·조선민주당·천도교청우당 등 친사회주의적인 중도 파정당들이 내각에 참여함으로써, 노동당 우위하에 人民民主主義的 성격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같은 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창건이 선포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는 남한에서 大韓民國이, 9월 9일에는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1945년 8월 해방 이후 분단을 극복하고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적 노력은 좌절되었다. 일제강점하에서 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의 흐름으로 양분되었던한국사회는 해방 후에 그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의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할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념을 달리하는 미국·소련 두 강대국의 군사분할점령정책 속에서 이념적 대립은 오히려 더욱 격화하였으며, 그 결과 1945년 8월의 해방 시점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 개의 분단정부가 수립되었다.

〈金聖甫〉

찾 아 보 기

[7]

GARIOA원조 GARIOA援助 291 각정당수뇌간담회 各政黨首腦懇談會 184 각정당행동통일위원회 各政黨行動統一 委員會 140.184 각정당협의회 各政黨協議會 136. 204 〈감상〉 〈感想〉 210 강문석 姜文錫 148 강순 姜舜 196 강양욱 康良煜 218, 440, 448 강영근 康永根 448 강장원 姜章沅 342 강장일 姜長一 343 강정애 姜貞愛 373 강진 姜淮 148 강진건 姜鎭乾 448 강형구 姜亨求 326 건국동맹 → 조선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 建國準備委員會 31. $99 \sim 101, 125, 145, 179, 183, 187$ 건민회 健民會 196, 199 경교장회의 京橋莊會議 211 경남음악협회 慶南音樂協會 356 경무사령부 警務司令部 425 경북예술가협회 慶北藝術家協會 357 경북항쟁 慶北抗爭 254 **경성음악연구원** 京城音樂研究院 349 경성음악학교 京城音樂學校 356 〈경제통제령〉 〈經濟統制令〉 265, 266

계급문학 階級文學 315 계용묵 桂鎔默 296 계정식 桂貞植 342 고경흥 高景欽 102 고려교향악단 高麗交響樂團 349.363 고려교향악협회 高麗交響樂協會 340. 349 고려국민동맹 高麗國民同盟 159 고려동지회 高麗同志會 184 125, 130 고려민주당 高麗民主黨 고려음악협회 高麗音樂協會 358. 363 고문회의 顧問會議 32, 127 고전음악연구회 古典音樂研究會 348 고종익 高宗益 362 고찬보 高贊輔 169, 444 고창일 高昌一 431 고희동 高義東 330 공기남 孔基男 342 공보원 公報院 400 과도입법의원 過渡立法議院 128. 130, 135, 182, 195, 197, 198, 399, 401 곽상수 郭尙洙 357 곽종원 郭鍾元 313 관리인제도 管理人制度 276, 288 광주성악연구회 光州聲樂研究會 375 9월총파업 九月總罷業 157, 177, 193, 247, 250, 394 구국당 救國黨 196 구국미 救國米 246 구국청년연맹 救國靑年聯盟 407 **구왕궁아악**부 舊王宮雅樂部 350 〈구일본인토지의 불하 방안〉 〈舊日本 人土地의 拂下 方案〉 262

구재수 具在洙 169.444 권태석 權泰錫 135 국가관리 소농체계 國家管理 小農體系 권태양 權泰陽 211, 216 454 권태회 權泰彙 102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396 권화 權煥 306, 307, 317 국군준비대 國軍準備隊 152 〈귀속농지매각령〉 〈歸屬農地賣却令〉 국극사 國劇計 351.375 263 국극현단 國劇協團 375 〈귀속농지 특별조치법〉 〈歸屬農地 特 국극협회 國劇協會 352, 356, 375 別措置法〉 263 국립국악원 國立國樂院 귀속사업체 歸屬事業體 274.276 351 귀속재산 歸屬財産 국립극장 國立劇場 376 257, 274 국립서울대학 건설 반대투쟁 國立서울 〈귀속재산처리법〉 〈歸屬財産處理法〉 大學 建設 反對鬪爭 177 288 국무부 國務部 138 《귀촉도》《歸蜀途》 302 국무부 전후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 귀환동포 歸還同胞 231~233 귀화동포문제 歸還同胞問題 國務部 戰後 對外政策에 關한 諮問委 230, 252 貝會 The Advisory Committee on 〈균열〉 〈龜裂〉 297 Postwar Foreign Policy 17 그로미코 A. Gromvko 388, 390 국민당 國民黨 112, 118, 129, 135, 극단전선 劇團戰線 372 극술 劇術 374 $140, 178 \sim 182, 184, 186$ 국민대회준비회 國民大會準備會 125 극예술협회 劇藝術協會 373 국민의회 國民議會 136 근로대중당 勤勞大衆黨 196,200 국악건설본부 國樂建設本部 351,375 근로인민당 勤勞人民黨 166, 167, 171, 국악원 國樂院 351.366 199, 200, 204, 208, 395, 404, 465 국악위원회 國樂委員會 340.344 근민당 → 근로인민당 국악회 國樂會 351 근우동맹 權友同盟 180 〈국자 1・2호〉 〈國字 一・二號〉 기독교사회민주당 基督敎社會民主堂 46, 134 446 국제주의 國際主義 386 〈기본지령〉 〈基本指令〉 26,27 국회선거위원회 國會選舉委員會 409 긴급문제공동토론회 緊急問題共同討論 〈국회의원선거법〉 〈國會議員選舉法〉 會 184 409 김경석 金京石 425 〈국회의원선거법 시행세칙〉 〈國會議 김경승 金景承 339 員選擧法 施行細則〉 409 김경애 金敬愛 375 〈군정위반에 관한 범죄〉 〈軍政違反에 김관 金管 361 關한 犯罪〉 285 김관수 金寬洙 349 굳펠로우 Preston M. Goodfellow 55. 김광득 金光得 351 307 142 김광섭 金胱學 권동진 權東鎭 김광진 金洸鎭 427 125 권오설 權五卨 148 김구 金九 32, 44, 47, 72, 77, 111, 118, 권원한 權元漢 362 123, 125, 131, 135, ~138, 200, 203, 205~

	$208, 211 \sim 215, 219, 220, 306, 391, 405,$		김생려	金生麗	349
406, 410, 417, 420, 462		김석구	金錫九	351	
	金奎植	32, 56, 72, 137, 188,	김선득	金先得	342
		5, 197, 199~204, 206~	김선영	金鮮英	373
208, 2	211, 214~2	216, 219, 220, 391, 404,	김성수	金性洙	99, 123, 131, 417, 419
406, 4	110, 417		김성숙	金星淑	55, 160, 167, 185
김기림	金起林	306, 307	김성진	金星振	351
김기전	金起田	441	김성태	金聖泰	342, 343, 346
김기창	金基昶	337	김세용	金世湧	332
김남천	金南天	170, 171, 304, 306, 307,	김세용	金世鎔	99, 102, 159, 160, 185
317, 3	26, 371		김세형	金世炯	342
김달진	金達鎭	313	김소희	金素姬	342, 375
김달현	金達鉉	442	김순남	金順男	342, 343, 359
김대봉	金大鳳	438	김승구	金承久	369
김덕영	金德永	429, 448	김아부	金亞夫	376
김도연	金度演	125, 420	김약수	金若水	125, 130, 200
김동리	金東里	296, 313, 318, 320~	김연수	金演洙	375
322, 3	325		김연수청	상극단 金額	寅洙唱劇團 352,356,
김동석	金東錫	321, 325	375		
김동원	金東元	125, 417	김영기	金永基	332, 339
김동원	金東園	372	김영운	金英雲	373
김두봉	金枓奉	168, 200, 205, 208, 209,	김영윤	金永胤	342
211, 2	12, 214~21	6, 443, 444, 448, 456, 462	김영태	金永泰	357
김두환	金斗煥	332	김영희	金永羲	361
김만선	金萬善	296	김예용	金禮鏞	431
김명 金	き明 438	3	김오성	金午星	160, 164, 175, 185, 307
김명희	金明熺	442	김용범	金鎔範	428, 438
김민산	金民山	444	김용준	金瑢俊	339
김병규	金秉逵	318, 320, 322	김웅 🕏	企雄 379)
김병로	金炳魯	125, 130, 180, 184, 185,	김원복	金元福	342
199			김원봉	金元鳳	55, 113, 160, 191, 214
김병서	金秉瑞	427	김원용		199
김병연	金炳淵	427	김윤덕	金允德	342
김병호	金炳昊	342	김윤동	金潤東	460
김보남	金寶南	342	김응순	金應珣	429
김복자	金福子	373	김익진	金翼鎭	427
김붕준	金朋濬	191, 197, 199, 208, 216	김인수	金仁洙	363
김사량	金史良	307	김인승		331, 339
김삼룡	金三龍	148	김인학		430
김상규	金尚奎	130		· → 425	

김일성 金日成	41, 148, 187, 200, 205,	
208, 211, 212, 21	5, 216, 425, 426, 438,	[∟]
446, 448, 456, 459		
	격사건 金日成・康	나운규 羅雲奎 379
良煜 狙擊事件		나운영 羅運榮 346
김일영 金一影	369	나웅 羅雄 369,370
김자경 金慈璟	343	《낙동강》 《洛東江》 301
김재규 金在奎	428	〈낙조〉 〈落照〉 293
김재훈 金載勳	342	남관 南寬 331
김정주 金廷柱	442 298	남궁요설 南宮堯卨 349
		남녀평등권법령 男女平等權法令 455
김제봉 金濟鳳	431	남로당 → 남조선노동당
김준덕 金俊德	363	남로당 세포사건 南勞黨 細胞事件
김준연 金俊淵	125	395
김진우 金振宇	159, 160	남북교역 南北交易 292
김찬 金燦 196		〈남북교역 정지에 관한 건〉 〈南北交
김창만 金昌滿	168	易 停止에 關한 件〉 292
김창섭 金昌燮	355, 357	남북연석회의 南北連席會議 201,
김창숙 金昌淑	113, 207	202, 208, 209, 403, 406
김책 金策 425		남북요인회담 南北要人會談 203~
김천흥 金千興	342	205, 215, 219, 220, 391
김청철 金淸哲	428	남북정치단체대표자회의 南北政治團體
김춘광 金春光	372	代表者會議 204
김태오 金泰午	346	남북정치지도자회의 南北政治指導者會
김태준 金台俊	148	議 212
김태진 金泰鎭	369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南北諸政
김택영 金澤榮	460	黨社會團體連席會議 461
김학상 金學相	349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김학철 金學鐵	297	南北朝鮮諸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
김해송 金海松	369	議 211, 212, 214
김현숙 金賢淑	347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김형로 金炯魯	349	南北朝鮮諸政黨社會團體指導者協議會
김형선 金炯善		463
김형식 金瀅植		남북지도자연석회의 南北指導者連席會
김호 金乎 199		議 167
김화 金華 378		남북지도자협의회 南北指導者協議會
김환기 金煥基	332, 339	216
김훈 金薰 354		남북지도자회의 南北指導者會議 203,
〈꽃덤풀〉 300		204, 206, 209, 212, 218, 219
		남북한인지도자회의 南北韓人指導者會

남북협상 南北協商 137, 146, 183, 207, 210, 220, 404, 410 〈남북협상을 성원함〉 〈南北協商을 聲 援함〉 211 〈남조선 정치정세〉 〈南朝鮮 政治情勢〉 213 남조선과도입법의원 南朝鮮渦渡立法議 院 130, 178, 398 남조선과도정부 南朝鮮渦渡政府 178. 182 남조선노동당 南朝鮮勞動黨 146,157. 166, 172, 176, 177, 203, 214, 395, 396, 410, 413 남조선단독선거반대투쟁전국위원회 南 朝鮮單獨選舉反對鬪爭全國委員會 215, 463 남조선대표민주의원 南朝鮮代表民主議 院 50, 135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 南朝鮮大 韓民國代表民主議院 117 남조선신민당 南朝鮮新民黨 164 〈남조선의 현정치정세〉 〈南朝鮮의 現 政治情勢〉 213 〈남조선입법의원선거법〉 〈南朝鮮立法 議員選舉法〉 399 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 南朝鮮總罷業 鬪爭委員會 247 남한단정안 南韓單政案 65, 77 남한총선거안 南韓總選擧案 206 내각책임제 內閣責任制 418 노광욱 盧光郁 355 노동법령 勞動法令 455 노동자공장관리운동 勞動者工場管理運 動 239, 240 노동자문위원회 조선소위 勞動諮問委 員會 朝鮮小委 285

노동자자주관리운동 勞動者自主管理運

237, 240, 257, 275, 279, 285

議 205

會 113.152 《노력자》 《努力者》 326 농감 農監 261 농민조합전국총연맹 農民組合全國總聯 盟 113 농업현물세 農業現物稅 454 농지개혁 農地改革 257.402 〈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263 농지위원회 農地委員會 263 농촌위원회 農村委員會 454 〈뇌우〉 〈雷雨〉 376

[□]

다사리 180 단구미술원 檀丘美術院 332 단독정부 單獨政府 390.392.393 단독정부수립운동 單獨政府樹立運動 203 단선 單選 392,393 단선반대 구국총파업 單選反對 救國總 罷業 413 단선안 單選案 390 단일정부 單一政府 392 단정운동 單政運動 221 《당지》 《堂志》 442 대구항쟁 大邱抗争 254 대동아공영권 大東亞共榮圈 16 대동청년단 大同靑年團 131,412,415 대소반공블럭 對蘇反共Bloc 397 대외관계협의회 對外關係協議會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7 〈대외무역규칙〉〈對外貿易規則〉 291. 292 대지역 구상 大地域 構想 17 대춘향전 大春香傳 대통령선거 大統領選舉 419 대통령제 大統領制 418 대한경제보국회 大韓經濟輔國會 143 노동조합전국평의회 勞動組合全國評議 대한경제원조안 對韓經濟援助案 63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大韓國民代表民 主議員 120 대한국민회 大韓國民會 131 대한국악원 大韓國樂院 375 대한노동조합총연맹 大韓勞動組合總聯 盟 250, 285 대한노총 →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大韓獨立促成國民 會 120, 143, 412, 413, 415, 417 대한독립촉성국민회청년대 大韓獨立促 成國民會青年隊 144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 大韓獨立促成 中央協議會 140 《대한민국건국강령초안》 《大韓民國建 國綱領草案》 132 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 大韓民國代表民 主議院 129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30. 123 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환영회 大韓民 國臨時政府 還國歡迎會 124 《대한민국임시헌법》 《大韓民國臨時憲 法》 132 대한연주가협회 大韓演奏家協會 356. 362 덜레스 John Foster Dulles 84 도・시・군인민위원회 道・市・郡人民 委員會 457 도용호 都容浩 428.431 〈도정〉〈道程〉 295 독립노농당 獨立勞農黨 201 독립동맹 獨立同盟 113, 148, 168, 169 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 獨立同盟 京 城特別委員會 169 독립미술가협회 獨立美術家協會 331 독립전선 獨立戰線 197 독립촉성국민회 獨立促成國民會 74. 136, 145 독립촉성중앙협의회 獨立促成中央協議

會 38, 55, 111, 117, 118, 133, 135, 141, 142, 181, 184 독촉국민회 → 독립촉성국민회 독촉중협 →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동북항일연군교도려 東北抗日聯軍教導 旅 425 동아일보그룹 東亞日報group 123 동양극장 東洋劇場 드레이퍼 William H. Draper 84 드레이퍼 사절단 Draper 使節團 84. 88 단 William F. Dean 413

[2]

랭턴 William R. Langdon 33 러베트 Robert A. Lovett 202, 386 러취 Archer L. Lerch 190 레베데프 Лебедев Н.Г. 209 레베데프비망록 Лебедев Н. Г. 備忘錄 209 《로동신문》 《勞動新聞》 456 로마넨꼬 Романенко П. Р. 426 루나 Luna 421 리인민위원회 위원선거 里人民委員會 委員選舉 458

마금희 馬金喜 365 마샬 George C. Marshall 63, 68, 202.386 마샬플랜 Marshall plan 202 맥아더 Douglas MacArthur 138. 139, 144, 421 메논 K. P. S. Menon 205, 206, 391 메레쯔코프 MepenKoB K. A. 424 면인민위원회 위원선거 面人民委員會 委員選舉 458 명제세 明濟世 180

모스크바 3상결정 Moscow 三相決定 208

모스크바 3상협정 Moscow 三相協定 109

모스크바 3상회담 Moscow 三相會談 43

모스크바 3상회의 Moscow 三相會議 108,241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성명서 Moscow 三相會議 支持聲明書 115 모스크바 협정 Moscow 協定 383 〈목넘이 마을의 개〉 297

몰로토프 V. M. Molotov 52, 68, 202, 386

몽롱체 朦朧體 333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 無償沒收· 無償分配의 原則 246

무정 武亨 148, 168, 438, 448 문석구 文錫九 431

《문장》 《文章》 300,304

문창범 文昌範 125

《문학》 《文學》 327

문학가동맹 文學家同盟 113

문화공작대 文化工作隊 361

문화단체연맹 文化團體聯盟 370

문화운동 文化運動 123

문화의 집 文化의 집 360 문회표 文會彪 428

(미곡수집령) 〈米穀收集令〉 235, 246 265

미군 OSS 美軍 OSS 20 미군정 美軍政 124,146,18

미군정 美軍政 124,146,188

미술문화협회 美術文化協會 331 〈미술운동과 대중화 문제〉 〈美術運動

과 大衆化 問題〉 337

미술협회 美術協會 332

미・소공동위원회 美・蘇共同委員會 43,69,124,128,129,143,156,157,164, 167,172,179,183,187,190,194,197,202, 203,383,445 ロ・소공위 개최조건美・蘇共委 開催條件72

 ロ・소공위 결렬 美・蘇共委 決裂

 79

ロ・소공위대책각정당사회단체협의회 美・蘇共委對策各政黨社會團體協議 會 197

 ロ・소공위대책위원회
 美・蘇共委對策

 委員會
 200

〈미·소공위 11호 성명〉 〈美·蘇共委 十一號 聲明〉 73

〈미·소공위 5호 성명〉 〈美·蘇共委 五號 聲明〉 57,129

 ロ・소양군 철수 美・蘇兩軍 撤收

 388

민련 → 민족자주연맹 민전 → 민주주의민족전선

민정장관 民政長官 182

민족대표자대회 民族代表者大會 136

민족독립당 民族獨立黨 404 민족문학 民族文學 314,316

(민족문학재론) 〈民族文學再論〉 315

〈민족문화론〉 〈民族文化論〉 315 민족유일당 民族唯一黨 188,200

민족유일당운동 民族唯一黨運動 183 민족음악문화연구회 民族音樂文化研究 會 356

〈민족의 최인〉 〈民族의 罪人〉 293 민족자주연맹 民族自主聯盟 167, 179, 195, 198~201, 203, 205, 207, 214, 403, 413

민족주의 문학론 民族主義 文學論 319

민족청년단 民族靑年團 412,415 민족통일진영재편성주비촉진회 民族統 一陣營再編成籌備促進會 198

민족통일총본부 民族統一總本部 74, 136,144

민족해방동맹 民族解放同盟 196 민족혁명당 民族革命黨 135,413

민주개혁 民主改革 452	박산운 朴山雲 326
민주국민당 民主國民黨 131	박상익 朴商翊 373
민주독립당 民主獨立黨 198,200,	박세영 朴世永 306, 307, 312, 317
203, 465	박승환 朴承煥 160, 427
민주의원 民主議院 51,55,56,111,	박아지 朴芽枝 312,317
124, 142, 182, 188, 189, 191	박영근 朴榮根 342
민주주의독립전선 民主主義獨立戰線	박영선 朴泳善 331
179, 195, 200	박영호 朴英鎬 369, 371
민주주의민족전선 民主主義民族戰線	박용구 朴容九 342
$55, 111 \sim 113, 117, 120, 146, 155 \sim 157,$	박용칠 朴容七 102
163, 171, 189, 190, 193, 395	박용희 朴容羲 130, 180, 199
민주통일당 民主統一黨 199	박원식 朴源植 130
민주한독당 民主韓獨黨 136, 199, 200,	박윤길 朴允吉 442
204	박은용 朴殷用 342
민중공화당 民衆共和黨 180	박일우 朴一禹 168
민중동맹 民衆同盟 196, 197, 199, 200,	박정애 朴正愛 428, 438, 448
204	박종화 朴鍾和 313, 319
	박종환 朴鍾煥 431
[H]	박찬모 朴贊謨 311,326
	박창섭 朴昌燮 438
바실례프스키 Василевский А. М.	박태원 朴泰遠 317
424	박태준 朴泰俊 342
박건웅 朴健雄 197, 201	박태현 朴泰鉉 342
박경득 朴庚得 428	박한주 朴漢柱 165
박경호 朴慶浩 342	박헌봉 朴憲鳳 342, 344
박고석 朴古石 337	박헌영 朴憲永 97, 106, 112, 118, 148,
박구 朴九 369	152, 154, 156, 173, 174, 176, 189, 191, 213,
박귀희 朴貴姬 342, 375	214, 216, 248, 258, 305, 394, 437
박남수 朴南洙 355	박현복 朴賢福 347
박내현 朴崍賢 337	박황 朴晃 375
박노갑 朴魯甲 317	박후성 朴厚星 375
박노아 朴露兒 371	반공국가 反共國家 397
박녹주 朴綠珠 342, 375	반공체제 反共體制 394, 396, 402
박동실 朴東實 342	반탁 反託 384
박두진 朴斗鎭 300	반탁국민총동원위원회 反託國民總動員
박명환 朴明煥 130	委員會 113
박목월 朴木月 300	반탁운동 反託運動 45, 110, 111, 129,
박문규 朴文圭 102	133, 136, 142, 154, 162, 182, 187, 189,
박문희 朴文熺 196	192, 194
박민종 朴敏鍾 360	반탁정국 反託政局 110

반탁투쟁위원회 反託鬪爭委員會 74. 124, 136, 182 반탁투쟁조직위원회 反託鬪爭組織委員 會 135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 反파쇼共同鬪爭 委員會 114 발라사노프 G. M. Balasanov 60 반수영 方壽永 448 방우용 方禹鏞 448 배력 裵濂 332 배성룡 裵成龍 200, 201 배운성 裵雲成 339 백관수 白寬洙 125, 180, 184 백남운 白南雲 167, 169~172, 175, 213, 216, 395, 444 백남훈 白南薰 125, 131 백용구 白容龜 428 백홍균 白弘均 185 백화 白花 369 버취 Leonard Bertsch 164 번스 Arthur C. Bunce 60 번스·발라사노프 회담 Bunce· Balasanov 會談 60.61 번즈 Iames F. Byrnes 42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400 변동유 邊東潤 444 《별》 326 보통선거법 普誦選舉法 130 봉쇄전략 封鎖戰略 384 봉해룡 奉海龍 350 부녀총동맹 婦女總同盟 113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Bourgeois 民 主主義 革命 151,161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 Bourgeois 民主主義 革命論 170 부일협력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附 日協力者 等에 關한 特別法律案 130 북로당 → 북조선노동당 북조선 각도・시・군인민위원회대회 北

朝鮮 各道・市・郡人民委員會大會 458 북조선공산당 北朝鮮共産黨 156, 168, 171, 173, 439, 456 북조선노동당 北朝鮮勞動黨 171. 175~177, 203, 208, 214, 456 북조선노동당 제2차 당대회 北朝鮮祭 動堂 第二次 堂大會 462 북조선농민대표대회 北朝鮮農民代表大 會 453 북조선농민동맹 北朝鮮農民同盟 445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 北朝鮮文學藝術 總聯盟 312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北朝鮮民 主主義民族統一戰線 455, 457, 462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중앙위원회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中央委員 會 208 북조선민주청년동맹 北朝鮮民主靑年同 盟 445 북조선신민당 北朝鮮新民黨 173 북조선여성동맹 北朝鮮女性同盟 445 북조선예술총연맹 北朝鮮藝術總聯盟 315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 연합회의 北朝 鮮 五道人民委員會 聯合會議 434 북조선인민회의 北朝鮮人民會議 203, 458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 北朝鮮人民 會議 特別會議 46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北朝鮮臨時人民 委員會 447 〈북조선 정치정세〉 〈北朝鮮 政治情 勢〉 213 북조선직업총동맹 北朝鮮職業總同盟 445 **북**조선천도교청우당 北朝鮮天道教靑友 堂 440 북조선최고재판소 北朝鮮最高裁判所

460

북조선행정국 北朝鮮行政局 436 브라운 Albert E. Brown 72, 75, 83 비상국무회의 非常國務會議 116 비상국민회의 非常國民會議 74, 111, 117, 120, 124, 135, 136, 142, 155, 160, 163, 182, 191 비상정치회의 非常政治會議 119, 134, 187 비상정치회의주비회 非常政治會議籌備 會 55, 111 빈센트 John Carter Vincent 28, 114

[人]

4김회담 四金會談 200, 216 4당회의 四黨會議 162 4당회합 四黨會合 129, 155, 182, 185 4・3사태 四・三事態 410, 415 4・30 공동성명서 四・三十共同聲明書 219, 221 사회노동당 社會勞動黨 157, 166, 171, 176 사회당 社會黨 138 사회대중당 社會大衆黨 196 사회민주당 社會民主黨 165, 180, 197, 199, 200, 204 산사람 山사람 255 산업건설운동 産業建設運動 240 산업건설협력 방침 産業建設協力 方針 240 《산유화》《山有花》 366 3당합당 三黨合黨 146 3당합동 三黨合同 166 3부조정위원회 三部調停委員會(SWNCC) 26, 27, 48 3상회의 三相會議 163 3상회의 결정서 三相會議 決定書 124, 153, 168 3심제 三審制 400 3・7제 三・七制 432

38도선 분할점령 三八度線 分割占領 20. 21 〈삼팔선〉 〈三八線〉 296 《생명의 서》 《生命의 書》 302 서상운 徐相云 342, 350 서상일 徐相日 125, 417 서울관현악단 서울管絃樂團 350, 356, 363 서울교향악단 서울交響樂團 363 서울교향악협회 서울交響樂協會 356 서울시민대회 서울市民大會 154 서울예술극장 서울藝術劇場 369 서울음악단 서울音樂團 356 서재필 徐載弼 125 서정주 徐廷柱 302 서중석 徐重錫 147 서철 徐哲 425.426 서항석 徐恒錫 369, 370 설의식 薛義植 125 342, 351 성경린 成慶麟 성광현 成光顯 372 성금연 成錦鳶 342 성연회 聲硏會 347 성주식 成周寔 55, 113, 160 〈소년은 자란다〉 〈少年은 자란다〉 294 소련군사령부 蘇聯軍司令部 426 소련외무성 蘇聯外務省 453 소작료 3・1제 小作料 三・一制 246 소작료 3・7제 小作料 三・七制 245 소장과 少壯派 418 손응성 孫應星 331 송남헌 宋南憲 130, 214 송석하 宋錫夏 371 송성관 宋成寬 428, 430, 431 송영 宋影 304.369 송완순 宋完淳 306 송진우 宋鎭禹 99, 106, 118, $123 \sim 125$,

129, 184, 186 134, 154 순수문학 純粹文學 321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信託統 순수문학론 純粹文學論 318 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 46, 119, 쉐짜닌 Шетинин Б. В. 134 461 쉬티코프 Штыков T. Φ. 79. 203 신탁통치 반대운동 信託統治 反對運動 스딸린 비밀전문 Сталин Б. В. 秘密電 123, 127 432 신탁통치안 信託統治案 18 Δ, 스미스 W. Bedell Smith 신한공사 新韓公社 61 245, 260, 267, 401 〈시국대책요강〉 〈時局對策要綱〉 신한국민당 新韓國民黨 135, 199 396 신한민족당 新韓民族黨 135, 178, 183, 시국대책혐의회 時局對策協議會 186, 465 198, 200 신협 新協 376 10월항쟁 十月抗爭 157, 177, 193, 194, 신화당 新化黨 196 247, 251, 394 실력양성운동 實力養成運動 126 시조연구회 時調研究會 심운 沈雲 444 356 심형구 沈亨求 식량공출제 食糧供出制 263, 265, 266 339 식량문제 食糧問題 230, 233, 234, 252 15회 十五會 159 식산은행 殖産銀行 275 12정당협의회 十二政黨協議會 167 신간회 新幹會 183, 198, 200 신기언 申基彦 206 [0] 신막 愼幕 342 신민당 新民黨 113,166 아놀드 Archibald V. Arnold 48, 105, 신민당 경성특별위원회 新民黨 京城特 189, 190 別委員會 169 아악부 雅樂部 365 신민족주의 新民族主義 180,181 〈아악부 국영안〉 〈雅樂部 國營案〉 신민주주의 新民主主義 169 351 신봉균 申鳳均 372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신사실파 新寫實派 332 63 신석정 辛夕汀 300 301 안경근 安敬根 211 신세계질서 新世界秩序 New World 안기영 安基永 342 Order 17 안기옥 安基玉 342 신숙 申肅 200 안길 安吉 425,426 신의주 학생사건 新義州 學生事件 안병소 安炳昭 343 446 안석영 安夕影 377 신익희 申翼熙 131, 132, 143, 417 안영일 安英一 369 신전술 新戰術 146, 157, 172, 192, 242. 안재홍 安在鴻 72, 100, 102, 118, 125, 249, 252, 394 135, 158, 179, 181, 182, 184, 185, 191, 199 신진당 新進黨 196, 197, 199, 204 안종화 安鍾和 377 신쾌동 申快童 342 안창호 安昌浩 131 신탁통치 信託統治 45, 70, 109, 118, 안함광 安含光 307, 315, 317

안호상 安浩相 420 안회남 安懷南 295, 306, 307 〈압록강〉 〈鴨綠江〉 296 애국부녀동맹 爱國婦女同盟 200 애치슨 Dean G. Acheson 42 액치슨 George Ir. Atcheson 33 얄타회담 Yalta會談 95 〈양곡관리법〉 〈糧穀管理法〉 265 양근화 梁槿煥 184 양민산 楊民山 168 양영순 楊永筍 438 양재하 梁在廈 102 양주동 梁柱東 317 양태원 梁台源 436 어용극운동 御用劇運動 369 엄항섭 嚴恒燮 138, 165, 206, 213, 214. 216 엔도 류사쿠 遠藤枊作 100 ML계 ML系 148 여성국극 女性國劇 375 여성국악동호회 女性國樂同好會 375 여성동맹 女性同盟 395 여운형 呂運亨 55, 60, 99, 102, 105. $106, 112, 118, 156 \sim 158, 161, 162, 167,$ 171, 172, 175, 176, 179, 184, 187, 189, 191, 195, 198, 199, 202, 248 여운홍 呂運弘 164, 189, 197, 201, 203 〈역로〉 〈歷路〉 293 〈역마〉 〈驛馬〉 296 연극건설본부 演劇建設本部 369 연석회의 連席會議 210, 213, 215, 220 연석회의 예비회의 連席會議 豫備會議 212 연합성 신민주주의 聯合性 新民主主義 151, 170 연해주군관구 沿海州軍管區 425, 453 열성자대회 熱誠者大會 148 296, 317, 327, 328 염상섬 廉想涉 영장제도 令狀制度 400 영화건설본부 映畵建設本部 377

오기섭 吳淇學 437, 438 5당캄파 五黨campaign 199 5당회합 五黨會合 129, 155, 182 5・30선거 五・三十選舉 207 오세창 吳世昌 125 오스틴 Warren R. Austin 386 5・10선거 五・十選擧 137,218,393, 408 오윤선 吳胤善 427, 431 오장환 吳章煥 300, 326 오재일 吳載一 102 오지호 吳之湖 336 오창진 吳昌鎭 354, 357 오태석 吳太石 342 5호성명 五號聲明 164 요인회담 要人會談 216 우익 정치세력 右翼 政治勢力 123 원세훈 元世勳 125, 130, 185, 190, $191, 197, 199 \sim 201$ 〈워술랑〉 〈元述郞〉 376 원우관 元友觀 196 웨드마이어 Albert C. Wedemeyer 84 웨드마이어 사절단 Wedemever 使節 團 86,88 웨커링 John Weckerling 78 위임통치론 委任統治論 142 유권자 등록 有權者 登錄 410 유림 柳林 201 유석현 劉錫鉉 102 유엔 UN 145,146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안 UN監視下 의 南北總選擧案 203 유엔소총회 UN小總會 206.391 유엔임시위원단 UN臨時委員團 206 유엔총회 UN總會 387, 388 유엔총회 결의안 UN總會 決議案 389, 390, 422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韓國臨時委員 204, 388~390, 392, 398, 399, 406,

409, 416	이극로 李克魯	196, 197, 199, 204,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제1분과위 UN韓	208, 214, 216	
國臨時委員團 第一分科委 400	이근락 李根樂	355
유영국 劉永國 332	이근영 李根榮	295
유인석 柳麟錫 160	이기석 李基錫	176, 395
유진오 兪鎭午 300, 417	이기수 李基洙	170, 171
유치진 柳致眞 369, 370, 373, 376	이기영 李箕永	307, 317, 377, 448
유치환 柳致環 302,313	이기용 金錤鎔	159
윤기섭 尹琦燮 200	이덕환 李德煥	350
윤기영 尹基寧 436, 448	이동규 李東珪	317
윤기정 尹基鼎 304, 306, 307, 317	이동녕 李東寧	131
윤대룡 尹大龍 379	이동일 李東日	357
윤동주 尹東柱 301	이만규 李萬珪	99, 160, 166
윤백남 尹白南 377	이명선 李明善	319
윤보선 尹潽善 126	이문환 李文煥	448
윤봉춘 尹逢春 378	이범석 李範奭	420
윤부길 尹富吉 369	이범준 李範俊	342
윤상남 尹相南 438	이병기 李秉岐	307, 317
윤석구 尹錫龜 420	이병성 李炳星	342
윤세중 尹世重 295	이병철 李秉哲	326
윤승욱 尹承旭 339	이병학 李丙學	102
윤이상 尹伊桑 366	이봉상 李鳳商	331
윤일봉 尹一逢 379	이봉수 李鳳洙	431, 436, 448
윤치영 尹致暎 125,420	이상도 李相燾	102
윤태섭 尹泰燮 355	이상백 李相佰	99, 160, 200
윤형수 尹亨洙 102	이상범 李象範	339
윤효중 尹孝重 339	이상춘 李想春	343
윤희순 尹喜淳 333, 336	이상화 李相和	301
음악가단체대회 音樂家團體大會 345	이서향 李曙鄕	369
음악가의 집 音樂家의 집 360	이석구 李錫玖	159
이강국 李康國 102, 191, 394	이순근 李舜根	436, 448
이강렬 李康烈 347	이순금 李順今	148
이건우 李建雨 342	이순탁 李順鐸	130
이걸소 李傑笑 159,160	이승만 李承晩	32, 56, 72, 77, 88, 89,
이경팔 李璟八 367	104, 111, 112, 1	18, 123, 125, 129, 131,
이광 李珖 102	$135 \sim 139, 141, 1$	43, 145, 162, 165, 181,
이구영 李龜永 378	184, 194, 197, 20	03, 206, 219, 306, 391,
이구훈 李龜燻 148	405~407, 417~	419, 421
이규봉 李圭鳳 102	이승엽 李承燁	147, 148
이규상 李揆祥 331,332	이승학 李升學	361

املاله	- ★ - 1. 1. 1818	105 000 400	
		125, 203, 420	이쾌대 李快大 337
	: 정강〉 〈	(二十個條 政綱)	이태준 李泰俊 295, 304, 306, 307, 326
451	* = 3	0.40	이해랑 李海浪 372
이애내	李愛內	342	이헌구 李軒求 313
이여성	*	99, 102, 156, 160, 163,	이현상 李鉉相 148, 184
	185, 395	450 405	이호섭 李瑚燮 347
		, 152, 167	이화삼 李化三 372
이영건		372	이흥렬 李興烈 342
이영세	李永世	353	인공 → 조선인민공화국
이용악	李庸岳	300, 326	《인문평론》 《人文評論》 304
이용우	李用雨	332	인민공화당 人民共和黨 395, 465
이용직	李容稙	197	인민극장 人民劇場 369
이운방	李雲芳	371	인민당 人民黨 112
이원조	李源朝	304, 306, 307, 326	인민대표자대회 人民代表者大會 104
이유민	李維民	168, 444	인민동지회 人民同志會 159
이유태	李惟台	332	인민문학 人民文學 305
이유필	李裕弼	428	인민민주주의 人民民主主義 462
이육사	李陸史	160, 301	인민예술 人民藝術 305
이윤영	李允榮	420, 427, 439	인민위원회 人民委員會 30,152,243,
이응로	李應魯	332, 339	427
이응진	李應辰	200, 441	〈일반명령 제1호〉 〈一般命令 第一
이인 즉		, 180, 420	號〉 24,383
이인범	李仁範	349	일본인공장대책위원회 日本人工場對策
이인성	李仁星	331	委員會 276
이인형	李仁亨	349	일오극장 一五劇場 369
이임수	李林洙	159	일요선거 거부사건 日曜選擧 拒否事件
이재천	李載天	350, 351	446
이정구	李貞求	102, 160, 164	임동혁 任東爀 342
이제구	李齊九	366	임방울 林芳蔚 342
이종수	李鍾洙	102	임방울일행 林芳蔚一行 352
이종태	李鍾泰	342	임서하 任西河 313
이종현	李宗鉉	427	임소향 林素香 342
이주연	李周淵	427	임시정부 臨時政府 71,77,118,127,
이주하	李舟河	148, 185, 394	129, 131, 181, 186, 188, 194
이주환	李珠煥	342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臨時政府樹立
이창인	李昌仁	430	對策協議會 128
이청원	李淸源	460	임시정부 수립문제 臨時政府 樹立問題
이청천	李青天	420	383
2·7구=		· 七救國鬪爭 177,	임시정부 수립방안 臨時政府 樹立方案

임시헌법제정위원 臨時憲法制定委員 460 임시헌법초안 臨時憲法草案 461 임영신 任永信 420 임원근 林元根 196 임원식 林元楠 349, 363 임유앵 林柳管 375 임정법통론 臨政法統論 133 임정세력 臨政勢力 112 임정수립대책협의회 臨政樹立對策協議 76 임정의 귀국 臨政의 歸國 32 임춘앵 林春鶯 375 임춘추 林春秋 425 임충석 林忠錫 430 임화 林和 300, 304, 306, 307, 314, 316, 320, 326, 369 입법기구 立法機構 190

[ㅈ]

자유곡가제 自由穀價制 235, 246 자유극장 自由劇場 369.372 자유당 自由黨 180 자유매매 自由賣買 235, 246 자유민주주의체제 自由民主主義體制 398 자유전 自由展 332 자유합작촉성회 自由合作促成會 196 자치운동 自治運動 123,126 〈잔등〉 〈殘燈〉 295 장건상 張建相 55, 113, 160, 166, 167, 175, 185, 395 장권 張權 102.165 장덕 張德 332 장덕수 張德秀 126, 131, 137, 145 장덕수 암살사건 張德秀 暗殺事件 205, 405 장발 張勃 339 장보원 張寶媛 355

장사훈 張師勛 342 장순명 張順明 438 장시우 張時雨 438 장안파 공산당 長安派 共産黨 148 장우성 張遇聖 332, 339 장욱진 張旭鎭 332 장인식 張宙湜 350 장종식 張鍾植 436, 448 장철 張徹 444 장택상 張澤相 72, 125, 407, 420 장해우 張海友 431 장회건 張會建 431 재건파 再建派 305 재산관리이사회 財産管理理事會 276 재산관리처 財産管理處 276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く財 政 및 財産에 關한 最初協定〉 421 적산기업체 敵産企業體 276 적산불하 敵産拂下 128 적화사건 赤化事件 395 전국농민조합총연맹 全國農民組合總聯 盟 152, 245, 259, 395 전국문화단체총연합 全國文化團體總聯 合 364 전국부녀총동맹 全國婦女總同盟 152 전국연극예술협회 全國演劇藝術協會 373 전국연극인대회 全國演劇人大會 371 전국음악가단체대회 全國音樂家團體大 會 352 전국음악단체협의체 全國音樂團體協議 語 356 전국음악문화협회 全國音樂文化協會 353, 356, 362 전국인민대표자대회 全國人民代表者大 會 153 전국청년단체총동맹 全國靑年團體總同 盟 152 전국취주악연맹 全國吹奏樂聯盟 365 전규홍 全奎弘 102

'전쟁과 평화'기획 '戰爭과 平和'企劃	정읍 발언 井邑 發言 124
"War and Peace' Project 17	정응민 鄭應珉 342
《전 조선동포들에게 격함》 〈全 朝鮮	정의식 鄭宜植 102
	정의식 鄭貞祖 102 정인보 鄭寅普 313
同胞들에게 激함〉 214,215	
전조선문필가협회 全朝鮮文筆家協會	정종길 鄭鍾吉 342
314, 319, 361	정준택 鄭準澤 436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全	정지용 鄭芝溶 307
朝鮮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議	정처묵 鄭處默 102
208	정치공작대 政治工作隊 144
전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全朝	정화준 鄭和濬 102
鮮政黨社會團體指導者協議會 216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전진》 《前進》 326, 456	제3분과위원회 第三分科委員會 389,
전진한 錢鎭漢 420	399
전창근 全昌根 378	제3전선 第三戰線 196, 200
전평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제2분과위원회 第二分科委員會 389
전한국인민집행위원회 全韓國人民執行	제2차 남북지도자협의회 第二次 南北
委員會 National Korean Peoples	指導者協議會 417
Executive Committee 33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第二次 美・
정구충 鄭求忠 102	蘇共同委員會 70,73,129,135,144,
정기수 鄭基秀 427	384, 385, 394
정남희 丁南希 352	제1분과위원회 第一分科委員會 387,
정노식 鄭魯湜 169, 175, 191, 444	388, 389
정달헌 鄭達憲 438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第一次 美・
정당방위의 역공세 正當防衛의 逆攻勢	蘇共同委員會 57,59,124,171,179,
249	241
정당방위의 역공세 전술 正當防衛의	제이콥스 Joseph E. Jacobs 84
逆攻勢 戰術 242	제작양화협회 製作洋畵協會 331
정당사회단체대표자대회 政黨社會團體	제헌국회 制憲國會 417
代表者大會 145	제헌헌법 制憲憲法 418
《정로》 《正路》 456	조공 → 조선공산당
정무위원회 政務委員會 Governing	조념 趙念 355
Commission 34	조동우 趙東祐 99,147
정백 鄭栢 147	조만식 曺晩植 41,75,205,218,427,
정부수립결정안 축하국민대회 政府樹	431, 439, 447
立決定案 祝賀國民大會 206	조명희 趙明熙 301
정・부통령선거 正・副統領選擧 419	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 朝・美共同
정영모 鄭榮模 354	騷擾對策委員會 195
정영재 鄭榮在 343	조미령 趙美領 373, 379
정원섭 丁元燮 342	조백령 趙百領 373
정유색 鄭柳色 375	조벽암 趙碧巖 307

- 조병덕 趙炳悳 331
- 조병옥 趙炳玉 72,125,407
- 조봉암 曺奉岩 156, 196, 420
- 조상선 趙相鮮 342
- 조선가극동맹 朝鮮歌劇同盟 356
- 조선가극혐의회 朝鮮歌劇協議會 356
- 조선건국동맹 朝鮮建國同盟 101. 140, 158, 160, 184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朝鮮建國準備委員 會 124
- 조선건국청년회 朝鮮建國靑年會 200
- 조선경비대 朝鮮警備隊 396
- 조선공산당 朝鮮共産黨 110,112, $113, 117 \sim 119, 125, 128, 140, 145 \sim 147,$ 150, 152, 155 \sim 157, 159, 161, 163, 171. 174, 180, 184, 186, 191, 194, 394
-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朝鮮共産黨 北 朝鮮分局 437
- 조선공산당 북조선 5도당원 및 열성자 대회 朝鮮共産黨 北朝鮮 五道黨員 및 熱誠者大會 437
-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朝鮮共産黨 中 央委員會 444
- 조선공예가협회 朝鮮工藝家協會 332
- 조선공작단위원회 朝鮮工作團委員會 426
- 조선공화당 朝鮮共和黨 200
- 조선과학자동맹 朝鮮科學者同盟 170
- 조선국민당 朝鮮國民黨 180
- 〈조선내 일본인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 〈朝鮮內 日本人財産의 權利歸 屬에 關한 件〉 276
- 조선노동당 朝鮮勞動黨 177
- 조선노동조합대구평의회 朝鮮勞動組合 大邱評議會 251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朝鮮勞動組合 全國評議會 236~239, 251, 285, 395
- 조선농민당 朝鮮農民黨 200
- 조선농민총연맹 朝鮮農民總聯盟 196 조선상업은행 朝鮮商業銀行

- 정서 朝鮮問題에 關한 Moscow 三 相協定 決定書 133
- 조선문학가동맹 朝鮮文學家同盟 170, 308, 310, 317, 320, 326
- 조선문학건설본부 朝鮮文學建設本部 304, 306, 310, 312, 319, 369
- 조선문학동맹 朝鮮文學同盟 306
- 조선문학자대회 朝鮮文學者大會 306. 310
-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朝鮮文化建設 中央協議會 304~306, 330, 343, 369, 376
- 조선문화단체총연맹 朝鮮文化團體總聯 盟 362
- 조선문화단체총연합 朝鮮文化團體總聯 310, 326 合
- 조선미술가동맹 朝鮮美術家同盟 331. 336
- 조선미술가협회 朝鮮美術家協會 331 조선미술건설본부 朝鮮美術建設本部 304, 330
- 조선미술전람회 朝鮮美術展覽會 333 조선미술협회 朝鮮美術協會 330
- 조선민족함경남도집행위원회 朝鮮民族 咸鏡南道執行委員會 430,431
- 조선민족혁명당 朝鮮民族革命堂 131. 155, 168
- 조선민주공화국 朝鮮民主共和國 444 조선민주당 朝鮮民主黨 406, 407. 413, 415, 439, 46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146, 422, 465
-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朝鮮民主主義臨 時政府 42
- 조선산업미술협회 朝鮮産業美術協會 332
- 조선상업미술가협회 朝鮮商業美術家協 會 332
 - 275
-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협정 결 조선신민당 朝鮮新民黨 145,151,

- 168, 169, 171~173, 175, 180, 443, 456 조선신민당 경성특별위원회 朝鮮新民
- 黨 京城特別委員會 146,171
- 조선어학회 朝鮮語學會 179,196
- 조선연극건설본부 朝鮮演劇建設本部 304
- 조선연극문화사 朝鮮演劇文化社 372 〈조선연안교역의 감독〉 〈朝鮮沿岸交 易의 監督〉 292
- 조선영화건설본부 朝鮮映畵建設本部 304
- 조선영화동맹 朝鮮映畵同盟 377
- 조선영화인총궐기대회 朝鮮映畵人總蹶 起大會 377
- 조선예술극장 朝鮮藝術劇場 369
- 조선오페라협회 朝鮮opera協會 365
- 조선은행 朝鮮銀行 275, 289
- 조선음악가건설본부
 朝鮮音樂家建設本

 部
 340
- 조선음악가동맹 朝鮮音樂家同盟 340, 349, 354, 359, 360
- 조선음악가협회 朝鮮音樂家協會 340, 345, 352, 356, 362
- 조선음악건설본부 朝鮮音樂建設本部 304,343
- 조선음악협(의)회 朝鮮音樂協(議)會 362,349
- 조선의용군 朝鮮義勇軍 168,443
- 조선인민공화국 朝鮮人民共和國 30, 31, 103, 106, 113, 119, 125, 126, 133, 135, 139, 145, 150, 152, 155, 157, 158, 162, 183, 184
- 조선인민군 朝鮮人民軍 209,462
- 조선인민당 朝鮮人民黨 113, 117, 118, 145, 146, 151, 156~161, 164, 166, 169, 171~173, 175, 180, 187, 189
- 조선인민당 재건위원회 朝鮮人民黨 再 建委員會 166
-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 〈朝 鮮人民의 權利에 關한 布告〉 400

- 조선임시정부 朝鮮臨時政府 134
-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朝鮮臨時憲法 制定委員會 203, 460
- 조선저축은행 朝鮮貯蓄銀行 275
- <조선 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 〈朝 鮮 政治情勢에 對한 決定書〉 214, 215
- 조선조형예술동맹 朝鮮造形藝術同盟 331
- 조선창극단 朝鮮唱劇團 352, 356, 375
- 조선청년문학가협회 朝鮮青年文學家協會 313,362
-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朝鮮프롤레 타리아文學同盟 304, 306, 310, 312, 319
- 조선프롤레타리아미술동맹 朝鮮프롤레 타리아美術同盟 330
- 조선프롤레타리아영화동맹 朝鮮프롤레 타리아映畵同盟 377
-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연맹 朝鮮프롤레 타리아藝術聯盟 304, 306, 347
- 조선프롤레타리아음악동맹 朝鮮프롤레 타리아音樂同盟 340.347
- 조선혁명군 朝鮮革命軍 97
- 조성화 曺成煥 207
- 乏소앙趙素昻132, 135, 136, 138,207, 208, 212, 215, 405, 420
- 조송파 趙松波 431,436
- 조연현 趙演鉉 313,320
- 조영렬 趙永烈 436
- 조영출 趙靈出 371
- 조완구 趙琬九 131, 138, 207, 215
- 조운 曺雲 317
- 조일명 曺一明 147
- 조중현 趙重顯 332
- 조지후 趙芝董 300.313
- 조형예술동맹 造形藝術同盟 336
- 〈朝 조흥은행 朝興銀行 275
- 400 좌우합작 左右合作 156.403

좌우합작노선 左右合作路線 176 〈천도교정치이념〉 〈天道敎政治理念〉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左右 442 合作에 依한 統一政府 樹立 202 천도교청우당 天道敎靑友黨 196,199, 좌우합작운동 左右合作運動 203 200, 395, 440, 465 좌우합작위원회 左右合作委員會 130. 청년문학가협회 靑年文學家協會 317. 144, 146, 157, 165, 166, 171, 172, 178, 320.327 188, 189, 191, 193, 195, 197, 200, 204 청년총연맹 靑年總聯盟 113 좌우합작촉성회 左右合作促成會 《청록집》《靑鹿集》 196 300 주계섭 朱啟燮 428 청우당 → 천도교청우당 주문정 朱文禎 428 청춘극장 靑春劇場 372 **주**미대표부 駐美代表部 123 청포도 靑葡萄 369 주북한소련민정국 駐北韓蘇聯民政局 총선거선전문화계몽대 總選舉宣傳文化 426 啓蒙隊 373 최경덕 崔景德 주선태 朱善泰 379 438 주영하 朱寧河 213, 214, 216, 437 최경식 崔景植 351 주장순 朱璋淳 최고인민회의 最高人民會議 464 428 주증녀 朱曾女 379 최고정무위원회 最高政務委員會 111 주치욱 朱致旭 428 최근우 崔謹愚 102, 184 중경임시정부추대 최기모 崔基模 重慶臨時政府推戴 430 최능진 崔能鎭 427 203, 205 〈중앙식량규칙〉 〈中央食糧規則〉 최동오 崔東旿 191, 199, 201 266 최명익 崔明翊 313 중앙인민위원회 中央人民委員會 114. 최명학 崔明鶴 429, 431 152, 154 최성복 崔成福 213 지방인민위원회 地方人民委員會 최성진 崔星鎭 355 107. 최성화 崔星煥 102 244 지창규 池昌奎 최옥산 崔玉山 342 427 지청천 池靑天 최용건 崔庸健 216, 426, 436, 439, 448, 131 지하련 池河連 295 459 지하선거 地下選擧 403, 416 최용달 崔容達 102, 184, 448, 460 진환 陳瓛 339 최용진 崔勇進 425 최은희 崔銀姬 379 [ㅊ] 최익한 崔益翰 102, 148 최인규 崔寅奎 378 창극 唱劇 374 최지애 崔芝愛 379 채동선 蔡東鮮 340, 342, 343 최창은 崔昌殷 342 채만식 蔡萬植 293, 317, 327, 328 최창익 崔昌益 148, 168, 444 〈처자〉 〈妻子〉 293 최태응 崔泰應 313 천경자 千鏡子 332 최현 崔腎 425,426

천도교보국당 天道敎輔國黨

200

최호민 崔浩敏

428

최희남 崔熙南 352 〈추산당과 곁 사람들〉 〈秋山堂과 곁 사람들〉 298 치스짜코프 Чистяков И. М. 424, 429, 434 친박헌영과 親朴憲永派 175 7거두성명 七巨頭聲明 207 7・27투쟁 七・二七鬪爭 395

[7]

카이로선언 Cairo宣言 19,43 카이로회담 Cairo會談 95

[≡]

탁치반대운동 託治反對運動 110 토지개혁 土地改革 75, 257, 401, 453 〈토지개혁법〉 〈土地改革法〉 130. 262 토지개혁위원회 土地改革委員會 263 통일건국회 統一建國會 196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統一獨立運動者 協議會 137, 201, 210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결성대회 統一 獨立運動者協議會 結成大會 210 통일독립촉진회 統一獨立促淮會 201 통일위원회 統一委員會 162 통일정권촉성회 統一政權促成會 196 통합고문회의 統合顧問會議 Coalition Advisory Council 33 통합 한독당 統合 韓獨堂 132 트루만 Harry S. Truman 61 트루만독트린 Truman Doctrine 384 특별정치위원회 特別政治委員會 185

[12]

8월대제 八月These 148,150,245,258 對策協議會 205 8・15해방 기념대회 八・一五解放 紀 한국무대예술원 韓國舞臺藝術院 373

念大會 395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 의 건〉 〈敗戰國 所屬 財産의 凍結 및 移轉制限의 件〉 275 패터슨 Robert B. Patterson 63 평남인민정치위원회 平南人民政治委員 會 431 평북임시인민정치위원회 平北臨時人民 政治委員會 431 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 平安南道建國 準備委員會 427 평안북도자치위원회 平安北道自治委員 會 428 평양 장대현교회사건 平壤 章臺峴敎會 事件 446 평양중앙교향악단 平壤中央交響樂團 355 포츠담선언 Potsdam宣言 95 프로연극동맹 프로演劇同盟 370, 372

[ㅎ]

하길한 河吉漢 355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301,302 하동문화협회 河東文化協會 356 하지 Iohn R. Hodge 26, 29, 47, 56. 62, 65, 105, 138, 139, 153, 190, 193, 218, 392, 409, 421 학병동맹 學兵同盟 152 한갑득 韓甲得 342 한갑수 韓甲洙 352 한국국민당 韓國國民黨 132 한국농민총연맹 韓國農民總聯盟 196 한국독립당 韓國獨立黨 123, 129, 134, 135, 137, 138, 182, 190, 200, 201, 203, 205, 208, 214, 405, 413, 415 한국독립정부대책협의회 韓國獨立政府 對策協議會 205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韓國問題의 UN 移管 82, 384, 385, 402 한국민족대표자대회 韓國民族代表者大 會 145 한국민족대표자회의 韓國民族代表者會 議 145.407 한국민주당 韓國民主黨 44.45.112. $118, 124 \sim 126, 129, 135 \sim 137, 140, 181,$ 184, 186, 191, 194, 203, 205, 259, 391, $405, 407, 412, 415, 417 \sim 419$ 〈한국에 관한 결정〉 〈韓國에 關한 決 定〉 41 〈한국에 관한 미국의 제안〉 〈韓國에 關한 美國의 提案〉 81 한국에 관한 부간 특별위원회 韓國에 關한 部間 特別委員會 64.67 〈한국에 관한 정치적 방침〉 〈韓國에 關한 政治的 方針〉 48 〈한국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韓國에 關한 特別委員會 報告書〉 80 한국연예문화사 韓國演藝文化社 372 한국오라토리오협회 韓國oratorio協會 356 한국의 통일행정 韓國의 統一行政 Unified Administration for Korea 39 한국인민행정위원회 韓國人民行政委員 會 139 〈한국정부 구성에 관한 협상지침〉 〈韓國政府 構成에 關한 協商指針〉 48 한근조 韓根祖 427 한낙규 韓洛奎 436 한독당 → 한국독립당 한동찬 韓東燦 436, 448 〈한미군사협정〉 〈韓美軍事協定〉

한미농지개혁연락위원회 韓美農地改革

421

連絡委員會 262

한민당 → 한국민주당 한반도의 38선 분할점령 韓半島의 三 八線 分割占領 25 한빈 韓斌 168,444 한설야 韓雪野 304, 306, 307, 317, 377 か성녀 韓聖女 373 한웅 韓雄 428 한재덕 韓載德 427 하주화 韓周煥 342 하지복 韓祉福 428 한평숙 韓平淑 355 한효 韓曉 306, 307, 312, 317 하홍주 韓興周 130 한희진 韓熙珍 436,448 かるけ도건국준비위원회 咸鏡南道建國 準備委員會 429 함경남도공산주의자협의회 咸鏡南道共 産主義者協議會 428,430 함경남도인민위원회좌익 咸鏡南道人民 委員會左翼 428 함경북도인민위원회 咸鏡北道人民委員 會 430 함대훈 咸大勳 372 함병업 咸秉業 102 함상훈 咸尙勳 126, 128 함석헌 咸錫憲 428 함세덕 咸世德 369 함화진 咸和鎭 342, 343, 351, 375 함흥학생사건 咸興學生事件 446 해방기념문화축전 미술전 解放記念文 化祝典 美術展 330 해방동맹 解放同盟 196,197 〈해방전후〉 〈解放前後〉 해외청산위원회 海外淸算委員會(OFLC) 291 해운대책위원회 海運對策委員會 196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海州 南朝 鮮人民代表者大會 403 향보단 鄕保團 413 향토음악연구회 鄕土音樂研究會 348

허가이 許가이 438 홍기주 洪箕疇 427, 448, 459 홍기황 洪基璜 허규 許珪 160 448 허성택 許成澤 148 홍남표 洪南杓 185 허정 許政 125, 126 홍명희 洪命憙 198, 201, 203, 207, 208, 허정숙 許貞淑 212, 213, 215, 307, 308, 404, 462 168 허준 許俊 295 홋원기 洪元基 350 허허 許憲 102, 176, 184, 190, 191, 홍정모 洪貞模 427 화북조선독립동맹 華北朝鮮獨立同盟 214, 216, 395 헌법 및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 憲法 168, 443, 444 화북조선청년연합회 華北朝鮮靑年聯合 및 政府組織法起草委員會 417 헌법 제정 憲法 制定 460 會 168 혁명극장 革命劇場 369 화요회계 火曜會系 148 현덕 玄德 326 〈활동사진취체령〉 〈活動寫眞取締令〉 현우현 玄又玄 159 377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現情勢와 우리 황금좌 黃金座 372 의 任務 148 황순원 黃順元 297 현제명 玄濟明 340.342.349 황운 黃雲 159 현준혁 玄俊赫 428.431 황정순 黃貞順 379 현창형 玄昌炯 448 황진남 黃鎭南 190 〈혈거부족〉〈穴居部族〉 296 황한철 黃漢喆 196 협의대상 단체명부 協議對象 團體名簿 황해 黃海 379 78 〈효풍〉〈曉風〉 299 협찬동지회 協贊同志會 180 흥업구락부 興業俱樂部 139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400 힐드링 John H. Hilldring 68

집 필 자

개 요서중석
I.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1. 해방 이전 미·소의 대한정책 ·························정용욱
2. 해방 이후 미·소의 점령정책 ····································
<u> </u>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д. ое г г г де о
1. 광복 전후의 통일국가 수립운동안종철
2. 주요 정치세력의 통일국가 수립운동
1) 우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
2) 좌익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박태균
3) 중도세력과 좌우합작운동박태균
4) 남북지도자회의서중석
ㅠ 리크카리사 이런 권과 무리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1. 미군정기의 사회 정해구
2. 미군정기의 경제 김기원
3. 미군정기의 문화

1) 문학
(1) 해방공간의 소설 정호웅
(2) 해방공간의 시 정호웅
(3) 문학운동 김재용
2) 미술 오광수
3) 음악노동은
4) 연극·영화 ····· 유민영
IV.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대한민국의 수립박찬표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김성보

1.

한 국 사

52

대한민국의 성립

2002년 12월 20일 인쇄
2002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2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판매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